

KIPF 재정동향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 독일예산법: 공공예산의 부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 Jan Ziekow
- 프랑스 예산제도와 개혁/ Jean-Claude Martinez
-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 Bruce Stacey

주요국의 재정동향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계간 **KIPF 재정동향**

제3권 제1호(통권 제9호)

2012년 3월

 한국조세연구원

[목차]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5
I. 재정정책 동향	7
1. 2011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7
2. 2012회계연도 계획	9
3. 2013회계연도 예산 편성	13
II. KIPF 국제회의 주요 이슈	14
1. 독일·프랑스·일본의 재정법제와 현안	14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	24
III. 국제기구 보고서	30
1. IMF, 재정위험의 측정(2012년 1월 발표)	30
2. IMF 연금개혁(2011년 12월 28일 발표)	35
3. OECD, 소득 불평등과 조세와 이천지출의 역할(2012년 1월 발표)	41
4. OECD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 논의	50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57
I. 미국 (FY2012: 2011. 10~2012. 9)	61
II. 일본 (FY2011: 2011. 4~2012. 3)	68
III. 영국 (FY2011-12: 2011. 4~2012. 3)	79
IV. 프랑스 (FY2012: 2012. 1~2012. 12)	91
V. 독일 (FY2012: 2012. 1~2012. 12)	104
VI. 캐나다 (FY2011-12: 2011. 4~2012. 3)	115
VII. 호주 (FY2011-12: 2011. 7~2012. 6)	126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I. 재정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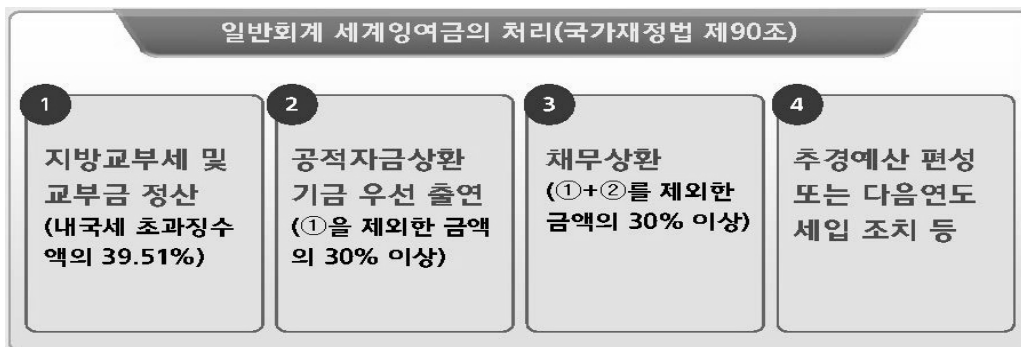
II. KIPF 국제회의 주요 이슈

III. 국제기구 보고서

I 재정정책 동향*

1. 2011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2월 10일, 기획재정부는 2011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 지난해 정부 전체의 재정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하였음
 - 총세입이 270.5조원, 총세출이 258.9조원,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이 11.6조원 발생했으며, 그 중 5.1조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총 6.5조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 일반회계의 세입은 214.9조원으로 당초 예산액 209.9조원 대비 4.9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12.1조원 대비 97.8%인 207.4조원이 집행
 - 예산현액(212.1조원) = 예산액(209.9조원)+전년도 이월액(2.1조원) 등
 - 특별회계의 세입은 55.6조원으로 당초 예산액 54.2조원 대비 1.5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7.7조원 대비 89.2%인 51.5조원
 - 예산현액(57.7조원) = 예산액(54.1조원)+전년도 이월액(2.6조원)+
초과지출승인액(573억원)+예비비 지출결정액(0.9조원)
 - 세계잉여금 6.5조원은 일반회계에서 5.1조원, 특별회계에서 1.4조원이 발생
 -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추후 정부결산이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이 사용



*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shhong@kipf.re.kr)

SECTION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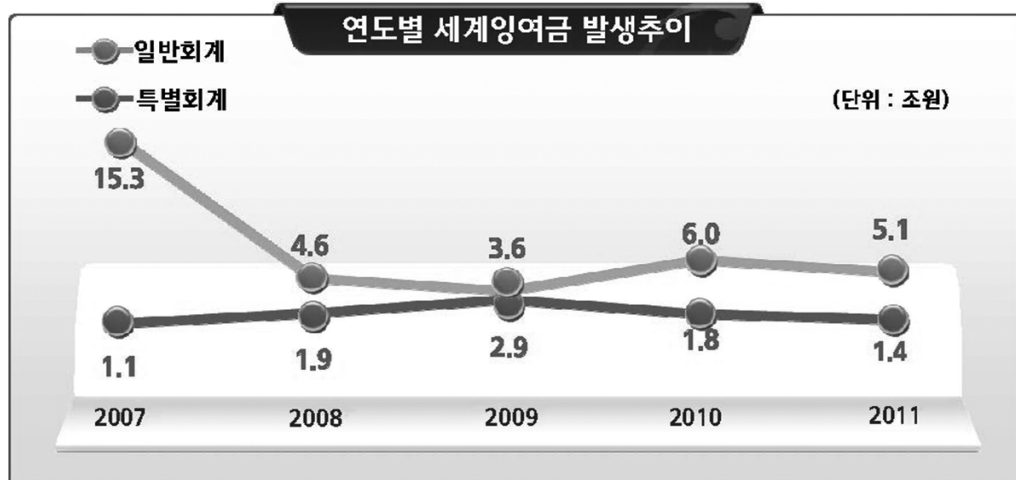
- 정부는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할 예정

(단위 : 조원)

회계별 세입·세출 집행실적

구 분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D)	세계잉여금 (C-D)
합 계	270,5	258.9	11.6	5.1	6.5
일반회계	214,9	207.4	7.4	2.3	5.1
특별회계	55.6	51.5	4.2	2.8	1.4

※ 총세입부·총세출부와 한국은행 국고금 대차대조표 대조결과 금액이 일치



2. 2012회계연도 계획

가. 2012년 예산 국회확정

-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에 대비하여 일자리 확충과 경제활력을 위한 미래투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에 중점
-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6조원, 총지출은 △0.7조원 감액
 - 총수입 : (정부안)344.1 → (최종)343.6조원(△0.6조원)
 - 총지출 : (정부안)326.1 → (최종)325.4조원(△0.7조원)
- 국가채무는 △2.3조원(0.1%p) 감소, 관리대상수지는 불변
 - 국가채무(GDP 대비) : (정부안)32.8% → (최종)32.7%(△0.1%p)
 - 재정수지(GDP 대비) : (정부안)△1.0% → (최종)△1.0%(-)
(△14.3조원) (△14.3조원)

〈표 1-I-1〉 2012회계연도 예산 국회 확정

(단위: 조원, %)

	2011년 (A)	2012년		증 감		
		정부안(B)	최종(C)	(C-B)	(C-A)	%
■ 총 지 출	309.1	326.1	325.4	△0.7	16.4	5.3
■ 총 수 입	314.4	344.1	343.5	△0.6	29.2	9.3
■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25.0	△14.3	△14.3	-	10.8	
(GDP대비, %)	(△2.0)	(△1.0)	(△1.0)	(-)	(1.0p)	
■ 국가채무	435.5	448.2	445.9	△2.3	10.4	
(GDP대비, %)	(35.1)	(32.8)	(32.7)	(△0.1p)	(△2.4p)	

SECTION 1 >>

〈표 1-I-2〉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정부안(B)	2012년 최종(C)	증 감		
				(C-B)	(C-A)	%
1. R&D	14.9	16.0	16.0	0.05	1.1	(7.6)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2	15.2	15.1	△0.15	△0.1	(△0.5)
3. SOC	24.4	22.6	23.1	0.44	△1.3	(△5.5)
4. 농림·수산·식품	17.6	18.1	18.1	0.02	0.5	(2.8)
5. 보건·복지·노동	86.4	92.0	92.6	0.67	6.2	(7.2)
6. 교육	41.2	45.1	45.5	0.43	4.3	(10.3)
7. 문화·체육·관광	4.2	4.4	4.6	0.13	0.4	(8.8)
8. 환경	5.8	6.1	6.0	△0.16	0.2	(3.5)
9. 국방(일반회계)	31.4	33.2	33.0	△0.20	1.6	(4.9)
10. 외교·통일	3.7	3.9	3.9	△0.004	0.2	(8.0)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14.5	△0.03	0.8	(6.3)
12. 일반공공행정	52.4	56.6	55.1	△1.47	2.7	(5.3)
총지출	309.1	326.1	325.4	△0.7	16.4	(5.3)

나.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계획

-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上底下高의 경기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상반기 60% 내외의 재정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

〈표 1-I-3〉 정부회계에 대한 2012회계연도 예산배정

(단위: 억원, %)

구 분	2012예산	1/4	2/4	3/4	4/4	
예산배정	금액	2,826,873	1,246,684	732,785	522,926	324,478
	비율	100.0	44.1	25.9	18.5	11.5

- 2012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 70%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
-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와 직결되는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여 사업효과 조기 가시화 유도
 -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SOC 계속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 배정
- 정부는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재정집행 상시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매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

다.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 기획재정부는 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하여 1월 13일 각 부처에 통보
-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
 -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
 -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4%→5%), 중소기업 용자사업 처리기한 단축(20일 내) 등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일자리사업 적극 추진
 -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 청년창업 등 창업 활성화 사업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집행
 - 물품·용역 구매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민간부문의 고용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 용자사업 추진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자금을 우선 공급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
 - 취약계층 등 참여자의 체감도 향상

- 직접 일자리사업은 연초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참여 대상자 선정 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
-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고용관행 정착에 노력
 - 보수수준을 유사·동종업종에 준하여 설정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에게도 맞춤형복지비 지원
-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 물가안정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사업은 물가변동 사항 등에 적극 대응하여 집행
 - 비품구입, 용역계약 등 예산집행 시 물가안정 협조업체(가격인하, 옥외가격표시제 등)로부터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을 유도
 - 용역·물품 구매 시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하고, 가격 하락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행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연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
 -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관리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 중기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120개)은 설계 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
- 에너지 절약 강화
 - 업무용시설 에너지 진단 의무화 및 에너지 고효율 사무환경 구축
 - 정부자산 취득 시 에너지 절약형 인증제품 우선구매
-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협의체 구성, 사업범위 재설정 등을 통해 유사·중복 수행을 방지
 - 보조금의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증감내역을 인터넷 등에 상시 공시
 - 기금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기금 투자폴 등 전문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을 확대

3. 2013회계연도 예산 편성

-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착수
 - 내년도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및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서 중기재정 협의회를 개최(2.15~24일)
 - 직접 부처별로 찾아가, 재정 관련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중기 투자방향 및 적정 투자규모 등에 대해서 토론
 -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 1월 31일까지 향후 5개년(2012~2016) 동안의 중기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전 부처 중기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연평균 4.8%)의 1.5배 수준

〈표 1-I-4〉 2012~2016 중기 요구현황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 2012~2016 요구(A)	-	325.4	365.3	388.4	406.9	429.1	7.2%
■ 2011~2015 계획(B)	309.1	325.4	341.9	357.5	373.1	-	4.8%
계획대비 추가요구(A-B)			+23.4	+30.9	+33.8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국내 경기전망 등 대내외 여건을 분석하여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점검하고, 사회통합, 미래대비 투자 등 반드시 필요한 투자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수립할 방침
 - 재정건전성에 기반을 둔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구체화할 계획
 - 급증하는 복지수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감안,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방안도 중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
-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공개토론회(6월) 등을 거쳐 10월 초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II KIPF 국제회의의 주요 이슈¹⁾

1. 독일 · 프랑스 · 일본의 재정법제와 현안

가. 독일예산법: 공공예산의 부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와 그 기초²⁾

1) 독일예산법의 기초

□ 독일의 국가구조

- 독일의 행정구조는 연방정부(des Bund), 16개의 주정부(Länder), 기초자치단체(Gemeinde)의 3개 층으로 구성
 - 각 주정부(Länder)는 연방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의회 및 행정부를 가지며, 주정부의 예산은 연방으로부터 독립적임(독일기본법 제109조 제1항)
 -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 Gemeinde)는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자치행정권(Selbstverwaltungsrecht)을 지니며, 연방 및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예산권을 지님

- 1) 한국조세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2012년 2월 2차례의 국제회의를 개최함. 「II. KIPF 국제회의의 주요 이슈」는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이슈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재정법제,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를 발췌 정리하고, 국제회의 자료 외에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함

1. 한국재정법학회 · 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세미나 「독일 · 프랑스 · 일본의 재정법제와 현안」
 - 일시 : 2012년 2월 1일(수) 09:30~18:00
2. 한국조세연구원 · 기획재정부 주최 국제포럼 「재정위기 극복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 일시 : 2012년 2월 13일(월) ~ 2012.2.15(수)

- 2) 「독일 · 프랑스 · 일본의 재정법제와 현안」, Prof. Jan Ziekow(German Research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의 발제문을 바탕으로 작성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김진아 연구원(jina@kipf.re.kr)

□ 독일의 예산구조³⁾

- 연방의 예산항목 구조는 예산원칙법(Haushaltsgrundsatzgesetz: HGrG) 제10조, 제11조 및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ordnung: BHO) 제13조, 제14조에 의해 정해짐
- (가) 총예산(Gesamtplan) : 부처 예산은 총예산으로 총괄되고 이는 재정수지, 차입계획을 보여주는 자원조달 개요를 구성함
- (나) 개별 예산(Einzelpläne) : 부처를 단위로 작성되며 예상되는 수입, 지출, 지출원인 행위, 부처 내 설치된 부서 및 기타 부서 등을 포함함
- (다) 장(Kapitel) : 개별 예산이 부처, 일반세출, 주요분야 및 하급기관으로 세분화됨
- (라) 항(Titel) : 예산편성의 최하 구분단위이며, 세입은 수입원에 따라, 지출은 목적에 따라 항 단위로 계상됨

가) 독일의 예산관련 법제 및 기본원칙

- 독일의 예산관련 원칙 및 법적 규율에 대해서는 기본법(Grundgesetz: GG), 예산원칙법(Haushaltsgrundsatzgesetz: HGrG),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ordnung: BHO)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독일 예산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법적 근거
예산 단일성 및 완결성의 원칙	기본법 제110(1)조
균형예산의 원칙	기본법 제110(1)조
연도별 예산주의의 원칙	기본법 제110(2)조
사전의 원칙	기본법 제110(2)조
경제성과 절약성의 원칙	예산원칙법 제6조, 연방예산법 제7조
포괄적 총당의 원칙	예산원칙법 제7조, 연방예산법 제8조
당해 연도 원칙	예산원칙법 제8조, 연방예산법 제11조
예산총계 원칙	예산원칙법 제12조, 연방예산법 제15(1)조
예산완전성, 진실성, 명료성의 원칙	연방예산법 제11(2)조

3) 『독일의 제정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이명현, 2011. 9.

나) 재정조정시스템(System der Finanzausgleiche)

- 재정조정시스템의 근거는 기본법과 개별 주의 헌법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재정조정법 (Finanzausgleichsgesetz: FAG)에 기초한 규율이 이루어짐
- 재정조정시스템은 독일 재정법의 특수성 중 하나이며, 주 간 또는 게마인데 간에 행해지는 수평적(horizontaler) 재정조정과 연방으로부터 주로, 주에서 게마인데로 재원이 이전되는 수직적(vertikaler) 재정조정이 존재
 - 수평적 재정조정에서는 각 주 주민의 담세능력과 경제력에 상응하게 세수를 재배분하여, 개별 주정부의 재정능력을 적절히 균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수직적 재정조정은 주정부 간 재정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재정능력이 낮은 주에 대해 연방이 지급하는 추가적인 교부금(보충교부금)임

2) 공공예산의 부채를 제한하기 위한 헌법적 수단

가) 헌법상 채무제동장치(Schuldenbremsen)

- 독일기본법 제109조 제3항은 연방과 주에 대해 실질적 예산균형(materieller Haushaltsausgleich)의 의무를 규정
 - 이는 신용(Kredit)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하며, 두 개의 예외구성요건이 존재(기본법 제109조 제3항 2문)
 - 평상시와 다른 경기상황이 전개될 경우 즉, 경기침체기에는 신용을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anti-cyclical policy)
 - 자연재해 또는 비상상황이 닥칠 경우에는 실질적 예산균형의 예외가 적용됨
 - 또한, 기본법 제109조 제3항 3문은 위 예외규정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실질적 예산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상환규정(Tilgungsregelung)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 기본법 제109a조는 공공예산의 전개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기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로 안정성위원회(Stabilitätsrat)의 설치를 규정

- 안정성위원회는 연방과 주의 예산상태를 상시 감시하며, 일정한 지표에 따라 예산긴급상황이 우려되는지를 심사하는 등 독일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함

나) 연계성 원칙(Konnexitätsprinzip)

- 연계성의 원칙은 주 헌법에 규정된 원칙으로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기여
 - 주가 국가사무의 집행을 게마인데에 위임하거나, 현존하는 또는 새로운 사무의 수행을 맡길 경우 그 사무의 이행이 게마인데의 초과부담을 초래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조정이 있어야 함을 규정(원인자부담의 원칙, Verursacherprinzip)

나. 프랑스 예산제도와 개혁⁴⁾

1) 프랑스 예산의 원칙과 절차

- 프랑스의 전체 예산은 중앙정부예산과 사회보장기구 예산 및 지방정부 예산의 합으로 구성되며 확정예산과 잠정예산으로 구분
 - 확정예산은 일반예산(budget general), 부속(특별)예산(budget annexes)으로 구성
 - 잠정예산은 지출 및 결손과 연관된 특별계정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와 비슷한 재무특별계정임

가) 프랑스의 예산 기본원칙

- 예산의 투명성 증진과 의회의 예산안 감독권한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 공공재정의 원칙은 19세기 초에 형성되었고, 2001년 재정기본법(*Loi organique sur les lois finances*, LOLF)에서 재확인 및 구체화

4) 「독일·프랑스·일본의 재정법제와 현안」, Prof. Jean-Claude Martinez(Université Paris II Panthéon-Assas)의 발제문을 바탕으로 작성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신승희 연구원(shshin@kipf.re.kr)

〈표 1-Ⅱ-1〉 프랑스 예산원칙

원칙	내용
○ 예산 단년주의 원칙(l'annualite) (재정기본법 제2조, 제16조)	예산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집행하는 원칙이며 이의 예외는 추가경정예산
○ 보편성의 원칙(l'universalite) (재정기본법 제16조)	국가 총지출을 국가 총수입으로 총당하는 원칙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이 일치해야 하며 예산의 보편주의라 함, 이의 예외는 기부금과 특별회계임
○ 단일성의 원칙(l'unite) (재정기본법 제2조, 제18조)	국가의 세입, 세출을 단일의 회계(일반회계)로 통일해야 하는 원칙이며 예산단일주의라 함
○ 특수성의 원칙(la specialite) (재정기본법 제7조)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특정해야 한다는 원칙
○ 균형성의 원칙(l'equilibre) (재정기본법 제50조)	경제적 균형과 재정적 균형을 실천해야 한다는 원칙
○ 진실성의 원칙(la sincerite) (재정기본법 제47조)	2001년 예산법제 개혁에서 대두된 개념으로 국가의 회계는 규칙적이고 진실하여야 하며 국유재산과 재정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국가의 총 세입과 총 세출을 진실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원칙

나) 예산편성의 절차

- (예산법안 준비) 1959년 법규명령 제 37조는 “수상의 권한하에 재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예산법안을 준비한다.”라고 규정
 - 재정장관은 예산전략(la direction de budget), 국고(tresor), 공적 회계, 관세, 간접세 등의 일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법 집행의 범주 내에서의 예산을 통제하는 역할 등을 수행
 - 수상은 예산안의 기술적, 행정적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음
- (예산초안 계획) 매년 1, 2월에 예산지침이 발표되며, 각 부처는 이에 근거하여 부처예산 초안을 작성
 - 예산안은 단기간적 대상(les objectips a court terme)과 중기간적 대상(les objectips a moyen terme)으로 구별할 수 있음
 - 국가적 계획 차원의 다년도 계획은 5년안과 3년안이 일반적임
 - 재정장관은 지출과 수입 예측을 토대로 예산초안을 결정하여 수상에게 제출

– 각부장관은 예산초안을 수용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의회의 심사) 의회는 사전예산검토 단계인 예산정책심의(Le débat d'orientation des finances publiques: DOFP)를 진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심의과정을 진행

○ 정부의 예산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하는 예비심사는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재정 기본법 제 48조는 이러한 예심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의무적 사항은 아님

– 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각 부처에 의하여 제안된 새로운 조치의 총예산에 관한 토론을 5~6월에 재무부(finances)가 위치한 베르시(Bercy)에서 개최

– 정부가 의회에 보내는 보고서에는 경제발전 과정의 분석, 프랑스의 유럽참여에 관한 재정 정책의 커다란 방향의 기술, 차후년도의 예산법안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항목들 등 프랑스 경제와 예산의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기재

○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두 번째 과정이라고 불리는 예산회의(les conférences budgétaires dites <de seconde phase>)가 열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최후중재(les ultimes arbitrages)를 함

– 두 번째 예산회의 기간 동안에 수입 예측을 정밀하게 조정

□ (예산법 제출) 예산법의 제출과정에서는 예산법(LF)과 추가문서(les documents annexes)를 제출해야 함(기본법 제50조, 제52조)

○ (예산법) 예산법은 구별된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1부⁵⁾(la première partie)와 제2부⁶⁾(la seconde partie)임(기본법 제31조)

○ (추가문서) 예산법안은 의무공제에 관한 보고서(le rapport relatif aux pre-levements

5) 재정균형의 일반조건(Conditions générales de l'équilibre financier)이라는 제목의 제1부는 공적재원의 징수 또는 재정입법의 수정을 다루는 재원에 관한 조치(dispositions relatives aux ressources)와 수입과 지출의 전체와 일반차액을 도표 형식하에 표시하고 공채의 시행에 재정장관이 인가하는 재원과 부과의 균형에 관한 조치(dispositions relatives à l'équilibre des ressources et des charges)로 나누어짐

6) 역무의 수단과 특별한 조치(Moyens des services et dispositions spéciales)라는 제목의 제2부는 표결 작업의 총액과 일반예산, 추가예산과 국고의 특별회계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규정한 1회계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조치(dispositions applicables à l'année)와 적절한 조치의 다양성을 표현한 영구적 조치(dispositions permanentes)로 나누어짐

obligatoires), 경제적·재정적 보고서(le rapport économique), 설명적 부칙(les annexes explicatives)과 일반적 부칙(les annexes generales) 등 3가지 유형의 문서를 수반한다고 규정(기본법 제32조)

- 의무공제에 관한 보고서: 예산법안과 사회보장예산법안의 심사를 준비하기 위한 의무적 공제(prelevements obligatoires)와 그 과정에 대한 보고서
- 경제적·재정적 보고서: 다년도의 예측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법안 작성의 근거에 대한 가설, 방법과 예측 결과의 제출을 포함
- 설명적 부칙: 표지가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서 청서(bleus budgetaires)라 불리는 이 부칙은 약 40여 개의 부칙으로 구성되며 소송, 협력비용 등을 정확하게 규정
- 일반적 부칙: 표지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황서(jaunes budgetaires)라고 불리며, 약 25개 부칙으로 구성

○ 예산법안 제출 기한과 채택에는 엄격한 기간이 준수됨

- 제출기간: 재정기본법 제38조는 “제32조에 규정된(경제적·재정적)보고서와 설명적 부칙을 포함하는 예산법안은 늦어도 국민의회 사무처에 10월 첫째 화요일까지 제출·등록되어야 하고, 이렇게 이달된 예산법안은 재정관련의회위원회의 심사에 즉시 이송되어야 한다.”라고 규정

○ 채택기간: 의회는 예산표결을 위하여 70일 동안 준비

□ (예산의 토론) 예산법안은 일반보고자(general rapporteur), 위원회의 위원장, 재정장관과 정책집단이 참여하는 일반토론의 대상임

- 상원과 하원은 공개회의에서 토론을 개최하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재정위원회가 예산의 심사, 분석과 토론에서 우선적 역할 수행
- 예산법의 제1부(la premiere partie)가 채택된 후에만 제2부(la seconde partie)는 의회에서 토론됨(조직법 제31조, 제34조)
 - 초안예산안의 표결은 제1부(article)에 대한 투표이고 제2부의 표결은 일반예산을 위한 전체투표와 추가예산과 국고의 특별회계의 범주에 대한 투표임

2) 예산제도의 개혁, LOLF

가) 재정기본법(Loi organique sur les lois finances, LOLF)

- LOLF는 의회의 효율적 통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통제를 추구하기 위하여 2001년 의회 주도로 제정
 - 4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적용되고 있음
 - 재정지출 항목의 분류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간소화하기 위해 지출성질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따른 성과를 위해 미션(Mission)과 그에 맞는 프로그램(Programmes)으로 구성
 - 동일한 부처 내의 하나의 활동 또는 여러 개의 활동으로 재편성하며 예산을 프로그램, 미션별로 편성·배분
- LOLF 도입으로 인해 재정정책과 재정지출의 효과성에 대해 인식하고 성과주의 문화가 확립됨
 - 하지만 각 프로그램(Programmes), 미션(Mission)의 성과보고서 및 목표에 따른 예산 활용 방식 평가서 보완, 성과지표에 근거한 전반적인 평가작업 추진, 예산 재원과 성과에 대한 보다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나) 예산법(Loi de finances)

- 프랑스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법률의 형식으로 연말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법으로 성립
 - 예산법은 매년 국가의 경제·재정적 균형을 고려하면서 중앙정부의 세출과 세입의 성격, 총액, 세입과 세출의 직접적 연계를 결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세율·징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예산법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 편성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제·재정적 균

형을 고려하여 세입액과 세출액을 결정하므로 회계연도에 따라 적자예산이 편성되
기도 함

다) 예산법의 종류

- 2001년 재정기본법(LOLF)에 따르면 예산법은 본예산법(La loi de finances initiale, LFI), 수정예산법(les lois de finances rectificatives, LFR), 결산법(la loi de reglement), 헌법 제 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채택되는 특별예산법으로 구성
- 본예산법(당해연도 예산, La loi de finances initiale, LFI)은 예산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70일간의 심층적인 토의가 이루어지며 기타 종류의 예산들은 이 법과의 관계에서 내용이 정해짐
 - 재정협약제출, 중앙정부의 보장지출, 단기부채 및 중앙정부 채무지출, 채무부담행 위지출, 프로그램 승인지출 등의 지출은 세입에 대해 재정적 균형 상태로 편성되어야 함
- 수정예산법(수정예산, les lois de finances rectificatives, LFR)은 필요에 따라 예산변경을 하기 위해 연중 부정기적으로 정부에 의해 제출되고 의회에서 의결됨
 - 예산상 예측은 경제상황의 진전에 따라 좌우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매년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수정예산법이 채택될 수 있음
 - 단, 수정예산법(LFR)만이 예산법(LF)의 회기 동안 결정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LOLF의 제35조)
 - 따라서 수정예산법은 그 해 본예산 조치들이 집행되는 가운데 수정됨
- 결산법(결산, la loi de reglement)은 회계연도의 재정적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예산법에 의해 수정·보완된 회계연도 예산법의 결과와 예측의 차이를 비교
 - 매년 예산회기 말에 국가의 지출과 수입의 결정된 총량을 정하고 예산의 집행에 영향을 줌

- 특별예산법(헌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채택되는 특별예산)은 긴급예산으로 임시적 성격만을 지니며 당해연도 예산의 실효적 통과를 기다리는 동안 국가재정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예산 채택이 지체될 경우 의회에서 전년도에 승인했던 바에 근거하여 공공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긴급투표를 진행

※ 참고문헌

- Stephanie DAMAREY-BROCHE, “La loi organique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P.U.F, Paris, 2004.
- J. L. ALBERT et L. SAÏDJ, *Finances publiques*, Dalloz, 7ème éd., 2011.
- M. BOUVIER, M. C. ESCLASSAN, J. P. LASSALE, *Finances publiques*, LGDJ, 11ème éd., 2010.
- G. ORSONI, “Science et législation financières,” *Economica*, 2005.
- G. ORSONI, 「프랑스의 예산제도와 개혁」, conferences, 2011.
- 김은경, 프랑스의 재정제도, 2011.(출판예정)

※ 참고사이트

- www.gerfip.org
- www.financepubliques.com
- www.finances.gouv.fr
- www.ccomptes.fr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⁷⁾

가. 관리, 자원 및 결과구조 정책

- 관리, 자원 및 결과구조(Management, Resources and Results Structure, 이하 MRRS) 정책은 부처별 성과관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과기반 관리(Result-based Management)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
 - 1996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계획, 보고 및 책임성 구조(Planning, Reporting and Accountability Structure: PRAS)」 정책을 2005년에 새롭게 갱신

- 2007년 6월 캐나다는 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MRRS의 핵심을 이루는 新지출 관리시스템(New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이하 新EMS) 도입
 - 新EMS는 MRRS 정책으로도 불리며, 각 정부조직의 재무적 정보를 활용하고 수집 및 분석함에 있어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
 - 新EMS는 사업의 설계, 승인, 결과보고 등 모든 과정들을 포괄하여 자원을 분배하고 재분배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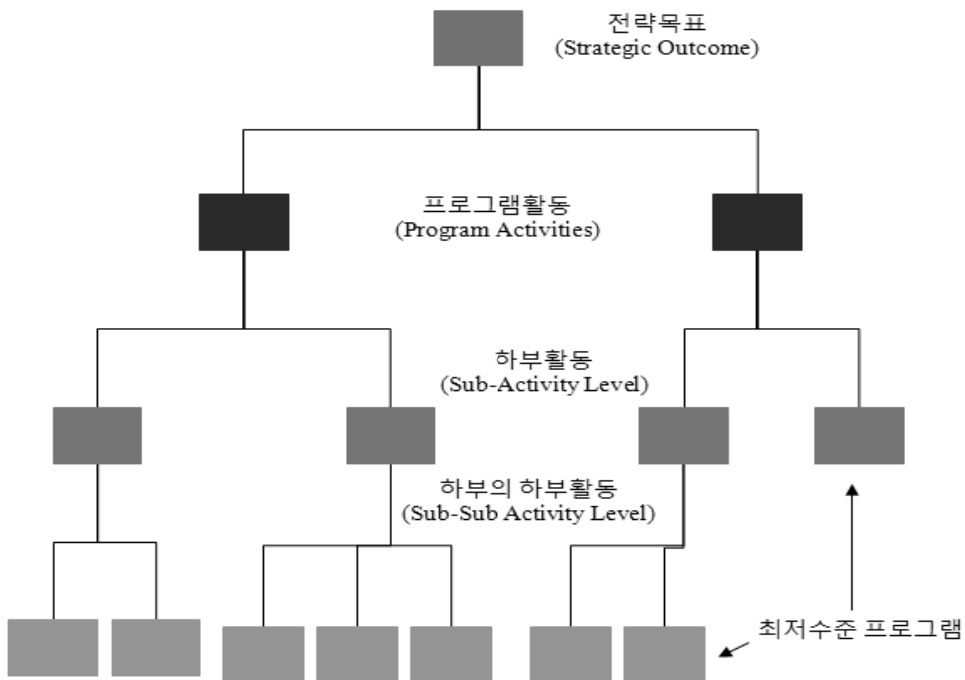
- 정부부처 및 주요기관들은 MRRS에 의해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성과를 보고
 - MRRS의 주요 요소는 위계적인 구조를 지닌 성과목표관리체계 PAA(The Program Activity Architecture)와 新EMS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략검토(Strategic Review)임
 - MRRS에 따른 부처별 사업계획은 「계획 및 우선순위에 대한 보고서(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RPPs)」로 나타나며 각 부처의 성과는 「부처별 성과보고서(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s: DPRs)」로 제시
 - 실질적으로 3개 기관(재무부, 재무위원회 사무국, 추밀원)이 新EMS를 운영하고 있고, 상호 협조하여 의사결정을 내림

7) 본 장은 2012년 2월 13일~2012년 2월 15일 한국조세연구원과 기획재정부 주최로 실시한 국제포럼 「재정위기 극복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발표 자료 “Performance Budgeting in the Government of Canada”, “Restor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Budgeting for Results”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채민희 연구원(mhchae@kipf.re.kr)

1) PAA(The Program Activity Architecture)

- PAA는 모든 정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략목표부터 세부사업까지 위계적인 구조로 구성된 성과목표관리체계임
 - MRRS는 각 부처가 달성해야 할 전략목표(Strategic Outcome)를 설정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와 목표치로 구성
 - 따라서 MRRS 운영 시 성과목표관리체계 PAA를 이용하여 모든 정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PAA는 전략목표 → 프로그램활동(Program Activities) → 하부활동(Sub-Activities) → 하부의 하부활동(Sub-Sub Activities) 구조를 지님

[그림 1-Ⅱ-1] PAA 체계도



자료: 국제포럼 「재정위기 극복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발표자료, 2012. 2.

- 전략목표와 프로그램활동은 정부예산 편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의회의 책임범위에 속하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재무위원회(TB)의 승인 필요
- 하부활동과 그 이하는 부처별 전략목표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 목록을 반영하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재무위원회 사무국(TBS)의 승인 필요
- 각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명과 그에 대한 설명, 기대효과, 성과평가, 지출계획 및 실제지출, 성과 목표치와 실제 성과, 관리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함

2) 전략검토

- 新EMS하에서는 전략검토에 따라 연방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전략검토를 수행
 - 전략검토는 新EMS에 의해 도입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고, 4년 주기로 평가
- 전략검토는 정부사업 지출의 운영과 관리상황을 평가하여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켜 정부사업 지출의 투입 대비 성과를 제고
 - 지출내역을 관리하여 정부사업이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유도
 - 정부사업 지출이 정책수요 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도록 조정
- 전략검토는 부처별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각 사업의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지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
 - 부처별 운영위원회가 PAA를 통해 평가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부처 및 기관, 공기업 등의 직접프로그램 지출과 사업운영비를 검토
 - (평가수행) 재무위원회 사무국(TBS)에서 설립한 부처별 운영위원회
 - 외부전문가 조언을 수렴하여 평가의 중립성 및 신뢰성 보장
 - (평가기준) 정책적 우선순위와 사업성과 등을 포함한 6가지 질문으로 구성
 - 질문1: 정부 정책적 우선순위는 어떠한가?(Government Priority)
 - 질문2: 연방정부의 역할에 적합한가?(Federal Role)

- 질문3: 사업을 수행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가?(Relevance)
 - 질문4: 그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했는가?
(Performance-efficiency, effectiveness)
 - 질문5: 투입한 자금 대비 성과는 어떠한가?(Performance-value for money)
 - 질문6: 운영성과는 어떠한가?(Management Performance)
- (평가정보) 성과평가, 회계감사, 감사원장보고서(Auditor General Reports), 경영책임성과관리제도(Management Accountability Framework) 등 보고서

- 전략검토의 결과는 매년 예산안을 통해 공개되고, 사업성과가 저조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재배치 대상으로 분류
- 각 기관별 전체 사업을 정책적 우선순위와 성과를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 중 하위 5%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을 타 사업으로 재배치하도록 제안
 - 정책적 우선순위와 성과가 모두 우수한 사업들은 재투자가 제안되고, 성과가 낮더라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은 재투자 혹은 사업개선을 하도록 제안됨

〈표 1-Ⅱ-2〉 전략검토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

높은 우선순위 (High Priority)	재투자/개선 가능 (Potential for Improvements /Reinvestments)	재투자 가능 (Potential for Reinvestment)	부처 검토 결과에 100% 기초함
	낮은 우선순위 (Low Priority)	재배치 1순위 (Primary Candidate for Reallocation)	
	낮은 성과	높은 성과	

자료: 국제포럼 「재정위기 극복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발표자료, 2012. 2.

- 1차 전략검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되어 완료되었고, 4년간 재정지출 총 14억 2,300만캐나다달러 절감

〈표 1-Ⅱ-3〉 2007~2010년 1차 전략검토 결과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합계
2007년 전략검토	199	311	386	395	403	403	403	2,500
2008년 전략검토		349	449	586	598	604	604	3,190
2009년 전략검토			152	248	287	288	288	1,262
2010년 전략검토				194	271	569	525	1,560
소계	199	660	987	1,423	1,559	1,864	1,820	8,511
국방부 지출 억제조치					525	1,000	1,000	2,526
합계	199	660	987	1,423	2,084	2,864	2,820	11,037

자료: 캐나다재무부, Budget 2011, Table A1.2, 2011, 6.

- 국방부 지출 억제 조치로 인한 절감분 포함, 1차 전략검토 결과로 FY2014-15까지 총 110억캐나다달러 절감
 - Budget 2010에서는 전략검토의 일환으로 FY2012-2013부터 FY2014-2015까지 국방부 지출 약 25억캐나다달러 절감 계획

나. 행정서비스검토(Administrative Services Review)

- 정부는 행정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설계하고 개선하기 위해 행정서비스검토를 마련
 - 행정서비스검토는 1년 내내 지원부서(back-office)의 운영을 검토하여 행정서비스 운영을 표준화하고 통합화하려는 시도임
- 행정서비스검토는 현재 일부 시행되어,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단일부서 Shared Services Canada를 신설하고 이메일시스템 단일화 및 데이터센터 통합 등 추진
 - 행정서비스검토로 이메일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데이터센터는 300개에서 20개 이하로 줄일 계획이며 동시에 보안과 에너지 효율을 증진
 - 정부에는 공공서비스 내에 100개 이메일 시스템, 300개 데이터센터, 3000개 네트워크 서비스가 존재

- 분리된 정보시스템들을 통·폐합함으로써 정보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 단일 정부청사에 여러 부처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각각 분리된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으나 행정서비스검토로 네트워크 단일화를 추진할 예정

다. 전략운영검토(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

- 전략운영검토는 Budget 2011에서 세운 재정수지 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사업 지출의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지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 Budget 2011에서 2015년까지 재정수지 균형(a zero-deficit) 달성을 목표함에 따라 정부는 세금 증가나 이전지출의 삭감 없이 지출을 반드시 줄여야 함
 - 67개 부처 및 정부기관은 최소한 정부 재량지출의 5% 수준인 40억캐나다달러를 줄여야 함
 - 이에 따라 정부 사업지출의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내각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략운영검토를 수행
- 전략운영검토 고려분야
 - 타당성과 정책수요가 저조한가?^{*8)} (Low Relevance and Need)
 - 연방정부 역할과 관련성이 낮은가?^{*} (Low Federal Role)
 - 조직의 역할이 불분명한가? (Low Organizational Role)
 - 사업 효과성 또는 효율성이 저조한가?^{*} (Low Effectiveness and/or Efficiency)
 - 사업 비용감당능력이 부족한가? (Low Affordability)
 - 자본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가? (Low Capital Effectiveness)
 - 내부적인 서비스는 어떠한가? (Internal Service)

8) *는 전략검토에서도 고려된 사항임

Ⅲ 국제기구 보고서

1. IMF, 재정위험의 측정(2012년 1월 발표)⁹⁾

가. 재정위험 수준 평가 주요 변수

- 국가별 재정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변수는 총 여섯 가지로 구성됨
 - 중단기 재정압력은 고빈도 자료(high frequency data)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평가항목은 총 필요자금, 국가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시장전망, 경제위기 파급계 수입
 - 중장기 재정압력 평가는 보다 부채유지가가능성(debt sustainability)에 초점을 둔 저빈도 자료(lower frequency data)를 토대로 분석함
 - 주요 항목은 개선해야 할 재정수지 규모, 성장률 및 이자율 쇼크 민감도, 부채전망 추계임

나. 중단기 재정압력: 자금 확충, 시장전망, 국가 간의 경제위기 파급력

- 주요 선진국들이 채무만기연장과 필요자금 확충문제에 직면해 있음
 - 단기재정 압력은 일본, 그리스, 미국 순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2012년까지 GDP 대비 60%, 그리스와 미국은 GDP 대비 약 30%에 달하는 자금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높은 재정적자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평균 국채만기가 짧아 재정압력에 노출되어 있음
 - 독일과 영국은 같은 부채비율(2011년 기준)이지만, 단기재정적자는 독일이 더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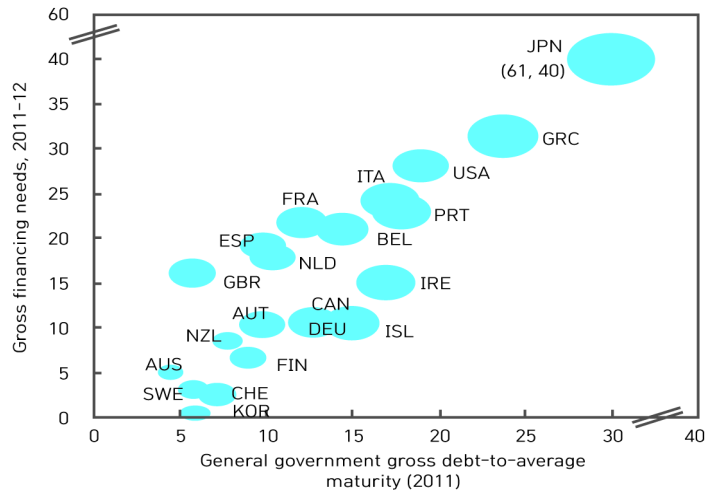
9) Schaechter, A, et al, "A Toolkit to Assessing Fiscal Vulnerabilities and Risks in Advanced Economies," *IMF Working Paper*, WP/12/11, 2012.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황보경 연구원(hwangbo@kipf.re.kr)

은 반면 부채대비 만기비율은 영국이 더 낮아, 필요자금규모와 부채대비 만기비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1-Ⅲ-1] 국가별 중·단기 총 필요자금

(단위: GDP 대비 %, 년)



주: 원의 크기가 클수록 GDP대비 국채비율(2011년)이 높다.

- 국가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일부국가의 CDS¹⁰⁾와 RAS¹¹⁾ 스프레드 상승 및 국가위험 전이 파급계수(spillover coefficient)¹²⁾가 영향을 받았음
 - 2011년 7월 이래로 그리스의 CDS와 RAS 스프레드가 상승한 반면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안정화된 양상을 보임
 - 일부국가의 CDS와 RAS 스프레드의 불일치는 파생시장의 유동성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flight-to-quality effect)으로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10)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는 국가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험성격의 파생상품으로서 국가신용위험이 부각될수록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높아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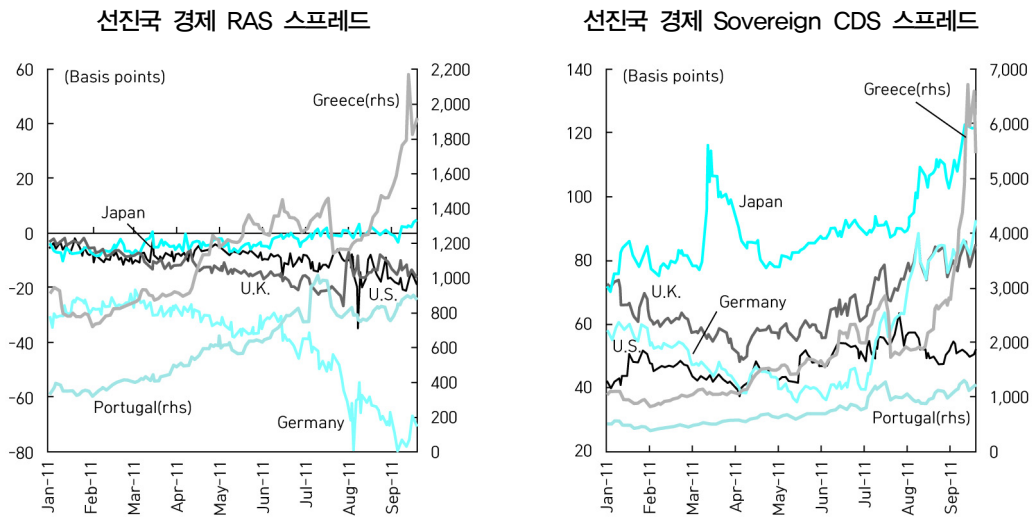
11) RAS(Relative Asset Swap) spread란 국채금리와 이자율스왑 고정금리 간의 차이. 무위험 채권의 고정금리가 국채금리보다 높아 마이너스(-)값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재정위기 심화로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고정금리가 하락할 경우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됨.

12) 2011년 8월까지 CDS 스프레드 data를 토대로 파급위험을 평가(Caceres, C., Guzzo, V. and Segoviano, M., "Sovereign Spreads: Global Risk Aversion, Contagion or Fundamentals?," *IMF Working Paper* 10/120, 2010.)

SECTION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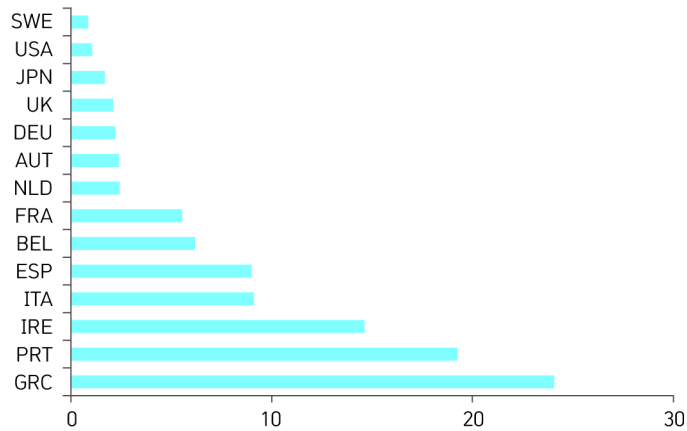
- 독일, 영국,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RAS 스프레드(국채금리 - 고정금리)는 마이너스 추세를 보였고, 이는 국채금리의 안정하락세로 인한 것으로 보임
- 국가위험전이에 대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파급계수(spillover coefficient)가 2011년 3월 이후 약 두 배 증가하였고, 독일, 일본, 미국은 국가위험 전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1-III-2] 일부 선진국의 CDS와 RAS 스프레드



[그림 1-III-3] 국가 간의 경제위기 전이 파급계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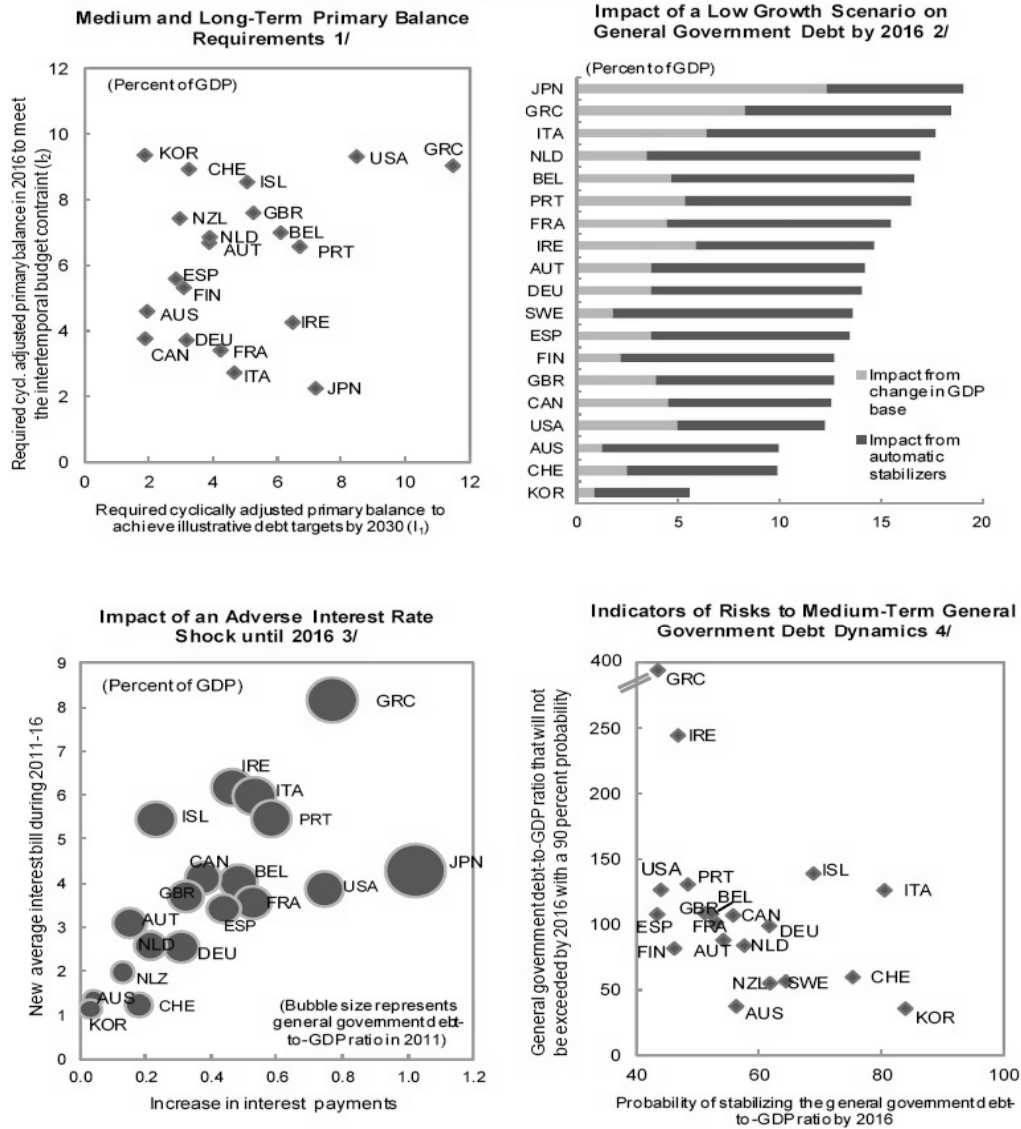
다. 중장기 재정압력과 외부변수 민감도

- 중장기 재정압력의 주요변수는 국가 채무와 향후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이며, 이에 따라 개선해야 할 중장기 재정 수지 규모는 그리스, 일본, 미국 순
 - 그리스, 일본, 미국이 2030년까지 목표부채비율(GDP대비 60%) 달성을 위해 향후 개선해야 할 경기 조정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GDP 대비 7%p를 초과
 - 일본, 그리스는 높은 국가 채무로 인해 재정 수지 개선이 요구되는 반면, 영국의 경우 노인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향후 4년간 GDP 대비 9.5%p 이상 증가할 예정임(일본은 2%p 증가시킬 전망)
 - 즉, 영국이 일본에 비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정수지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 성장률 및 이자율 쇼크에 대한 민감도 역시 부채증감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향후 6년간 실질GDP성장률이 1%p 감소했을 때의 타격은 일본, 그리스 순으로 클 것으로 예상
 - 이자율 상승타격은 총 필요자금(gross financing needs)이 높은 일본, 그리스, 미국 순으로 클 것으로 예측됨
 - 이로 인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GDP 대비 0.75~1%p 증가할 것으로 추정(2011~16년)
 - 성장률 부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이자율쇼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경우 높은 추세성장률(trend growth)과 소규모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로 인해 성장률 부진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추계 시뮬레이션을 통한 부채전망 평가 결과 일본, 그리스, 미국의 중기 부채전망이 부정적임
 - 2016년도까지 일본, 그리스, 미국의 부채 비율이 안정화될 확률은 50% 미만일 것으로 예측

[그림 1-III-4] 중장기 재정취약성 평가지수



Sources: Bloomberg L.P.; IMF World Economic Outlook; and IMF staff estimates. Data are from September 2011.

1/ I₁ indicates the required primary balance that needs to be maintained from 2020-30 to reduce the debt ratio to illustrative targets by 2030 (in most cases gross debt-to-GDP ratio of 60 percent, or to stabilize at the end-2012 if below 60 percent; net debt targets for Australia, Canada, Japan (80 percent) and New Zealand. See Section II.B and Appendix C for methodological details.

2/ Assumes a one percentage point lower real GDP growth in 2011-16 than in the WEO baseline projection.

3/ Cumulative increase in interest bill starting in 2011. Shock assumes that the interest rate on new issuances is 100 basis points higher than in the baseline.

4/ Based on probability distributions resulting from random shocks to key macroeconomic variables and fiscal response functions based on historical data (see Section II.B and Appendix E for methodological details).

2. IMF 연금개혁(2011년 12월 28일 발표)¹³⁾

- 공적연금개혁은 전세계적으로 증대한 정책과제
 - 연금지출은 선진국의 경우 1970년~2010년에 GDP 대비 3.5%p, 개도국은 1990~2010년에 GDP 대비 1.5%p 증가
 -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총지출(primary total spending)의 약 1/5에 해당
 - 많은 국가들은 GDP 대비 부채 비중을 낮추기 위한 재정건전화 필요

가. 공적연금제도의 형태와 급여방식

- 현재 공적연금제도는 노령·유족·장애인 연금을 포함
 -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볼 때, 총연금지출 비중은 노령연금 75%, 유족연금 10%, 장애인연금 15%
- 연금방식은 확정급여·확정기여·정액급여 등 제도구성에 따라 상이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급여가 결정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기여금 수익률에 따라 결정
 - 정액급여형 : 퇴직전 소득에 관계없이 정액지급, 자산조사 기준을 적용하기도 함
- 연금제도 운영방식은 부과방식(pay-as-you-go)과 적립방식(funded)으로 구분

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적연금제도 전망

- 상방리스크를 확인하려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 향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적연금지출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
 - 선진국과 개도국에서의 연금지출은 향후 20년간 GDP 대비 1%p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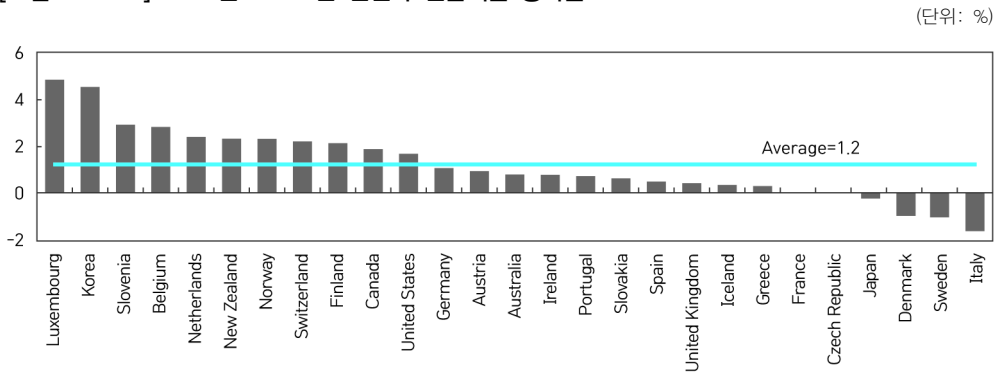
13) Cottarelli, C. "The Challenge of Public Pension Reform in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IMF Policy Paper*, 2011.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순병민 연구원(soonbm@kipf.re.kr)

SECTION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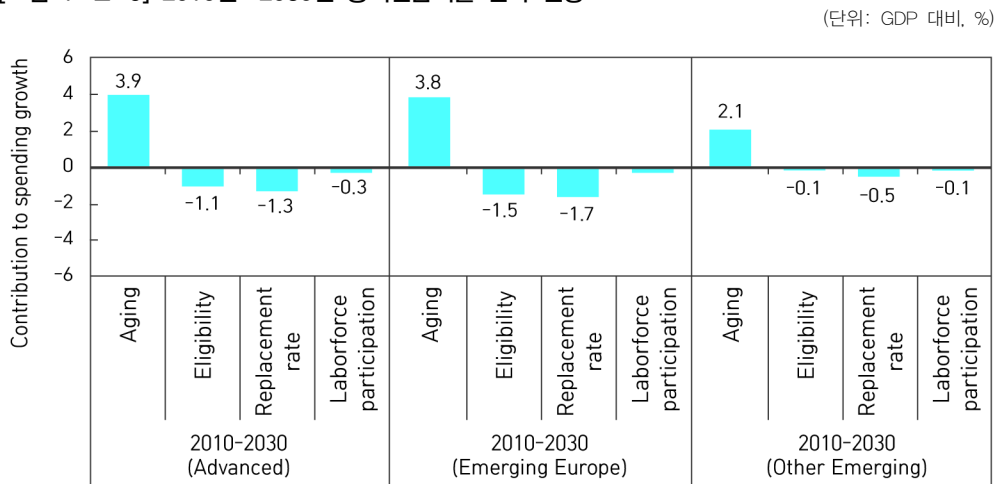
- 벨기에, 핀란드,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연금지출이 GDP 대비 2%p 초과 전망

[그림 1-Ⅲ-5] 2010년~2030년 선진국 연금지출 증가율



- 선진국의 부양률(old-age dependency)은 2010년과 2050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할 것이며 개도국은 203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만약 개혁의 부재 시 인구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지출은 선진국과 유럽 개도국 GDP 대비 4%p, 개도국 GDP 대비 2%p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1-Ⅲ-6] 2010년~2030년 공적연금지출 변화 전망



자료: OECD, EC, ILO, UN, IMF 참모 판단

- 연금지출증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
 - 향후 20년간 연금지출증가의 평균현재할인가치(average present discounted value)는 2010년 GDP 대비 선진국은 9%, 개도국은 7% 전망
 - 향후 30년간 연금지출증가의 평균현재할인가치는 2010년 GDP 대비 선진국은 36%, 개도국은 48% 전망

다. 연금개혁에 대한 고려사항

- 연금개혁은 재정건전화 정책·형평성·경제성장애의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 재정건전화 정책
 - 연금을 포함한 노령관련 지출 비중을 안정화시켜 추후에 다른 분야지출을 삭감해야 하는 필요성을 미리 방지할 필요
 - 이를 위해 연금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함
 - 현재 연금부담 총량을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중장기 재정부담을 파악하고 연금개혁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
 - 형평성
 - 세대 간 소득 재분배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시키고 형평성 문제 해소
 - OECD 국가에서 전체 인구 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의 평균 비율이 1970년대에는 1.9에서 2000년대에는 1.4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연금의 재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짐
 - 경제성장
 - 연금개혁을 통한 노동공급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경제성장에 기여
 - 연금수급 개시연령 증가는 노동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침

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연금개혁 과제

- 현재까지 추진된 연금개혁이나 재정건전화 계획을 볼 때 연금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은 높은 부채와 노령관련지출(보건)에 대한 문제 동시 해결이 필요
 -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을 통한 수급자 축소와 연금급여액 감축, 연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재정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은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반해야 함
 -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은 조기 은퇴를 제한하는 단계를 수반할 필요가 있음
- 유럽 개도국은 우선적으로 공적연금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함
 - 재정건전화를 위해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동일하게 하고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연동시키며 조기 노령연금의 자격조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금을 임금에 아닌 물가에 연동시키고, 소득기준을 생애소득으로 전환하여 소득대체율을 낮출 수 있음
- 유럽 외의 개도국에서는 연금제도의 포괄 범위 확대를 조절하는 데 중점
 - 경제의 체계화(formalization)를 진행하는 것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나 한계적 개혁(parametric reform)을 통해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압력을 방지할 필요
 - 매우 낮은 포괄범위를 보여주는 국가들은 빈곤 감소를 위해 정액연금(flat pension)을 제공하는 사회연금(social pension)을 고려할 수 있음

마. 이슈 및 정책요약

-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국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상이함
 - 대부분의 선진국은 2030년에는 높은 수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증가시켜 수급자 수를 축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
 -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는 2030년에 높은 소득대체율이 전망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동유럽, 브라질, 남아프리카는 2030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동일하게 하고 장애인 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이집트와 터키는 제도의 포괄 범위가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제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연금제도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
 -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은 낮은 대체율과 수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과제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방법 내에서 연금제도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SECTION 1 >>

[그림 1-III-7] 연금이슈와 국가별 연금 개혁

	Need reform due to:			Main risks to projections:			Main areas for reform:				
	Age-related spending increases ¹	Pension spending as a percent of GDP ²	Pension spending as a percent of primary spending ³	Share of private pensions ⁴	High longevity ⁵	Low productivity ⁵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⁵	Eligibility rate ⁶	Replacement rate ⁷	Tax wedge ⁸	Efficiency of contributions ⁹
<i>Advanced economies:</i>											
Australia				x						x	
Austria	x	x	x					x			x
Belgium	x		x					x			
Canada	x			x				x			x
Czech Republic					x						
Denmark				x	x						
Finland	x	x		x				x			
France		x	x					x			
Germany		x	x					x			
Greece	x	x	x		x			x			x
Iceland	x			x							
Ireland				x						x	x
Italy		x	x			x			x		
Japan			x								
Korea	x							x		x	x
Luxembourg	x							x			
Netherlands	x			x				x			
New Zealand	x									x	
Norway	x								x		
Portugal	x	x	x		x	x		x			
Slovakia					x			x			x
Slovenia	x	x	x		x			x			
Spain			x			x					
Sweden											x
Switzerland	x		x	x						x	x
United Kingdom	x			x				x			x
United States	x			x				x		x	
<i>Emerging economies:</i>											
Argentina			x								
Brazil			x					x			
Bulgaria			x		x			x			
China	x										
Chile			x	x							
Egypt									x		
Estonia			x					x			
Hungary		x	x					x			
India											x
Indonesia											
Jordan											
Latvia								x			
Lithuania			x		x			x			
Malaysia								x			
Mexico											x
Pakistan											
Philippines											
Poland		x	x					x			x
Romania			x		x			x			
Russia	x		x		x			x			
Saudi Arabia	x				x						
South Africa				x	x						
Thailand					x						
Turkey	x		x		x			x	x		x
Ukraine		x	x		x			x			

¹Projected age-related spending increase 2010–2030 exceeds 3 percentage points of GDP.

²Pension spending as a percent GDP exceeds 10 percent.

³Pension spending as a percent of primary spending in 2010 exceeds 20 percent.

⁴Pension fund assets in 2010 are in excess of 40 percent of GDP.

⁵Pension spending increase 2010–2030 under high longevity, low productivity, or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is greater than ½ percentage point of GDP relative to baseline.

⁶The ratio of pensioners to population 65 and older in 2030 is projected to be greater than 110 percent.

⁷The ratio of average gross pension to average gross wage in 2030 is projected to exceed 50 percent.

⁸The sum of income and payroll taxes as a share of labor earnings in 2010 is below 30 percent.

⁹The ratio of social contributions as a share of GDP to payroll rates as a percent of total labor costs in 2010 is less than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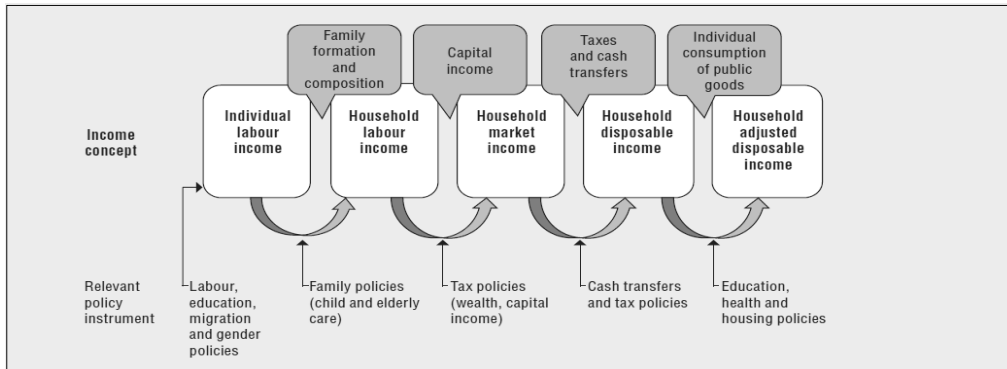
Note: Tax wedge and payroll tax yield only available for OECD economies.

3. OECD, 소득 불평등과 조세와 이전지출의 역할(2012년 1월 발표)¹⁴⁾

가. 소득불평등

- 개인소득에서부터 최종소득까지 소득의 포괄범위 차이에 따라 총 다섯 단계의 소득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음
 - 이 중 가계 단위의 노동소득과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개념이 소득불평등 분석에 가장 적합
 - 개인소득(individual labour income): 시장에서 각 소득자들이 노동을 통해 수취한 소득
 - 가계소득(household labour income): 가족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총합
 - 가계시장소득(household market income): 가계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산한 소득
 - 가계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 가계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을 합산하고, 각종 세금을 차감한 소득
 - 가계조정가처분소득(household adjusted disposable income): 세후소득에 현물급여(in-kind benefit)를 합산한 소득으로 정의

[그림 1-Ⅲ-8] 소득의 개념



14) OECD, "Income Inequality and Growth: The Role of Taxes and Transfers," *OECD Economics Department Policy Notes*, No.9,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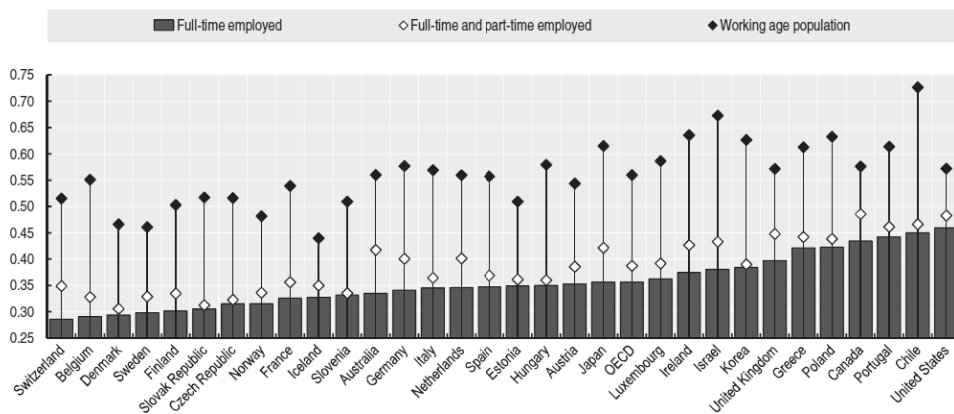
OECD, "Reducing Income Inequality While Boosting Economic Growth: Can It Be Done?,"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2012*, OECD, 2012, pp. 181-202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황보경 연구원(hwangbo@kipf.re.kr)

SECTION 1 >>

-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가계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 칠레, 포르투갈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로 평가됨
- 분석대상을 비정규직과 노동연령인구¹⁵⁾로 확대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로 인해 국가별 가계소득 불평등도가 더욱 확대됨
 - 이러한 현상은 특히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국가(호주, 독일, 일본, 영국)와 실업률이 높은 국가(벨기에, 칠레, 헝가리, 이탈리아)에서 관찰됨

[그림 1-Ⅲ-9] 국가별 가계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¹⁾, 2008)



Note: The Gini index is a measure of inequality that ranges from zero (perfect equality) to one (where one individual receives all earnings). The group of employed individuals includes both dependent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The working age population includes all persons aged 15 to 64 except for students and people above the country's statutory retirement age. The Gini coefficients take into account labour earnings only; the precise data for labour earnings differs across countries. 2007 for France,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009 for Australia and Japan. The value for the OECD is calculated as an unweighted average across all OECD countries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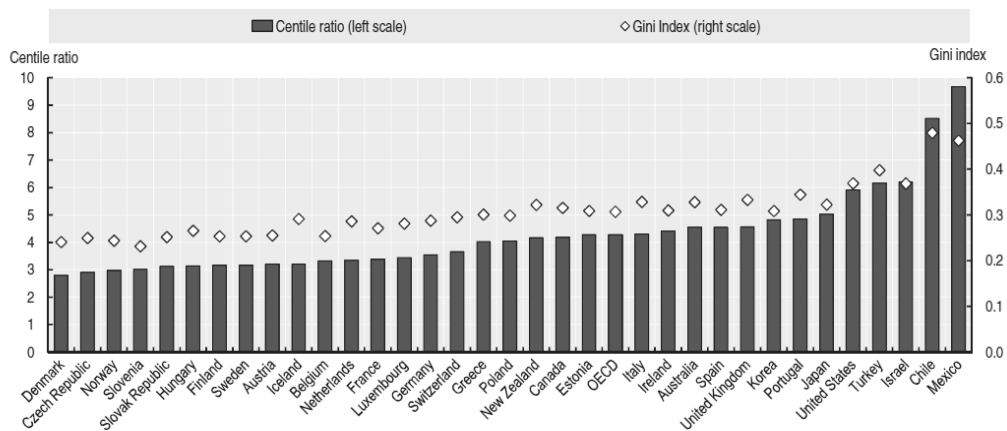
Sourc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 for the United States;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Survey (HILDA) for Australia;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zation Survey (CASEN) for Chile;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for Korea; Luxembourg Income Study (LIS) for Israel; Japan Household Panel Survey (JHPS) for Japan; Swiss Household Panel (SHP) for Switzerland; and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for the other countries.

- 가계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의 소득분포 역시 나라별로 상이함
 - 동유럽국가와 북유럽국가(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10분위 소득비율에서 최상위 10%의 가구소득이 최하위 10%의 약 3배로 나타났음
 -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약 6배에 달함

15) 노동연령인구는 15세부터 64세를 포함

- 한편 조세 및 이전지출이 반영된 가계가처분소득이 가계소득보다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가 더 낮음
 - 가계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조세·이전지출 반영 전보다 약 25% 감소하였고, 빈곤 수치는 약 55% 감소됨

[그림 1-III-10] 계층 간 소득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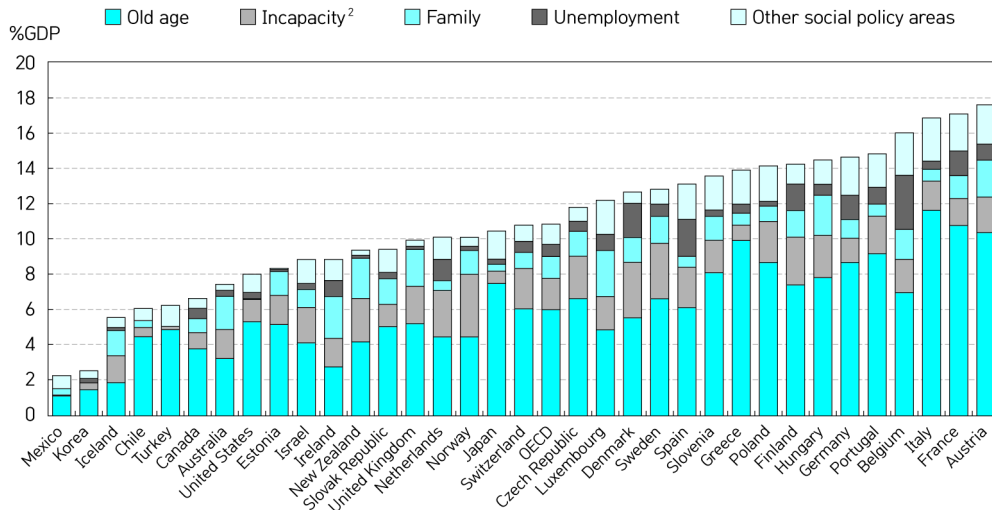
Note: Data for France and Ireland refer to the mid-2000s instead of the late 2000s.

Source: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나. 조세·이전지출의 역할

- 조세 및 각종 현금 사회부조(공적연금, 실업급여 등)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OECD 국가 소득불평등 완화에 평균적으로 공적이전이 약 3/4, 조세정책이 1/4 비중을 차지
- 공적이전에서 연금의 차지비중이 가장 높으나(일부국가 제외), 계층 간 재분배 효과는 다소 약한 편임
 - 연금은 주로 생애주기 관점에 입각한 재분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연금·실업수당보다 가족·주택수당 등 다소 누진적인 이전지출의 계층 간 불평등 개선효과가 높음

[그림 1-Ⅲ-11] 국가별 공적이전 비중



주: 1. The data shown here exclude private mandatory spending which accounts for an important share of total social spending in some countries (in particular Chile, Germany and Switzerland). In addition, public cash transfers shown here may not fully account for those programmes and services provided, or co-financed, by local governments. Measurement gaps may be high, notably in federal countries such as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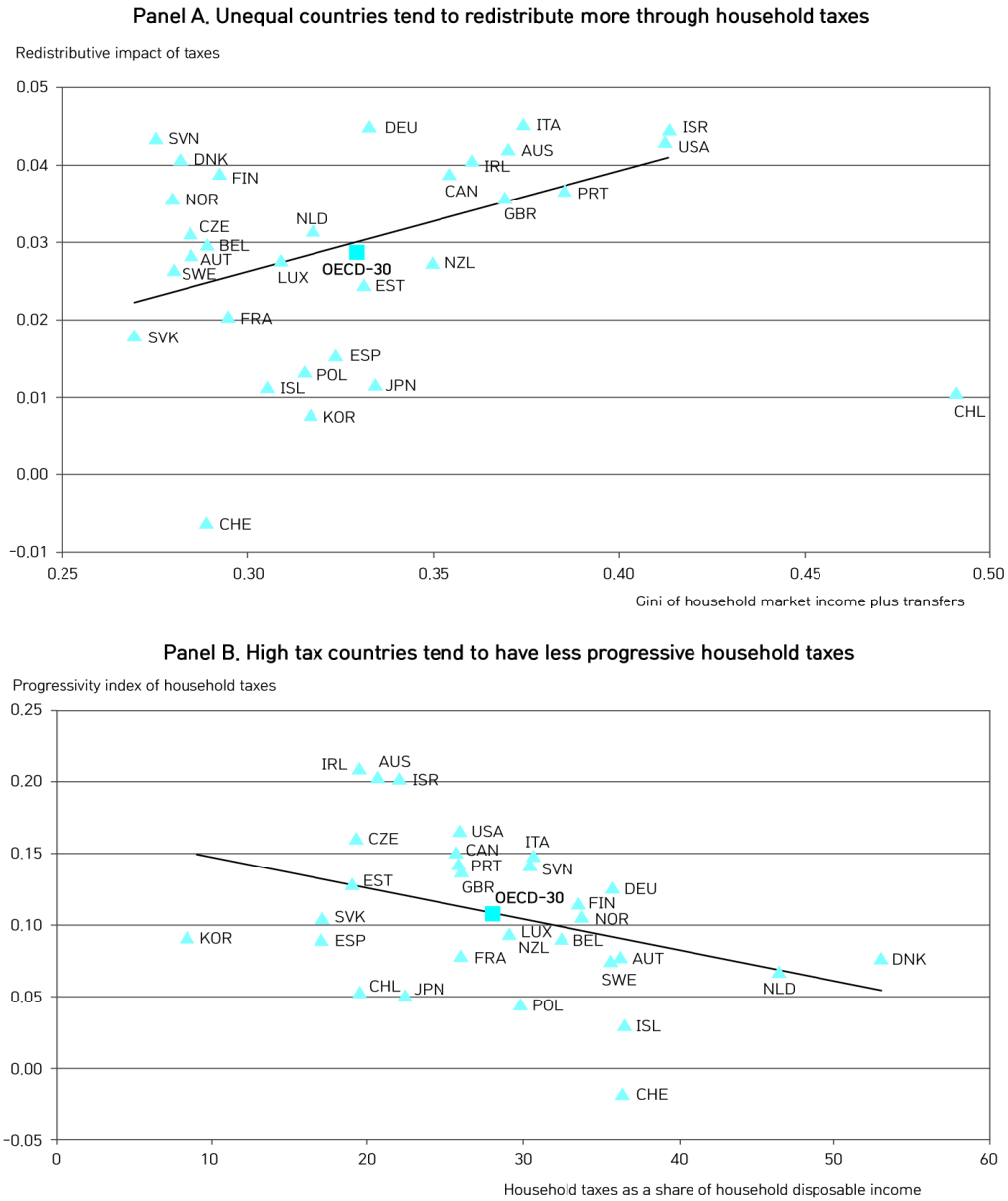
2. Incapacity-related spending covers expenditure on disability pensions and sick leave schemes (occupational injury and 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s).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 조세의 재분배효과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대체로 지니계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효과가 높다고 평가됨
 - 2000년대 후반, 조세의 재분배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 조세의 재분배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국가는 스위스, 칠레, 아일랜드, 한국
- 소득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세 누진도 낮은 편
 - 특히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가 해당됨
 - 소득세율이 35% 이상인 오스트리아·덴마크·스웨덴의 경우, 세율이 훨씬 낮은 호주·이스라엘·미국에 비해 재분배효과가 낮음
 - 한편 칠레·한국·일본 등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국가의 소득세 누진도가 낮은 경우도 있음

[그림 1-Ⅲ-12] 조세의 재분배효과, 소득세율 및 누진도



주: The redistributive impact of household taxes is measu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ntration coefficient of income after transfers but before taxes and that of disposable income (*i.e.* after taxes and transfers). The progressivity index of household taxes is the Kakwani index computed as the concentration coefficient for taxes less the concentration coefficient for income after transfers and before taxes. Data for France and Ireland refer to the mid-2000s. In Panel A, the trend line excludes Chile. Data for Greece, Hungary, Mexico and Turkey are not available.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다. 소득불평등의 5가지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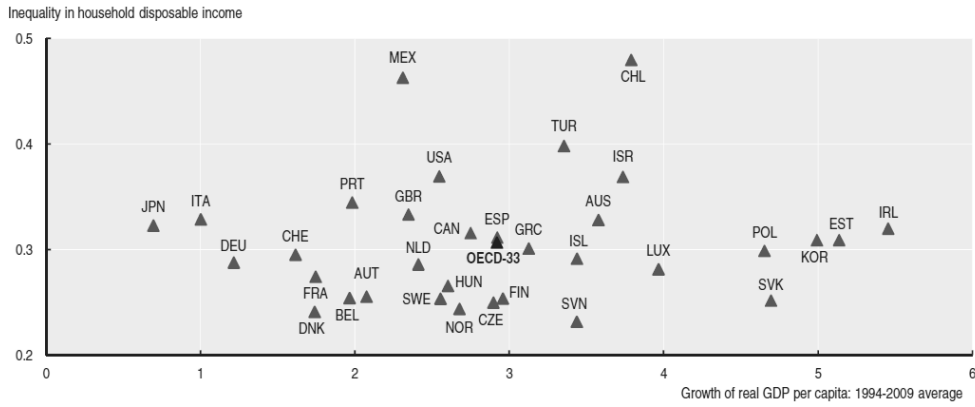
- 소득불평등 정도에 따라 5개의 국가그룹을 정의할 수 있음
 -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국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 높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격차로 인해 불평등도가 가장 낮음
 - 그러나, 평균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스웨덴 제외) 소득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요인
 - 보편적 복지와 비례세 등 대체적으로 온건한 재분배정책을 펼침
 -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빈곤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
 - 불평등도가 OECD 평균 아래인 국가: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낮은 고용률(특히,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로 인해 노동 시장의 불평등 존재
 - 임금 격차는 외국과 비교하여 크지 않은 편
 - 자영업소득 및 자본소득의 높은 비중으로 가구시장소득의 불평등도가 OECD 평균치(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제외)
 - GDP 대비 조세·이전지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를 통해 가구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을 OECD평균 이하로 낮춘 것으로 평가됨
 - OECD평균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국가: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페인
 - 대체적으로 임금격차가 큰 편
 - 고용률이 낮은 국가들은 그리스, 헝가리, 한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페인
 - 오스트리아, 일본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음
 - 그리스와 한국 등 몇몇 국가는 소득재분배가 가족단위로 개선되어짐
 -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비
 - 한국의 경우 이전지출의 규모가 소규모이며,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일본, 폴란드, 스페인의 경우 누진도가 높지 않음
 -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빈곤률은 OECD 평균치

라. 성장과 불평등: 정책적 상관관계

- 경제성장 정책과 소득불평등 개선은 상충적 혹은 보완적
 -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경우
 - 교육의 질 향상,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이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이주민 통합정책, 여성의 사회활동 정책 등
 - 그러나, 무분별한 복지확대는 노동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킴
 - 한계세율 인하 및 조세지출¹⁶⁾ 삭감
 - 조세지출의 가장 큰 수혜 계층은 고소득층이기에, 조세지출삭감을 통해 소득격차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1인당 GDP는 증가하지만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우
 - 소득세에서 소비세 및 부동산 취득세로의 세제 개혁
 - 소비세는 노동 및 저축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 1인당 GDP 증가 효과가 있음
 - 소득세·법인세는 다소 누진적인 데 반해 소비세와 부동산세는 역진적인 편
 - 한편 선별적 이전지출을 통해 상충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음
- 정부의 이전지출이 미치는 효과는 정책이 어떻게 고안되어져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실업수당의 경우 단기에는 불평등 개선효과가 높으나, 장기적으로 노동 유인을 저하시켜 GDP와 소득불평등도에 역효과
 - 따라서 장기적인 실업수당의 확대는 피해야 함
 -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며, 낮은 최저임금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위험이 존재
 - 재산세 혹은 상속세로의 전환은 1인당 GDP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세의 누진정도에 따라 영향이 다름
 - 소득세에 비해 재산세와 상속세의 누진도가 더 높음

16)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재정지원의 목적으로 비과세·감면·공제 등의 정책적 감면조치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수입의 감소분

[그림 1-Ⅲ-14]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Note: Inequality i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s measured by the Gini index. The inequality measures refer to the late 2000s, except for France and Ireland for which they refer to the mid-200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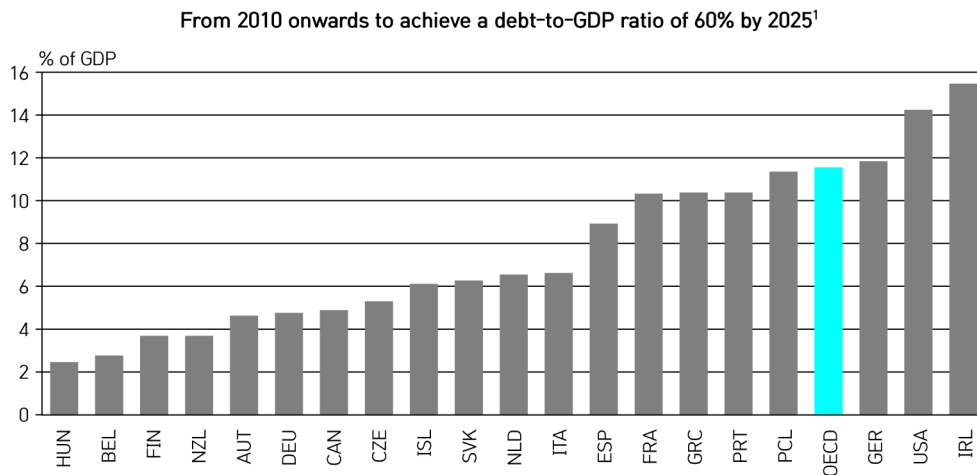
Source: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Database).

4. OECD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 논의¹⁷⁾

가. OECD 국가들의 재정상황

- 지난 4년 동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재정 건전화가 절실히 필요
 - 대부분의 재정건전화는 지출과 수입의 안정화 및 GDP 대비 채무를 위해 구조개혁을 동반
 - OECD는 2010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가 될 것으로 예측¹⁸⁾하였고 2011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GDP 대비 국가채무를 2025년까지 60%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약 12%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

[그림 1-Ⅲ-15] 국가채무 60% 목표를 위해 필요한 매년 기초수지 개선 규모



자료: OECD(2011a), Going for Growth.

17) Hagemann, R., "Fiscal Consolidation: Part 6. What Are the Best Policy Instruments for Fiscal Consolidation?,"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37, OECD, 2012.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최경진 연구원(choikj@kipf.re.kr)

18) 3/4 정도는 구조적 수지로 판단됨

나. 재정건전화 정책 경제성장 간의 대체관계와 보완관계

1) 지출 구조조정

정책	세부정책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		성장에 미치는 영향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	참고
		단기적	구조적			
1. 사회적 소득이전(Social transfer)						
A. 실업수당의 감소	순 소득대체율(replacement)을 OECD 국가의 중위값(median) 수준으로 감소 시	-	-	구조적실업률은 개혁 내용이나 속도에 따라 0.5 ~ 1.5%까지 하락 (Bouis and Duval, 2011)	실업수당을 1표준편차 만큼 감소시키면, 1인당 GDP는 10년간 5.2%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8.5% 증가	실업수당을 감소시키는 것과 더불어 다른 정책들을 통해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B. 노동 시장 지원 (ALMP ¹⁹)	덴마크 국가들 평균(GDP대비) 정도로 노동시장지원 지출 증가 시	+		· 효과적인 구조활동에 의해 노동활동도 개선 · 기술-직업매칭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	++	
C. 가족 지원(benefits)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구직활동과 연계된 지원정책 필요	-	-	구직활동을 지원과 연계시켜 노동공급을 증가	+	
2. 연금개혁(Pensions)						
A. 정년연장	연금수령 법정연령 연장의 단계적 도입	-	-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저축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법정년연령의 증가가 은퇴결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혜택이나 연령관련 지원책 등과 함께할 경우 더 효과적임
B. 법정 퇴직연령을 기대수명과 연동		없음	-	노동인구 증가	++	인구의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절됨
C. 조기퇴직 감축/퇴직지원 증대	조기퇴직에 대한 패널티를 높 이거나, 지속적인 근로에 대해 임무적 세금을 낮추는 방안	-	-	노동인구 증가	+	

정책	세부정책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	참고
		단기적	구조적		
3. 보건					
효율성 증진	OECD국가의 보험 범위 및 서비스 제공 방식에 관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적용		2011-17년 동안 OECD 평균은 GDP의 -2%	+	가능한 개혁 조치들은 예산캡(cap)적용, 공급제한, 가격통제, 시장메커니즘 이용의 증가 등
4. 교육					
A. 초중고등학교 시스템의 '모범 사례' 채택	i) 분권화를 통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예산 프로세스에 잘 반영되게 함 ii) 예산 관리는 독립적이며 성과에 초점을 맞춘 iii) 경쟁의 확대	-	GDP의 1%	+	
B. 고등(tertiary)교육의 도입 및 학비인상	고등교육의 개인적인 수익률과 공공의 수익률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학비를 점차 증가시킴	-	-	+	· 숙련된 기술을 통한 노동력의 노동생산성 향상 · 수업을 인상은 교육기관의 경쟁을 높이고, 학업완료 기간을 단축
5. 정부운영비용					
공공 민간부문의 임금 조정	정부는 직무검토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적절한 규모 및 구조를 파악할 유인을 가진				

참고: 음(양)의 표시는 재정적자/성장 등을 줄이(늘리)는 것을 의미함

19) ALMP: Active labour market program

2) 수입 구조조정

정책	세부정책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		성장에 미치는 영향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	참고
		단기적	구조적			
1. 소득세 기반 확대	i)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막 표로 현물-현금 소득 중 주요 제외항목들을 검토 ii) 원래 취지를 기준으로 공제 항목들을 재검토	-	-	• 소득세의 효과는 영향을 받는 세급혜택에 의존 • 애국의 감소는 노동과 자본의 분배를 개선 • 혜택의 축소는 형평성 개선을 통해 순요도를 높임	++	과세 기반(tax base)을 확 대하면 법정세율(statutory) 을 줄일 수 있고, 효율 성 증가를 통한 연쇄적 인 성장효과가 있음
2. 부가가치세 기반 확대	세율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표준 부가가치세(standard VAT) 적용 확대 검토	-	-			과세기반 확대는 표준세 율을 낮게 함
3. 부동산세 도입 및 인상	국가수준의 부동산세가 없는 국 가는 낮은 세율로 부동산세를 도입하거나 지방정부의 부동산 세에 부가세(surtax)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	-			
4. 환경관련 세금 도입 및 강화	탄소세의 도입 혹은 방출권 경 매제도 도입	-	-			성장에는 음의 영향을 주나, 후생(welfare)은 향 상됨

다. 재정건전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의 기여도를 수치화

(단위: GDP 대비 %)

	AUS	AUT	BEL	CAN	CHE	CZE	DEU	DNK	ESP	FRA	FIN	GBR	GRC	HUN	ISL
지출															
1. 사회적 소득이전															
A. 가족 지원	0.5	0.7	0.6	-	-	0.1	-	1.4	-	1.1	0.9	1.3	-	1.4	1.0
B. 장애인 지원	-	0.3	0.2	-	0.5	0.5	-	1.3	0.6	-	0.9	0.3	-	0.6	-
2. 연금															
A. 세금우대 제거	2.7	0.1	0.1	2.0		0.1	0.8		0.2	0.0	0.1	1.2			1.0
3. 보건															
A. 효율성 증진	0.5	1.8	2.1	2.5	0.5	1.3	1.3	2.8	1.6	1.3	2.5	3.7	3.9	1.7	1.9
4. 교육															
A. 초중고교육의 효율성 증대	0.4	0.4	0.5	0.2	0.2	0.2	0.4	0.6	0.2		0.2	0.2		0.3	1.1
B. 고등교육의 도입 및 학비 인상	-	0.4	0.4	-	0.4	0.3	0.4	0.4	0.2	0.3	0.4	-	0.4	0.4	0.3
5. 정부운영비용															
A. 공공-민간부문의 임금조정	-	0.3	0.6	-	-	0.4	0.2	2.0	1.0	-	0.5	1.8	-	-	-
B. OECD평균 수준으로 보조금 축소	-	2.3	0.8	-	2.4	0.7	-	1.2	-	0.2	-	-	-	-	0.4

	AUS	AUT	BEL	CAN	CHE	CZE	DEU	DNK	ESP	FRA	FIN	GBR	GRC	HUN	ISL
수입															
1. 부가가치세 기반 확대	0.6	-	1.4	-	-	-	0.4	-	1.4	1.4	0.1	1.8	2.0	0.1	0.8
2. 부동산세 도입 및 인상	-	0.8	0.6	-	0.9	0.8	0.6	-	0.3	-	0.5	-	0.8	0.7	-
3. 환경관련 세금															
A.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 1990년 수준의 20% 이하까지 감축)	4.2	1.8	1.8	2.5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IRL	ITA	JPN	KOR	LUX	MEX	NLD	NZL	NOR	POL	PRT	SVK	SWE	TUR	USA
지출															
1. 사회적 소득이전	0.7	-	-	-	1.2	-	0.1	1.1	0.9	-	-	-	1.4	-	-
A. 가족 지원 ²⁰⁾	-	-	-	-	0.1	-	0.8	0.7	1.8	0.6	0.3	-	1.3	-	-
B. 장애인 지원 ²¹⁾															
2. 연금	1.2	0.0	0.7		0.5	0.2			0.6	0.2	0.1	0.2			0.8
A. 세금우대 제거 ²²⁾															
3. 보건	4.8	1.1	0.8	0.6	2.0	0.7	2.7	2.6	1.5	1.5	1.0	2.7	2.7	1.5	2.7
A. 효율성 증진 ²³⁾															
4. 교육	0.3	0.4	0.2	-	0.5	-	0.3	0.3	0.8	0.2	0.1	0.2	0.5	-	0.8
A. 초중교육의 효율성 증 대 ²⁴⁾	0.3	0.2	-	-	0.4	0.1	0.2	-	0.4	0.1	0.1	-	0.4	0.4	-
B. 고등교육의 도입 및 학 비 인상 ²⁵⁾															
5. 정부운영비용	0.9	1.1	0.6	-	0.8	-	0.3	0.9	-	2.2	-	0.8	0.7	-	0.5
A. 공공-민간부문의 임금조 정 ²⁶⁾	-	-	-	-	0.2	-	0.1	-	0.7	-	-	0.2	0.1	-	-
B. OECD평균 수준으로 보 조금 축소 ²⁷⁾															

	IRL	ITA	JPN	KOR	LUX	MEX	NLD	NZL	NOR	POL	PRT	SVK	SWE	TUR	USA
수입															
1. 부가가치세 기반 확대 ²⁸⁾	0.4	2.6	-	-	-	2.5	-	-	0.2	1.4	1.2	0.6	-	3.3	-
2. 부동산세 도입 및 인상 ²⁹⁾	0.2	0.4	-	0.0	0.9	0.8	0.4	-	0.7	-	0.3	0.6	0.2	0.9	-
3. 환경관련 세금															
A. 온실가스 감축 ³⁰⁾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 1990년 수준의 20% 이하 까지 감축)	1.8	1.8	1.2		1.8		1.8	4.2		1.8	1.8	1.8	1.8		2.2

참고: 빈 칸은 정보 없음을 나타냄, '-' 표시는 절감이 없는 항목

- 20) OECD Socex 자료에 보고된 수치를 OECD 비가중평균으로 줄이는 것에 근거함
- 21) OECD Socex 자료에 보고된 수치를 OECD 비가중평균으로 줄이는 것에 근거함
- 22) OECD(2001), Pensions at a Glance 의 2007년 자료에 근거함
- 23) Joumard et al., 2010.
- 24) Sutherland et al., updated to 2007 spending figures, 2007.
- 25)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가구지출이 카테고리 내에서 가구지출이 있는 국가의 비가중평균까지 증가했을 때를 근거함
- 26) 정부비용의 상대성(Government wage relativities)은 2000년대 초반의 민간부문(private sector)임금 대비 공공임금의 수익률에 기초함
- 27) 2009년 국민계정정보를 OECD 비가중평균으로 줄이는 것에 근거함
- 28) collection efficiency가 OECD 비가중평균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함
- 29) 2008년 재정정보(Revenue Statistics) 비가중평균을 기초로 함
- 30) Serres et al., 2010.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I. 미 국 (FY2012: 2011. 10~2012. 9)

II. 일 본 (FY2011: 2011. 4~2012. 3)

III. 영 국 (FY2011-12: 2011. 4~2012. 3)

IV. 프랑스 (FY2012: 2012. 1~2012. 12)

V. 독 일 (FY2012: 2012. 1~2012. 12)

VI. 캐나다 (FY2011-12: 2011. 4~2012. 3)

VII. 호 주 (FY2011-12: 2011. 7~2012. 6)

〈 주요국 재정동향 요약 〉

- 미국은 2012년 2월 14일 FY2013 대통령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곧이어 2012년 2월 22일 기업과세제도 개편(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추진 계획을 발표함
 - 대통령 예산안은 미국의 강력한 재정적자 축소 추진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 등을 포함
 - 미 재무부는 기업과세제도 개편방안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 제조업 지원 확대, 조세체계 간소화, 국내투자활성화, 재정책임성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았음
- 일본은 FY2012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일본재생 중점화 조치」 등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 FY2012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42조 3,460억엔으로 예상, FY2012 세출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90조 3,339억엔 편성
 - 「일본재생 중점화 조치」 추진, 「제언형 정책분담」의 제언을 FY2012 예산에 최대한 반영, 공공부문의 낭비를 삭감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노력
- 영국은 2011.11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FY2012-13 사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영란은행은 2012.2월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500억파운드 확대하기로 결정
 - FY2012-13 사전예산안인 가을보고서에서는 2012년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전망하고,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속도도 완만하게 예측
 -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양적완화프로그램 규모 확대와 함께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
- 프랑스의 경우 기업의 노동비용을 감소하는 정책, 고용촉진정책, 세입증가방안(부가가치세와 일반사회각출금 세율 인상), 금융거래세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 수정예산을 발표

- 2012년 수정예산은 2월 초 정부에서 발의하여 2월 말 의회에서 최종 승인
 - 한편 2011.12월 확정된 2012년 사회보장예산은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통제하고, 보조금 및 사회보장수당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
- 독일은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지속: 경제성장과 재정안정 두 가지 목표 동시 추구' 기조의 2012년 예산을 2011.11월 확정
- 2016년부터 부채제한법에 의해 GDP의 0.35% 미만의 신규부채만 허용하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Top-down 예산 방식 도입
 - 보조금 감축·인센티브 강화 등 성장지향적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세원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부문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캐나다 재무부는 2011년 11월 8일 FY2011-12 예산안의 경제 및 재정전망을 수정한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 발표
- (실질GDP 성장률) 2012년 실질GDP 성장률은 약화된 세계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여 2011.6월 전망치보다 0.7%p 낮은 2.1% 전망
 - (재정수지)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계획(DRAP, the Deficit Reduction Action Plan)으로 FY2015-16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 호주는 2011년 자연재해로 재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성장과 FY2012-13 예산흑자 전환 예상 등 재정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전망
- 2011.11월 예산안의 경제 및 재정전망을 업데이트한 반기경제·재정보고서 발표
 - 2011.9월 예산수지 적자를 전망보다 17억호주달러 개선한 FY2010-11 결산보고서 발표

I 미국 (FY2012: 2011. 10~2012. 9)*

〈표 2-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12/02/14	오바마 대통령 FY2013 예산안 발표
2012/02/14	2013회계연도 세입계획안 '그린북(Greenbook)' 발표
2012/02/22	기업과세제도 개편추진 정부 구상안 발표
2012/02/22	중산층 조세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안 미 양원통과 - 법안서명완료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경제전망) 2012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2.7%, 2013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0.3%p 증가한 3.0% 전망(calendar year 기준)
 - 2018년까지의 지속적인 실업률의 감소추이는 경기회복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표 2-I-2〉 경제전망

(단위: %)

경제전망 ¹⁾	2012	2013	2014	2015
실질GDP 성장률	2.7	3.0	3.6	4.1
명목GDP 성장률	4.5	4.7	5.3	6.0
CPI	2.2	1.9	2.0	2.0
실업률	8.9	8.6	8.1	7.3

주: 1) 경제전망: 1월 1일~12월 31일, 재정전망: 10월 1일~9월 30일(회계연도)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OMB, 2012, 2.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구윤모 연구원(ymgoo@kipf.re.kr)

SECTION 2 >>

- (재정전망) 미국의 강력한 재정적자 축소 추진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
 - (재정수입) FY2013 재정수입은 약 2조 9,020억 달러로, GDP의 17.8%전망
 - (재정지출) FY2013 재정지출은 약 3조 8,030억 달러로, GDP의 23.3%전망

〈표 2-I-3〉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재정전망 ¹⁾	2012	2013	2014	2015
재정수입	15.8	17.8	18.7	19.0
재정지출	24.3	23.3	22.6	22.3
재정적자	8.5	5.5	3.9	3.4

주: 1) 재정전망: 10월 1일~9월 30일(회계연도)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OMB, 2012, 2.

- (예산기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단기 부양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해법 마련
 - 세율조정 및 부유세 신설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R&D지출 확대
 - 일자리 창출

- (세입) FY2013 재정수입은 FY2012 대비 17.5% 증가
 - FY2014~FY2022기간 동안의 재정수입은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관세(customs duties), 유산세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es) 수입은 전년도 대비 각각 6.4%, 18% 증가 전망

<표 2-I-4> 분야별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인소득세	1,091	1,165	1,359	1,476	1,617	1,763	1,912	2,052	2,184	2,319	2,459	2,605
법인세	181	237	348	430	445	455	473	480	485	494	507	520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사회보장 급여세	566	572	677	742	781	833	881	936	987	1,034	1,093	1,150
의료보험(Medicare) 급여세	188	203	214	226	240	257	273	290	306	321	339	357
실업보험	56	57	58	59	75	79	75	73	65	64	66	67
기타 퇴직연금	8	9	10	11	12	12	13	13	14	14	16	17
소비세	72	79	88	99	104	106	112	120	136	142	150	159
유산세 및 증여세	7	11	13	23	25	27	29	32	34	37	39	42
관세	30	31	33	36	38	39	41	44	46	48	50	52
연방준비제도 이익금	83	81	80	61	46	36	36	38	40	42	43	45
기타 수입(연방준비제 도 이익금 제외)	20	24	21	52	68	71	74	77	83	89	95	101
총 재정수입	2,303	2,469	2,902	3,215	3,450	3,680	3,919	4,153	4,379	4,604	4,857	5,115
GDP 대비 %	15.2	15.6	17.6	18.5	18.7	18.8	19.0	19.1	19.3	19.5	19.7	19.9

□ (세출) FY2013 재정지출은 FY2012 대비 0.9% 증가

- FY2014~FY2022 기간 동안 재정지출은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중산층 지원 및 교육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한 세출계획이 담겨 있음
- 일자리 증대를 위한 단기 조치(3,500억달러),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의 정부투자 확대 (4,760억달러)

SECTION 2 >>

〈표 2-I-5〉 분야별 지출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출:												
재량지출 프로그램:												
안보	838	868	851	768	749	757	771	786	803	820	837	856
비안보	462	450	410	393	385	386	390	397	405	415	420	430
재량지출 프로그램 합계:	1,300	1,319	1,261	1,160	1,135	1,143	1,162	1,183	1,208	1,236	1,258	1,287
법정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725	773	820	867	918	970	1,026	1,085	1,149	1,216	1,287	1,361
메디케어	480	478	523	551	569	619	633	654	716	767	822	908
메디케이드	275	255	283	338	370	399	423	450	479	510	542	578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	-38	35	12	8	5	2	1	*	*	*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631	711	654	644	665	705	712	716	750	775	821	826
법정지출 프로그램 합계	2,073	2,252	2,293	2,409	2,527	2,695	2,796	2,905	3,094	3,269	3,472	3,673
순이자 (Net Interest)	230	225	248	309	390	483	565	631	692	748	798	850
재해복구 및 구호비용	*	*	2	5	7	8	9	9	10	10	10	10
총재정지출	3,603	3,796	3,803	3,883	4,060	4,329	4,532	4,728	5,004	5,262	5,537	5,820

나. 추경

해당사항 없음

2. 재정건전화

- 재정적자 감소 추진을 통해 향후 10년 안에 GDP 대비 재정적자를 2.8%로 축소
 - 재정적자가 FY2012까지 증가하다가 FY2013년도부터 9,000억달러대로 진입할 전망
 - FY2018부터는 재정적자 규모 감축 목표를 GDP의 3% 이하로 설정

〈표 2-I-6〉 FY2013 예산안 전망 및 재정적자 감축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2,303	2,469	2,902	3,215	3,450	3,680	3,919	4,153	4,379	4,604	4,857	5,115
지출	3,603	3,796	3,803	3,883	4,060	4,329	4,532	4,728	5,004	5,262	5,537	5,820
재정적자	1,300	1,327	901	668	610	649	612	575	626	658	681	704

자료: Fiscal Year 201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1, 2012, 2.

- 국방예산 감축
 - FY2013 국방 총예산은 전년도(6,883억달러)보다 154억달러 감소한 6,729억달러로 전망
 - 이라크 지역 작전종료 및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규모를 축소조정
 - 해외긴급작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에 소요되는 비용이 FY2012 (1,265억달러) 대비 23% 감소한 967억달러 전망
- 재량지출 감축을 비롯하여 금융위기책임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부과
 - 대형금융기관(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기 책임금 부과
 -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_TARP)법에 의해 많은 세금이 대형 금융기관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환수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610억달러의 적자감축(세입재원 창출) 전망

- 버핏세 등 부유소득세 인상 추진계획
 - 부유세 증설(Buffer Rule)의 내용이 담긴 소득 상위층에 대한 세금조정
 - 연간 개인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경우 최저세율로 30% 이상 적용제한
 - 2013년 최상위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36%에서 39.6%로 인상
 - 종전의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업계의 종사자(managers or partners)들의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에 대한 15% 자본소득세율(Capital Gains Tax)³¹⁾ 인상 전망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130억달러의 적자감축효과 기대

3. 경기부양

- 2012년 2월 22일 재무부의 기업과세제도 개편(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추진계획 발표
 - 넓은 세원(broaden the base), 낮은 세율(cut the corporate tax rate)체계 구축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 → 28%)
 - 제조업 지원확대(Strengthen manufacturing)
 -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영구화 및 공제율 확대
 - 제조업계 법인세 실효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제조업혁신 지원
 - R&E(Research and Experimentation) 세액 공제율 인상(14% → 17%)하고 제도의 영구화 방안³²⁾을 발표
 - 소기업의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조세체계 간소화 및 조세감면
 - 현금주의 회계 적용대상 소기업의 범위 확대(총수입 500만달러 → 1,000만달러)
 - 조세협력(tax compliance)비용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세금제도 단순화 추진
 - 불필요한 세금납부 및 세금신고 등의 단계를 간단히 하여 세금공제를 위한 행

31)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본자산의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뜻하며,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자본이득세 세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32) 현재의 세액공제 시스템은 기한이 임시적이라 기업의 장기 R&D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데 비효율적임(1981년부터 2011년까지 총 14번 연장)

정 처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투자 활성화
 - 기업의 해외진출비용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국내복귀 기업의 이전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 신설
- 재정책임성(fiscal responsibility) 회복
 - 비효율적 조세감면 폐지 등을 비롯하여 기업과세제도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약 2,500억달러 추가세수 전망

4. 기타 재정정책

- 중산층 조세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³³⁾(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미 양원 통과
 - 2012년 2월 17일 미 상·하원 통과한 후, 동년 2월 22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
 - 6.2%³⁴⁾에서 4.2%로 낮춰져 있는 사회보장급여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를 2012년 말까지 연장
 - 개인사업자들도 자영세(Self-employment tax) 내의 사회보장부담비율이 12.4% → 10.4%로 낮춰짐
 - 실업수당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보조금(TANF³⁵⁾,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연장
 - 향후, 문제의 소지가 보이는 의료개혁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부분적 폐지 등

33) Temporary Payroll Tax Cut Continuation Act of 2011의 연장법안이며, 그 후 2012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이 있는 Temporary Payroll Tax Cut Continuation Act of 2011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중산층 조세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으로 재정립된 것임

34) 2011년까지의 사회보장급여세 부담비율

35) 2011년에 TANF는 재입안(reauthorized)에 실패하였고, 2011년 12월 31일에 3개월 연장하는 법안만 통과되었음

II 일본 (FY2011: 2011. 4~2012. 3)*

〈표 2-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12. 1. 24	FY 2012 예산정부안 국회제출
2012. 1. 24	FY 2011 4차 추경안 국회제출
2012. 1. 24	특별회계 개혁의 기본방침 각의결정
2012. 1. 26	FY 2012 조세 및 인세수입 예산 설명 게재
2012. 1. 26	FY 2011 조세 및 인세수입 추경 예산 설명 게재
2012. 2. 3	「FY2012 국민부담율에 대해」 발표
2012. 2. 8	FY 2011 4차 추경안 성립
2012. 2. 10	FY2012 각 부처의 정책별 예산과의 대응 발표
2012. 2. 20	FY2011 2011년 12월분 국고세입세출상황 게재
2012. 2. 21	「FY2012 세제개정안의 포인트」 게재
2012. 2. 24	재해구조비부담금에 예비비 사용
2012. 2. 29	「FY2010 부처별 재무서류」 발표
2012. 3. 1	FY2011 2012년 1월분 조세 및 인세수입 수입액조사
2012. 3. 2	FY2011 3분기 예산사용 상황 개요 게재

1. 예산 및 결산

가. FY2012 예산안(FY2012: 2012. 4~2013. 3)

□ 경제 및 재정전망

- 2012년도 일본 경제는 본격적으로 부흥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꾸준한 수요의 증대와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국내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됨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이정은 연구원(jeunlee@kipf.re.kr)

○ 2012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8.4%, 국가채무 비율은 219.1%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FY2012 예산은 중기 재정 프레임을 준수하면서, 동일본 대지진 및 원자력 재해의 신속한 복구재건과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에 직면한 경제 사회의 재생에 중점을 두고 구성

〈표 2-Ⅱ-2〉 FY201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 억엔, %)

구 분	FY2011 추정 (A)	FY2012 전망 (B)	비교증감액 (B-A)	증감률
세 입				
조세 및 인지수입	409,270	423,460	14,190	3.5
기타 수입	71,866	37,439	△ 34,427	△ 47.9
국채발행	442,980	442,440	△ 540	△ 0.1
계	924,116	903,339	△ 20,777	△ 2.2
세 출				
국채비	215,491	219,442	3,951	1.8
기초재정수지 경비	708,625	683,897	△ 24,728	△ 3.5
계	924,116	903,339	△ 20,777	△ 2.2

주: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부흥 대책에 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 회계(가칭)에 계상

자료: 재무성, 「平成24年度予算政府案」, 2011. 12. 24.

- (세입) FY2012 세입규모는 지난해 대비 2조 777억엔(2.2%) 감소한 90조 3,339억엔 수준
 - 조세 및 인지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하여 42조 3,460억엔으로 예상
 - 전년 대비 13.04% 증가한 법인세와 15.81% 증가한 담배세, 11.66% 증가한 관세가 세입증가분의 약 87%를 차지
 - 반면 기타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3조 4,427억엔(47.9%)가량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에 비해 504억엔이 감소한 44조 2,440억엔 수준

SECTION 2 >>

〈표 2-Ⅱ-3〉 FY2012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세 목 (일반회계)	FY2011		FY2012	전년 대비			
	예산 (당초)	추경 ¹⁾	예산안	예산 (당초)		추경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11,720	109,890	110,940	△780	△0.70	1,050	0.96
신고소득세	23,180	24,110	23,970	790	3.41	△140	△0.58
(소득세 계)	(134,900)	(134,000)	(134,910)	(10)	(0.01)	(910)	(0.68)
법인세	77,920	88,070	88,080	10,160	13.04	10	0.01
상속세	14,230	14,230	14,300	70	0.49	70	0.49
소비세	101,990	101,990	104,230	2,240	2.20	2,240	2.20
주 세	13,480	13,480	13,390	△90	△0.67	△90	△0.67
담배세	8,160	9,940	9,450	1,290	15.81	△490	-4.93
휘발유세	26,340	26,340	26,110	△230	△0.87	△230	△0.87
석유가스세	120	120	110	△10	△8.33	△10	△8.33
항공기연료세	460	460	440	△20	△4.35	△20	△4.35
석유석탄세	5,120	5,120	5,460	340	6.64	340	6.64
전원개발촉진세	3,460	3,460	3,290	△170	△4.91	△170	△4.91
자동차증량세	4,280	4,280	4,170	△110	△2.57	△110	△2.57
관 세	8,150	8,150	9,100	950	11.66	950	11.66
톤 세	90	90	100	10	11.11	10	11.11
인지수입	10,570	10,570	10,320	△250	△2.37	△250	△2.37
합계	409,270	420,300	423,460	14,190	3.47	3,160	0.75

주: 1) 추경은 4차까지 포함

자료: 재무성, 「平成 24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1. 12. 24.

□ (세출) FY2012 세출은 2011년에 비해 2.2% 감소한 90조 3,339억엔 편성

- 재정건전화를 강화하고 중기재정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세출은 2011년도에 비해 감소할 전망
 - 사회보장관계비(△8.1%)와 연금관계비(△11.2)의 축소가 두드러짐
 - 국채비는 1.8% 증가한 21조 9,442억엔으로 전망됨

〈표 2-Ⅱ-4〉 FY2012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 분	FY2011 당초 (A)	FY2012 전망 (B)	비교증감액 (B-A)	증감률(%)
사회보장관계비	287,079	263,901	△ 23,177	△ 8.1
문교 및 과학진흥비	55,100	54,057	△ 1,043	△ 1.9
국채비	215,491	219,442	3,951	1.8
연금관계비	6,434	5,712	△ 722	△ 11.2
지방교부세교부금	167,845	165,940	△ 1,905	△ 1.1
방위관계비	47,752	47,138	△ 614	△ 1.3
공공사업관계비	49,743	45,734	△ 4,009	△ 8.1
경제협력비	5,298	5,216	△ 82	△ 1.6
중소기업 산업대책비	1,969	1,802	△ 167	△ 8.5
에너지대책비	8,559	8,202	△ 357	△ 4.2
식료안정공급관계비	11,587	11,041	△ 545	△ 4.7
기타경비	55,660	62,554	6,894	12.4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	8,100	9,100	1,000	12.3
예비비	3,500	3,500	-	-
합계	924,116	903,339	△ 20,777	△ 2.2

자료: 재무성, 「平成 24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 2011. 12. 24.

나. FY2011 추경(FY2011: 2011. 4~2012. 3)

- FY2011 4차 추경을 2012년 1월 24일 국회 제출, 2012년 2월 8일 예산안 성립
- 필요성·긴급성이 높은 추가 재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추가재정수요를 확인한 2조 5,345억엔 규모의 추경안
 - 금번 추경은 의무적 경비 추가(1,406억엔), 기타경비(2조 331억엔), 지방교부금 및 교부세지원(3,608억엔)으로 편성
 - 4차 추경 재원은 세수 및 세외 수입과 기존경비 절감으로 조달할 계획

SECTION 2 >>

〈표 2-Ⅱ-5〉 FY2011 4차 추가경정 예산 내역

(단위: 억엔)

재정수요		재 원	
1. 의무적 경비 등의 추가	1,406	1. 세수	11,030
(1) 재해대책비	67		
(2) 생활보호비와 같은 부담금 등	1,339	2. 세외수입	88
2. 기타 경비	20,331		
(1) 고령자자료·보육·복지 등	4,939	3. 기존경비의 절감	14,227
(2) 국제분담금 및 거출금	1,875	(1) 국채비 불용	12,923
(3) 식·농림어업의 재생에 필요한 경비	1,574	(2) 기타	1,304
(4) 중소기업 자금유통 지원	7,413		
(5) 환경대응차보급 촉진 대책비	3,000	4. 공채금	
(6) 기타	1,530		
3. 지방교부금 및 교부세	3,608		
합계	25,345	합계	25,345

- 주: 1)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서 주식회사 동일본대지진사업자재생지원기구법에 근거한 주식회사 동일본대지진사업자재생지원기구의 차입 또는 사채에 관련된 채무에 대해 재정보증 범위 5,000억엔을 설정
 2) 외환시장의 어떤 동향에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기동적인 대응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총액에서 외환자금특별회계의 외환자금증권발행등 한도액을 2011년도 보정예산(특제3호)의 165조엔에서 195조엔으로 인상
 3) 공채금 내역 - 건설공채 증가, 특례공채 감소
 4) 계수는 각각 반올림하고 있어 끝수에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平成23年度補正予算(第4号)」, 2011. 12. 20.

2. 재정건전화

- 「일본재생 중점화 조치」 - 일본 재건을 위한 4개 분야의 중점화 조치 추진
 - 세출 삭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이용하여 일본 재건을 위한 더 효과적인 시책에 예산을 중점 배분하는 노력으로 실시
 - 일본 경제 사회를 재건하고 국민 개개인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사회를 실

현하기 위해 4개 분야에 대해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

- 개선 요구 단계 당시 7000억엔 규모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출삭감을 활용하여 1조엔 규모로 확대

○ 「일본재생중점화조치」의 대상이 된 4개 분야

i) 새로운 국경 및 신성장 전략(과학·기술·에너지·해양·우주 등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 성장 기반 강화)

- 예) 위성 시스템의 정비·운용(내각부), 자원 권익 확보(경제산업성),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 기술력 강화(경제산업성), 환경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대책(환경부)

ii) 교육(스포츠 포함)·고용 등의 인재 육성

- 예) 새로운 스포츠 문화 창조 프로젝트에 의한 일본 재건(문부과학성)

iii) 지역 활성화

- 예) 오키나와 진흥 예산(내각부), 철도에 의한 지역 활성화(국토교통성)

iv) 안심·안전 사회 실현

- 예) 치안 수준의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추진(경찰청), 집중호우 등에 의한 재해 방지 대책(농림수산성), 수해·토사·해일 재해대책(국토교통성),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국방부)

□ 「제언형 정책분담³⁶⁾」의 제언을 FY2012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세출의 재검토를 철저히 함

○ 주요 예

- 사회보장

- 진료보수 기본수가 인상 + 1.38%(5,500억엔 정도) 인상 실시(순개정률은 0.00%)
: 이를 긴급·산부인과·소아과·외과 등의 긴급 의료, 지역생활을 지탱하는

36) 제언형 정책 분담 - 2011년 11월 개최된 제 4차 사업 분담. 사업분담은 내각부의 행정쇄신회의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나라 및 지자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외부의 시점으로 예산 사업의 필요·불필요 여부를 의논·판정. 제 4차 사업분담인 제언형 정책 분담에서는 사업분담의 특색(공개성·외부성 등)을 살려 제언형 정책분담을 실시, 낭비와 비효율화를 근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제도적인 문제까지 깊이 있게 논의함

주택의료의 충실 등에 중점배분하는 것에 대신 합의

- 연금 특례수준 2012년도부터 3년간 해소, 2012년도는 $\Delta 0.9\%$ 해소
- 생활보호수급자의 의료 보조에 대해 ①후발의약품 이용촉진을 강화함과 동시에, ②전자 의료비 청구서를 활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 강화 등을 실시(효과액 $\Delta 124$ 억엔)

– 원자력·에너지 등

- 고속 증식로 사이클 연구 개발비 감축(전년 대비 $\Delta 102$ 억엔)
- 특히 몬주³⁷⁾에 대해 대응조정비 계상을 보류(요구 대비 $\Delta 22$ 억엔), 유지관리비도 감액(요구 대비 $\Delta 18$ 억엔)
- 중복 사업으로 예시된 3성 7사업의 예산 감축(요구 대비 $\Delta 193$ 억엔)

– 교육(대학)

- 국립대학법인운영비 교부금을 감축(전년 대비 $\Delta 161$ 억엔)하는 한편, 「국립대학개혁강화추진사업」(138억엔)을 창설
- 사립법과대학원에 대한 보조 1할정도 감축(전년 대비 $\Delta 4$ 억엔)

□ 공공부문의 낭비를 삭감

○ 정원감축 노력

- 대지진 관련으로 필요한 증원은 적절히 배려함과 동시에 대폭 감축 실시
 - 대지진재해 관련(시한) 및 대체 제외 $\Delta 2,018$ 명*
 - * FY2002 이후 최대 순감소 규모
 - 대지진재해 관련포함 전체 순감소 수 $\Delta 1,300$ 명

– 총 정원법 규제(1970년) 이래 처음으로 전체 부처 순증가 없음

○ 청비억제 노력

- 행정기관의 사무·사업 실시에 필요한 청비의 전체적인 총액을 엄격하게 억제
 - FY2012 예산: 38,898억엔(전년 대비: $\Delta 1,376$ 억엔)
- 특히 행정기관의 사무 실시에 필요한 「청비」에 대해서는 과거 30년간 중 처음으로

37) 몬주는 후쿠이현 츠루가시(福井県敦賀市)에 있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고속증식로

로 전(全)부처·전(全)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하회하도록 엄격하게 억제

- FY2012 예산 : 2,337억엔*(전년 대비 : △70억엔)

*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복구·부흥 대책에 관한 경비는 제외

○ 관청 수리에 대한 대응

－ FY2012 예산 예상액

- 일반회계 관청 수리비 : 168억엔(전년 대비 : △5.3%)
-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특정 국유재산 정비 계정 특정 국유재산 정비비(청사 분) : 189억엔(전년 대비 : △4.4%)

○ 공무원 숙소에 대한 대응

－ FY2012 예산 예상액

- 일반회계 공무원숙소시설비 : 66억엔(전년 대비 : △26.2%)
-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특정 국유재산 정비 계정 특정 국유재산 정비비(숙소 분) : 161억엔(전년 대비 : △4.3%)

□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안」에 의해 소비세율(국가·지방)을 2014년 4월 1일부터 8%, 2015년 10월 1일부터 10%로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

- 인상된 소비세수는 국가 346/500, 지방 154/500 배분

□ 국가공무원 급여 2012년도부터 2년간 평균 7.8%로 삭감하는 특례법안 성립(2012. 2. 29)

- 정부는 급여 삭감분 약 5,800억엔을 동일본 대지진 부흥재원으로 충당할 방침

3. 경기부양

□ 2012년도 세제 개정안의 포인트

- ① 신성장 전략 실행을 향한 조세 조치, ② 세제의 공정성 확보와 과세의 적정화를 향한 노력, ③ 2011년도 개정의 미실시 사항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개정 실시
 - i) 개인소득 과세 : 급여소득공제, 특별지출공제, 퇴직소득과세 재검토
 - ii) 자산 과세 : 주택취득 자금 관련 증여세 비과세 조치 확충·연장, 삼립관련 상속세 납세유예제도 창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재검토
 - iii) 법인과세 : 시험연구를 할 때 법인세액 특별공제, 환경관련투자촉진세제 확충
 - iv) 환경관련 세제 : 자동차 중량세 재검토,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금 도입
 - v) 국제과세 : 징수 공조에 관한 국내법 정비, 국외재산조세제도 창설, 과대이자 지급을 통한 조세회피에의 대응
 - vi) 오키나와 관련 세제

4. 기타

□ FY2012 국민부담율

- FY2012 국민부담율은 FY2011에서 0.2% 감소한 39.9%가 될 전망(과거 최고치는 FY2008 40.3%)
- 경기회복에 따른 국민소득 성장에 수반하여 사회보장부담률 및 조세 부담률이 감소한 것이 배경

〈표 2-Ⅱ-6〉 최근 5년간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의 추이

(단위: %)

연도	국세 ①	지방세 ②	조세부담 ③=①+②	사회보장 부담 ④	국민 부담률 ⑤=③+④	재정적자 ⑥	잠재적 국민부담률 ⑦=⑤+⑥	GDP대비 국민부담률
2008	12.9	11.2	24.1	16.2	40.3	6.2	46.5	29.2
2009	11.7	10.3	22.0	16.2	38.3	12.9	51.2	27.7
2010	12.5	9.8	22.3	16.5	38.8	11.5	50.4	28.3
2011	13.0	9.9	22.9	17.2	40.1	14.7	54.8	29.2
2012	13.0	9.8	22.7	17.1	39.9	11.4	51.2	29.1

자료: 재무성, 「国民負担率の推移(対国民所得比)」, 2012. 2. 3.

재해구조비 부담금에 예비비 약 3.6조엔 사용

- 이번 겨울 일본해 중심 기록적인 대설 재해구조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

경제재정 중장기 전망

- 경제·재정·사회보장을 일체적으로 모델화한 내각부의 계량모델을 기초로 함
- 신중 시나리오와 성장전략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

〈표 2-Ⅱ-7〉 주요 경제지표의 2011-2020년도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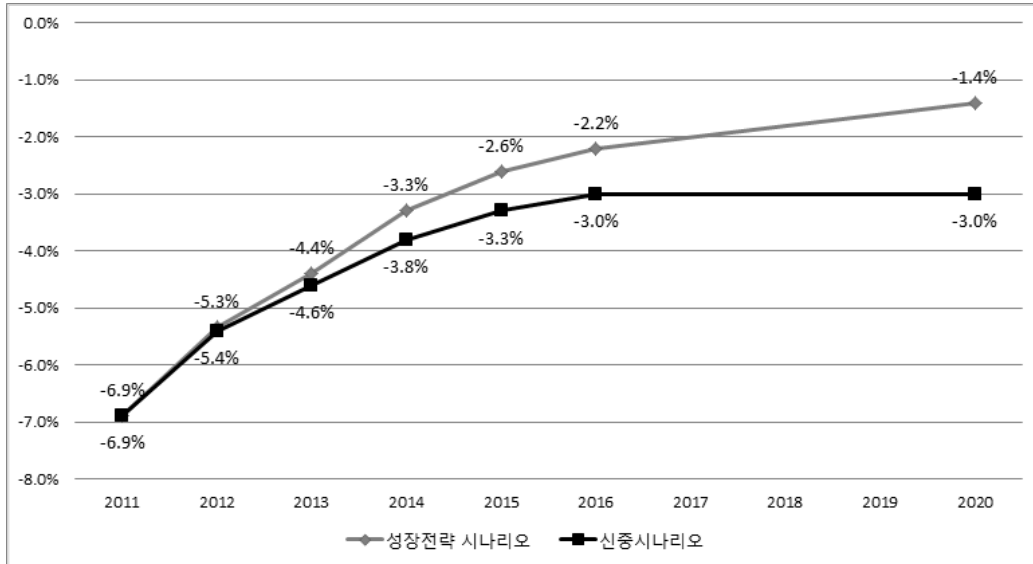
	신중 시나리오	성장전략 시나리오
실질성장률	1.1	1.8
명목성장률	1.5	2.9
소비자물가상승률	1.1	1.7

자료: 내각부, 「經濟財政の中長期試算」, 2012. 1. 24.

SECTION 2 >>

[그림 2-Ⅱ-1] 국가·지방의 기초재정수지(명목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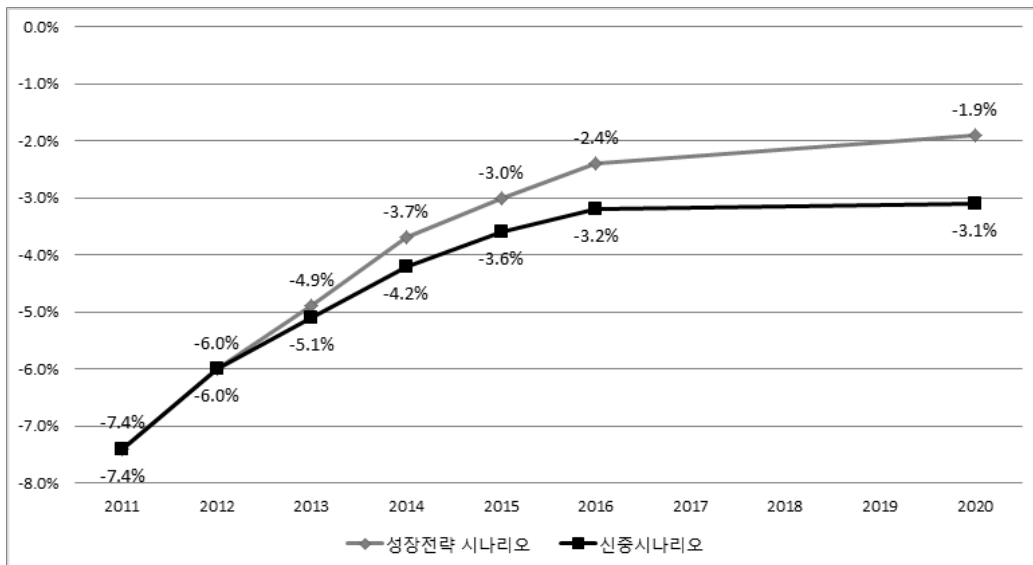
(단위: %)



주: 복구·부흥대책의 경비 및 재원 금액은 제외한 것.
 자료: 내각부, 「經濟財政の中長期試算」, 2012. 1. 24.

[그림 2-Ⅱ-2] 국가의 기초재정수지(명목 GDP 대비)

(단위: %)



주: 복구·부흥대책의 경비 및 재원 금액은 제외한 것.
 자료: 내각부, 「經濟財政の中長期試算」, 2012. 1. 24.

Ⅲ 영국 (FY2011-12: 2011. 4~2012. 3)*

〈표 2-Ⅲ-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11. 11. 29	FY2012-13 가을보고서
2011. 11. 29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보고서
2012. 2. 8	FY2011-12 추경 예산
2012. 2. 9	영란은행, 경기부양에 500억파운드 추가 투입 결정
2012. 3. 21	FY2012-13 예산안 발표(예정)

1. 예산 및 결산

가. 가을보고서(FY2012-13 사전예산안)³⁸⁾

- (경제전망) 2011~2012년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
 - 유로존 재정위기와 내수 침체 등을 반영
 - 민간투자 증대 등으로 2013년 이후, 경기 회복세 전망

〈표 2-Ⅲ-2〉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2011년 3월 이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안 (2011.03)	1.7	2.5	2.9	2.9	2.8
가을보고서 (2011.11)	0.9	0.7	2.1	2.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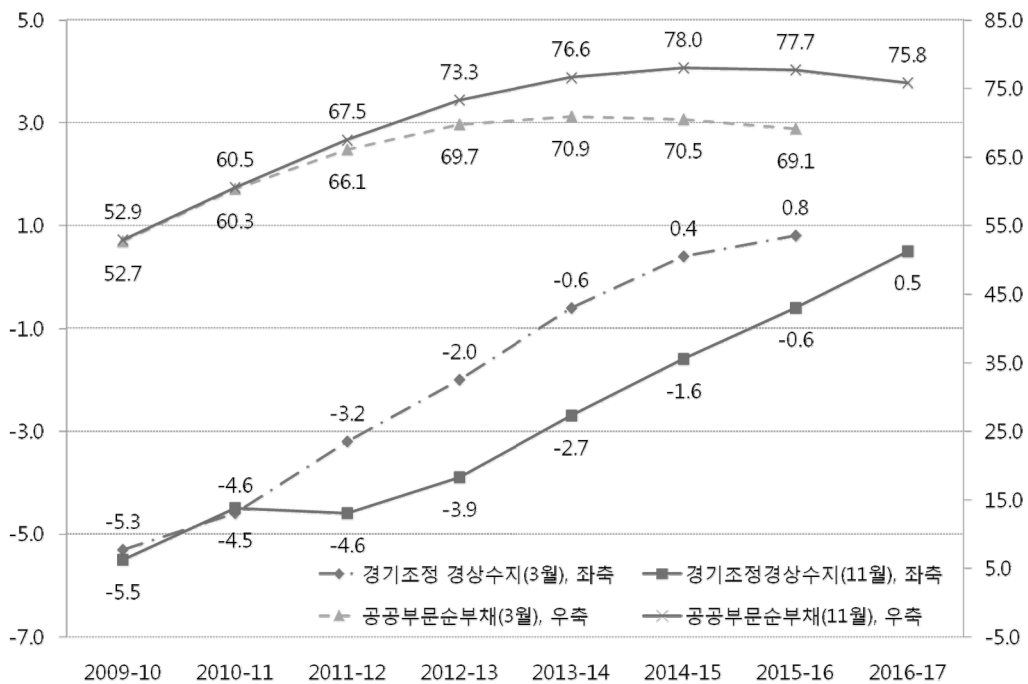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권나현 전문연구원(nhkwun@kipf.re.kr), 한혜란 연구원(hrhan@kipf.re.kr)

38) 가을보고서의 상세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2012), 『주요국 예산안 2012』에 수록

SECTION 2 >>

- (재정전망) 재정건전화 속도는 예산안(2011. 3월) 전망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측
 - FY2012-13의 공공부문 재정적자(순차입)는 전년 대비 0.8%p 개선된 GDP 대비 7.6%로 전망
 - FY2016-17까지 GDP 대비 1.2%로 감소
 - 경기조정 경상수지는 FY2016-17(목표기간)에 GDP 대비 0.5% 흑자로 전환될 전망
 -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 규모는 2015.3월 기준 GDP 대비 78.0%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그림 2-Ⅲ-1] 예산안 및 가을보고서의 재정건전화 목표 전망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 3 & 2011. 11.

〈표 2-Ⅲ-3〉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 대비 %)

	실적	전망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경상세입	37.3	37.8	37.7	37.7	37.7	37.7	37.8
총관리지출(TME)	46.6	46.2	45.3	43.7	42.2	40.5	39.0
공공부문 순차입	9.3	8.4	7.6	6.0	4.5	2.9	1.2
경기조정 순차입	7.1	6.4	5.5	4.0	2.8	1.7	0.6
기초수지	-6.5	-5.4	-4.9	-3.2	-1.7	0.0	1.6
경상수지	-6.7	-6.5	-6.0	-4.7	-3.3	-1.8	-0.1
경기조정 경상수지 ¹⁾	-4.5	-4.6	-3.9	-2.7	-1.6	-0.6	0.5
공공부문 순부채 ²⁾	60.5	67.5	73.3	76.6	78.0	77.7	75.8
재정적자 ³⁾	9.5	8.4	7.6	6.1	4.6	3.0	1.3
경기조정 재정적자 ³⁾	7.3	6.4	5.5	4.0	2.9	1.8	0.7
국가채무 ⁴⁾	76.5	84.2	90.1	93.1	93.9	92.6	89.7

주: 1)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 기준지표

2) 3월 말 기준. 재정건전화 목표의 보조지표

3)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순차입

4)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총채무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 Report," Table C.6, 2011. 11.

□ (세입)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 등으로 FY2012-13에 총 3억파운드의 세수 감소

○ FY2012-13에 약 10억파운드 세입 감소효과가 나타나며 주요 세입감소 요인은 연료세 인상 연기임

○ FY2012-13에 약 7억파운드의 세입 증가효과가 전망되며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고용 주의 연금기여금 공제 제한과 은행세(Bank Levy) 세율 인상임

– 은행세 세율은 0.075%에서 2012. 1. 1일부로 0.088%로 인상

〈표 2-Ⅲ-4〉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연료세 : 1월 인상 연기, 8월 인상 취소	-375	-975	-825	-850	-875	-925
자산담보부 연금기여금 공제제한	+340	+450	+450	+450	+450	+450
은행세(Bank Levy)	0	+280	+310	+310	+315	+325
자본취득세 공제해도 동결	0	0	+25	+25	+25	+30
항공여객세 인상	0	0	+5	+5	+5	+5
소규모기업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 감면 확대	0	-210	+5	0	0	0
비거주재산세 납부연기	0	-85	+45	+40	0	0
기후변화세 감면 확대	0	0	-15	-20	-20	-20
기업투자촉진 세제감면제도 등	0	0	-50	-25	-20	-20
공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0	-25	-50	-75	-100	-125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자본공제	0	-25	-40	-25	-5	-
예술·역사 사업 등에 대한 공제 확대	0	-15	-15	-15	-15	-15
총 세입정책 효과 ¹⁾	-35	-305	145	130	20	15

주: 1) 세액공제의 소득보전요소(negative tax element)를 포함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 Table 2.1, 2011. 11.

□ (세출) FY2012-13 약 2억 5천만파운드의 재정절감 효과 예상

- FY2012-13의 경우 경상지출에서 약 9억파운드의 재정절감, 자본지출에서 약 7억파운드 재정책대가 예상됨
- FY2013-14에는 약 3억파운드의 재정책대효과가 나타나고, FY2014-15에는 약 1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절감에 그침
- FY2015-16에 약 83억파운드, FY2016-17에 약 151억파운드의 지출절감 예상
 - FY2015-16과 FY2016-17의 경우 FY2014-15까지 적용된 지출감축 비율 0.9%를 가정함

〈표 2-Ⅲ-5〉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경상지출	0	+910	+1,175	+1,735	+8,290	+15,105
자녀세액공제 인상계획 철회	0	+975	+955	+1,020	+995	+995
근로세액공제 동결	0	+265	+290	+275	+275	+280
공공부문 임금인상 제한	0	+75	+600	+1,075	-	-
해외개발원조 축소	0	+380	+265	+525	-	-
청년층 훈련계약제도 도입	0	-365	-310	-265	-	-
영유아 보호지원	0	-85	-240	-455	-	-
철도요금 인상을 제한	0	-105	-105	-135	-	-
최저탄소가격제 비용 지원	0	0	-40	-60	-	-
과학분야 지원	0	-30	-30	-30	-	-
자본지출	0	-660	-1,455	-1,645	0	0
인프라 투자재원	0	-760	-1,785	-2,145	-	-
Reserve reprofiling	0	+100	+330	+500	-	-
총 지출정책 효과	0	+250	-280	+90	+8,290	+15,105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 Table 2.1, 2011. 11.

○ FY2012-13의 총관리지출은 7,145억파운드 규모로 예측

– 예산안(2011.3월) 전망 대비 약 57억파운드 감소

– FY2011-12 대비 약 120억파운드(1.7%) 증가

- 전년에 비해 자본지출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경상지출 중 부처별지출한도(DEL) 약 15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 약 128억파운드 증가

SECTION 2 >>

〈표 2-Ⅲ-6〉 총관리지출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경상지출							
자원 DEL	326.3	326.7	328.2	330.9	329.7	326.1	325.2
자원 AME	303.2	325.7	338.5	346.8	360.5	374.8	386.7
사회보장급여 ¹⁾	168.5	175.0	182.8	183.6	187.6	193.1	198.3
세액공제 ¹⁾	25.2	27.0	27.8	28.4	28.8	29.6	30.3
순공공서비스연금	5.6	8.4	9.9	10.5	11.6	12.5	13.5
국가복권	0.8	0.9	0.9	0.9	0.9	1.0	1.1
BBC 내국 서비스	3.4	3.7	3.5	3.4	3.7	3.6	3.7
금융시장 개입 관련 수수료	-2.5	-2.2	-0.7	-0.3	-0.2	0.0	0.0
기타부처지출	0.3	0.6	0.8	0.6	0.4	0.5	0.5
EU분담금	6.8	5.5	6.5	7.0	7.8	7.0	6.1
지방재정(Locally-financed) 지출	22.4	26.2	26.8	28.1	29.1	30.0	30.6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42.8	47.6	47.1	50.5	56.1	61.7	65.5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15.2	16.3	17.1	17.8	18.5	19.2	19.8
단용(single use) 군사지출	5.4	6.4	5.8	5.7	5.2	5.4	5.7
환경부담금	0.6	1.0	1.4	1.8	2.2	2.6	3.3
기타 회계 조정	-2.5	-2.4	-3.8	-3.7	-3.6	-3.4	-3.4
공공부문 경상지출	629.5	652.4	666.7	677.7	690.2	701.0	711.9
자본지출							
자본 DEL	43.9	36.7	35.7	34.0	35.6	35.8	37.3
자본 AME	15.1	13.4	12.1	11.4	10.6	9.8	9.5
국가복권	0.4	0.5	0.6	0.6	0.6	0.6	0.6
기타 자본지출	0.5	-8.3	0.0	0.4	0.4	0.4	0.4
지방재정 지출	6.5	14.2	4.9	4.5	4.1	3.3	3.0
공기업 지출	8.0	8.3	8.0	8.0	7.8	7.8	7.7
회계 조정	-0.2	-1.4	-1.4	-2.1	-2.2	-2.3	-2.3
공공부문 총투자	59.0	50.2	47.9	45.4	46.2	45.7	46.8
감가상각 공제	-20.4	-21.5	-22.6	-23.5	-24.4	-25.2	-26.1
공공부문 순투자	38.6	28.6	25.2	21.9	21.8	20.4	20.7
총관리지출²⁾	688.5	702.6	714.5	723.1	736.4	746.6	758.7

주: 1) FY2010-11 ~ FY2014-15까지 아동수당과 구직수당은 사회보장급여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에 포함

2) 총관리지출은 공공부문 경상지출, 공공부문 순투자, 공공부문 감가상각의 합계(한시적 금융시장개입 효과 제외)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Table 4.18, 2011. 11.

나. 추경(FY2011-12 정기 추경 2012.2.8)³⁹⁾

- 의결지출과 비의결지출을 합하여,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Resource DEL) 예비비 및 특별 예비비에서 현금 18억파운드, 비현금 감가상각 52억파운드, 자본(Capital) 부처별 지출 한도 예비비 7억파운드 증액 요청
 - 의결대상 지출은 부처별 지출한도 약 79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 약 33억파운드, 비예산(Non-budget) 약 9억파운드로 구성
 - 현금주의로 조정된 순현금소요액은 약 73억파운드 규모임
 - 부처별 지출한도(DEL)의 증액분은 다른 부처별 프로그램의 지출절감 및 DEL 예비비로 상쇄되어 공공부문 순차입(재정적자) 및 공공부문 순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새로운 예산교환(Budget Exchange)제도에 따른 FY2012-13 예산이월 상한을 자원 6억파운드, 현금 2억파운드로 설정

〈표 2-Ⅲ-7〉 FY2011-12 추경 요약

(단위: 십억파운드)

		현행	증감	합계
부처별 지출한도(DEL)	자원지출	271.7	7.6	279.3
	자본지출	38.6	0.2	38.8
연간관리지출(AME)	자원지출	138.2	7.9	146.1
	자본지출	8.3	-4.6	3.6
소계	자원지출	409.9	15.5	425.5
	자본지출	46.9	-4.3	42.5
비예산(Non-budget) ¹⁾ 지출		56.0	0.9	56.9
순현금소요		449.9	7.3	457.3

주: 1) 권한이양행정부(devolved administrations)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급금 포함. 권한이양행정부의 지출은 비의결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HM Treasury, "Supplementary Estimates 2011-12," 2012. 2.

39) FY2011-12 봄 추경 세출예산안은 FY2011-12 본세출예산안과 같이 예결산 및 자원회계 정비사업(Alignment Project)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비의결 지출 내역을 포함함. 비의결 지출에는 국가보험기금 등 통합국고자금에서 재원을 직접 조달하지 않는 지출프로그램이나 통합국고자금의 연간 승인 면제 대상 지출이 포함되어 있음

다. FY2012-13 예산안 발표: 2012. 3. 21(수) 예정

2. 재정건전화

- FY2011-12 ~ FY2016-17까지 총 5,29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 추진
 - FY2012-13에 지출삭감을 통해 370억파운드, 세수확대를 통해 230억파운드, 합계 60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절감 예상
 - 총 재정건전화 규모 중 지출의 비중은 FY2012-13에 약 60%, FY2016-17에 약 80%로 전망

〈표 2-Ⅲ-8〉 2010년 이후 재정건전화 총 규모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재정건전화 총 규모	42	60	85	107	130	147
지출	22	37	56	77	100	116
세입	20	23	29	30	30	31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53	62	66	72	77	79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 Table 1.4, 2011. 11.

- 2011. 11월 가을보고서에서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공무원 임금인상 억제 등 지출 감축방안 발표
 - (연금) 2026. 4월 ~ 2028. 4월까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
 - FY2026-27 ~ FY2035-36까지 예상 절감액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600억파운드
 - (공공부문 임금) 공공부문 임금동결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2년 동안 공공부문 임금인상을 평균 1%로 억제
 - FY2014-15까지 임금상승률을 총 2%로 제한하여 총 17.5억파운드 절감
 - (세액공제) FY2012-13부터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계획 취소
 - 자녀세액공제의 자녀요건(child element)에 적용될 예정이던 물가상승 초과 110파

운드 지급계획 철회

- 부부 및 편부모요건에 대한 근로세액공제 동결
- FY2012-13 ~ FY2016-17까지 연간 12 ~ 13억파운드 절감

□ 2012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2012) 제정

-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 2011. 2. 16)에 대한 국왕의 재가(Royal Assent) 완료(2012. 3. 8)
 - 법안 제출에 앞서 복지제도 개혁안(2010. 10. 4)이 2010년 중기재정개혁에서 발표된 바 있음(주요 내용 재정동향 4호, 6호 참고)
- 주요 내용 및 효과(법안의 핵심 내용 유지)
 - (보편적 수당(Universal Credit) 제도) 280만명의 저소득·중간소득층 생활 개선 및 약 90만명의 빈곤퇴치 예상
 - (복지급여 한도)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약 6만7천 가구의 급여 수급을 방지하여 2013-14년에 2억 9천만파운드, 2014-15년에 3억 3천만파운드의 비용 절감
 - 공공주택 세입자 주택수당 수급 기준(Social Sector Size Criteria) 강화로 정부지출 절감 및 공공주택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
 -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대신 독립생활급여(Personal Independence Payments) 적용, 부정 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도입 등의 내용 포함

□ 은행세(Banking Tax) 회피 저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2012. 2. 27.)

- 정부는 최근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을 통해 공개된 은행의 조세회피 방식에 대한 조치를 취했음
 - 다음 두 가지 방식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법안(2012 Finance bill에 포함 예정)을 제출할 계획임
 - 자기부채 환매로 얻는 상업적 이익이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한 조세회피
 - 승인형 투자펀드(Authorized Investment Fund)를 이용해 비과세소득을 다른 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식

- 이를 통해 FY2012-13기준으로 약 5억파운드의 세금을 확보
- 향후 수십억파운드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며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3. 경기부양

- 가을보고서(2011. 11월)에서 FY2012-13 ~ FY2014-15까지 약 47억파운드 규모의 인프라 투자정책 도입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 2012년 4월, 기업투자촉진 세제감면제도(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를 개시하여 투자지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공
 - 2013년, 대기업의 R&D 투자 장려를 위한 추가 세액공제('above the line' tax credit) 도입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국가대출보증제도(National Loan Guarantee Scheme) 도입
 -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학교 및 교육환경 개선에 추가 자원 배정
 - 신축 주거시설에 대한 모기지 금융 지원 확대 등
-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프로그램 500억파운드 확대 결정(2012. 2. 9.)
 - 2,750억파운드의 채권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500억파운드 확대해 3,250억파운드로 상향 조정
 - 이는 수출시장, 유로존 상황, 재정 건전화와 관련한 부정적인 전망과 지난 10월 이래로 하강국면을 보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함
 - 중기 목표인 2% 아래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추가매입이 필요함
 - 또한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함

- 기준 금리는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음

□ 카메론 총리, 기업 지원 방안 발표(2012. 1. 2.)

- 기업에 대한 보상금 청구 남용(Compensation Culture)이나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법’ 관련 형식주의(red tape)로 인한 부담 완화
 - 과도한 청구소송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규모의 상해 보상 소송에서 얻는 수입의 상한을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임
 - ‘건강 및 안전법’에서 보상 청구에 대해 기업에 부여했던 엄격한 책임 완화
 - 보험사가 기업에 규정준수 확인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정부가 조사할 것임
- 총리는 BFP(Business Finance Partnership)*를 통해 10억원의 정부 기금을 조성하고 기업 발전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것이라 언급
 - * BFP : 기업의 신용 흐름 활성화 및 자금조달 원천 다양화를 목적으로 기업이 비은행 대출경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 마련
- 이 밖에도 감세, 규제완화, 인프라투자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비용 감축(Third Statement of New Regulation, 2012. 2. 28.)

-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2012년 1월~6월 사이, 기업에서 약 400만파운드의 규제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힘
 - ‘one-in, one-out’ 방식(비용의 상한을 정하여 감축하도록 하는 방식)은 2011년 1월 이래로 규제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창출함
 - 관료적 형식주의 및 규제비용 감축 노력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기타 재정정책

- 스코틀랜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예산에 약 1억파운드 추가 지원(2011. 11. 11)
 - 추가 1억파운드의 재원은 스코틀랜드 화석연료부담금 기금(Scottish Fossil Fuel Levy Fund)에서 마련
 - 약 2억파운드 규모인 동기금의 잔여재원은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기금으로 전환

- 영국 총리, 취약가정(Troubled Families) 지원계획 발표(Prime Minister's Speech, 2011.12.15.)
 - 취약가정 12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약 4억 5천만파운드 투자 계획
 - 취약가정 발생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 비용은 연간 약 90억파운드로 추정
 - 이는 취약가정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
 - 부처 내 전담 팀과 지방 정부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 정부는 결과의 성공 여부에 따라 취약가정 지원을 위한 소요 비용의 최고 40%까지 지방 당국에 제공함

IV

프랑스 (FY2012: 2012. 1~2012. 12)*

<표 2-IV-1> 주요 재정관련 이슈 일지

일자	주요내용
2011. 12. 28	2012년 사회보장예산 통과
2012. 1. 29	사르코지 대통령, 경제개혁안 발표
2012. 2. 8	의회에 2012년 수정예산안 발표
2012. 2. 21	의회 내 토론 후 하원 통과
2012. 2. 22	의회 내 토론 후 상원 거절
2012. 2. 28	의회에 수정예산안 재상정/의회는 유럽재정안정기구 관련 협약 승인
2012. 2. 29	2012년 수정예산법 의회 통과

1. 예산 및 결산

가. 수정예산

- 2012년 수정예산법(LFR 2012: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2) 통과
 - 2012년 2월 8일 수정예산안이 발표된 후 하원의 승인만을 받고 상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28일에 재상정된 후 29일에 상·하원 모두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재정전망) 프랑스 정부는 1월에 하향 조정한 경제성장률(1% → 0.5%)을 반영하여 세입 감소를 전망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적자를 2012년 GDP 대비 4.5%, 2013년 3%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도 삭감함
 - (세입) 2012년 본예산안에 비해 16억유로 감소한 2,872억유로로, 이는 아직 회복되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신승희 연구원(shshin@kipf.re.kr), 이지혜 연구원(jihyelee@kipf.re.kr)

SECTION 2 >>

- 지 않은 경기와 기업의 사회보장세 인하에 따른 결과임
- (세출) 2012년 본예산안에 비해 12억유로 감소한 3,648억유로로, 재정적자를 2012년 GDP 대비 4.5%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일정부분 삭감함

〈표 2-Ⅳ-2〉 프랑스 재정전망

(단위: 십억유로)

	2011	2012	2012 수정	2013	2014
총지출	359.8	366.0	364.8	372.6	379.1
총수입	271.3	288.8	287.2	317.5	334.0
조세세입	254.4	274.9	273.3	295.0	310.4
세외수입	16.9	13.9	13.9	22.5	23.6
재정수지	-88.5	-77.2	-77.6	-55.1	-45.1

자료: LPFP 2011-2014 및 LFR 2012(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2)

- (예산기조) 지난 1월에 발표된 프랑스의 경제개혁안의 주요 골자인 기업의 노동비용 감소, 교대근로자 및 청년인턴 고용촉진, 금융거래세 신설 등의 내용이 반영
 - 기업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투자를 활성화하고, 실업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교대근로자 및 청년인턴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미션별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보다 16.5억유로가 감소한 3,647.5억유로임
 - 정부재정관리 관련 지출이 가장 크게 삭감되었으며(499 → 491억유로, △0.82%), 경제, 산업·기업지원 관련 지출이 본예산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20 → 23억유로, 0.33%)

<표 2-Ⅳ-3> 2012년 수정예산(LFR 2012) 미션별 지출규모

(단위: 십억유로)

미션	예산('12)	수정예산('12)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93	2,92 (-0.01)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2,74	2,73 (-0.01)
농업, 임업, 수산업(Agriculture, pêch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77	3,71 (-0.06)
공공보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2,75	2,74 (-0.01)
퇴역군인 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3,19	3,18 (-0.01)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60	0,60 (0,00)
문화(Culture)	2,60	2,56 (-0.04)
국방(Défense)	40,24	39,92 (-0.32)
국가정책방향(정책통합, 자유·권리보호, EU 내 프랑스 지위확보) (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10	1,08 (-0.02)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Ecologie, développement et aménagement durables)	9,81	9,62 (-0.19)
경제, 산업·기업지원(Economie)	2,00	2,33 (0,33)
정부채정관리(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49,92	49,10 (-0.82)
교육(Enseignement scolaire)	62,34	62,32 (-0.02)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11,64	11,53 (-0.11)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0,63	0,63 (0,00)
법무부(Justice)	9,80	9,77 (-0.03)
언론(Médias)	1,27	1,25 (-0.02)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18	2,16 (-0.02)
균형발전정책(Politique des territoires)	0,33	0,32 (-0.01)
R&D·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5,79	25,56 (-0.23)
복지·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62	6,62 (0,00)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54	2,51 (-0.03)
환급·리베이트(Remboursements et dégrèvements)	22,44	22,10 (-0.34)
건강(Santé)	1,38	1,36 (-0.02)
치안(Sécurité)	17,17	17,15 (-0.02)
시민안정 - 자연재해 및 화재등(Sécurité civile)	0,42	0,42 (0,00)
사회통합·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2,79	12,75 (-0.04)
체육 및 건강, 청소년 지원(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0,48	0,47 (-0.01)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0,16	10,15 (-0.01)
건설 및 주택(Ville et logement)	7,85	7,83 (-0.02)
부채 관리 및 국채발행 등 (Charge de la dette et Trésorerie de L'état)	48,77	48,77 (0,00)
예비비(Provisions)	-	- (0,00)
경제위기대응정책(Plan de relance de l'économie)	-	- (0,00)
의회, 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0,59	0,59 (0,00)
합계	366,00	364,75 (-1.65)

주: 1) () 안은 수정예산 조정분

2) 수정예산 지출에 유럽재정안정기구(ESM)에 지원하는 65억유로가 포함되지 않음

자료: 2012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LF 2012 및 LFR 2012)

나. 사회보장예산안

- (예산기조) 80억유로 규모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 지출을 통제하여 2008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던 만성적 재정적자를 2012년 179억유로(일반제도 기준)까지 감소할 것을 목표로함

*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십억유로)

(2010) 28.0 → (2011) 21.8 → (2012) 17.9 → (2013) 16.4 → (2014년) 13.4 → (2015) 9.6

- 세입확대 및 세제혜택 축소와 사회보장 채무를 사회보장 감채기금(CADES: la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⁴⁰)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재원마련
- 의료비 지출의 통제 강화(의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고가 진료환자의 보험료 반환)를 통해 2012년 의료비 지출 증가율 목표(ONDAM)를 2.5%로 전망
 - 의료보험비 지출 증가율을 2011년 2.9%, 2012년 2.5%로 제한(2012~2015년까지 2.5%로 동결)
- 각종 보조금 및 사회보장수당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통제 강화

40) 프랑스 사회보장채무의 재정수지 회복을 위해 채무상환을 목표로 함.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가까운 구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을 제공하는 파산이 불가능한 공공기금

<표 2-Ⅳ-4> 2012년 사회보장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1 결산	2012 예산
의료(CNAM)	-9.5	-5.9
산재(AT/MP)	0.0	-0.0
노령(CNAV)	-6.0	-5.9
가족지원금(CNAF) ¹⁾	-2.6	-2.0
일반 제도 수지(RegimeGeneral) ²⁾	-18.0	-13.8
노후연대기금(FSV) ³⁾	-3.8	-4.1
총액	-21.8	-17.9

- 주: 1) 가족지원금(CNAF)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 및 보조금을 지급. 대부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수당이 대부분임
 2)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제도·특별제도·자영업자 제도·농업노동자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제도는 전체 피보험자의 7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중심적 제도임(의료/산재: 86.2%, 노령:66.1%, 가족수당: 전국민 100%)(박찬영, 1997; 최기춘 외, 2007) 재정동향 7호 참고
 3) 노후연대기금(FSV)은 보충성 급여로서 현재의 소득수준과 법정 최저생활수준의 차이만큼 지급(임춘식 외 6인, 2005)

□ (세입) 2012년 수입은 4,402억유로로 2011년 대비 182억유로(4.3%) 증가하였으며 FY2011~FY2015 기간 동안 재정 수입은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전망

- 2012년의 일반제도 예산(RG: Regime general)은 3,167억유로로 2011년 3,033억유로 대비 4.4% 증가
 - 자본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부담률을 2.2% → 3.4%로 인상하는 등 세입 확대를 통해 만성적 재정적자 감축 목표

□ (세출) 2012년 지출은 2011년 대비 136억유로(3.1%) 증가하였으며 FY2011~ FY2015 기간 동안 재정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전망

- 2012년의 일반제도 예산(RG: Regime general)은 3,305억유로로 2011년 3,213억유로 대비 2.9% 증가
- 국민건강보험 지출은 2012년 1,711억유로로 전년 대비 2.5%로 소폭 증가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진료비 지원은 2012년 789억유로로 전년 대비 2.6% 인상

SECTION 2 >>

- 고령인구 관련 정책 강화로 노인을 위한 기관의 건강 보험 비용과 서비스의 질 개선에 대한 지원이 2011년 대비 6.1%로 가장 큰 폭 증가

〈표 2-Ⅳ-5〉 국민건강보험지출(national de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단위: 십억유로, %)

	2011결산 (금액)	2012 (금액)	인상률
의료진료비지원(soins de ville)	77.3	78.9	2.1
병원시설 지출 목표 합계 (Total Ondam hospitalier, dont)	72.7	74.6	2.6
보건시설이용료 지원 (Etablissements de sante tarifés a l'activité)	53.9	55.3	2.7
건강시설관련 기타비용 지원 (Autres dépenses relatives aux Etablissements de sante)	18.9	19.3	2.2
의료·건강복지관련 지출 목표 합계 (Total Ondam medico-social, dont)	15.8	16.5	4.0
노인을 위한 기관의 건강 보험 비용과 서비스 개선지원 (Contribution de l'assurance maladie aux dépenses en établissements et services pour personnes âgées)	7.6	8	6.1
장애인을 위한 기관의 건강 보험 비용과 서비스 개선지원 (Contribution de l'assurance maladie aux dépenses en Etablissements et services pour personnes handicapées)	8.3	8.4	2.1
기타지원(Autres prises en charge*)	1.1	1.2	5.9
Ondam Total	167	171.1	2.5

자료: LFSS 2012

〈표 2-IV-6〉 사회보장예산 분야별 재정 추이

(단위: 십억유로, %)

	예산지출규모(Depenses)						예산지출증가율					5년평균 2010 -2015	
	2010	2011	2012	2013(안)	2014(안)	2015(안)	2010	2011	2012	2013(안)	2014(안)		2015(안)
	일반제도 예산*(Regime general)												
건강 (Maladie)	지출	153.4	157.4	161.6	165.9	170.6	175.2	2.6	2.7	2.7	2.7	2.7	2.7
	수입	141.8	147.9	155.7	161.4	167.7	174.2	4.3	5.3	5.3	3.7	3.9	4.2
	재정수지차	-11.6	-9.5	-5.9	-4.5	-2.9	-0.9	-18.1	-37.9	-23.7	-35.6	-69.0	-36.8
신재 (AT-MIP)	지출	11.2	11.6	11.9	12.2	12.5	12.8	3.6	2.6	2.6	2.5	2.4	2.7
	수입	10.5	11.6	12	12.3	12.8	13.3	10.5	3.4	2.5	4.1	3.9	4.9
	재정수지차	-0.7	0.0	0.0	0.1	0.3	0.5					66.7	66.7
가족수당** (Famille)	지출	52.9	55.0	56.0	57.5	58.9	60.3	4.0	1.8	1.8	2.7	2.4	2.7
	수입	50.2	52.4	53.9	55.3	57	58.7	4.4	2.9	2.9	2.6	3.1	3.2
	재정수지차	-2.7	-2.6	-2	-2.2	-1.9	-1.5	-3.7	-23.1	10.0	-13.6	-21.1	-10.3
노령 (Vieillesse)	지출	102.3	106.6	110.6	115.0	119.1	123.6	4.2	3.8	3.8	4.0	3.6	3.8
	수입	93.4	100.6	104.7	109.0	113.7	119.1	7.7	4.1	4.1	4.1	4.3	4.7
	재정수지차	-8.9	-6.0	-5.9	-6	-5.4	-4.5	-32.6	-1.7	1.7	-10.0	-16.7	-11.8
Toutes branches consolidees	지출	311.5	321.3	330.5	340.8	351.0	361.5	3.1	2.9	2.9	3.1	3.0	3.0
	수입	287.5	303.3	316.7	328.2	341.0	355.0	5.5	4.4	4.4	3.6	3.9	4.1
	재정수지차	-23.9	-18.0	-13.8	-12.6	-10.0	-6.5	-24.7	-23.3	-8.7	-20.6	-35.0	-22.5
기초제도 예산(Tous regimes de base)													
건강 (Maladie)	지출	176.5	181.3	186.2	190.8	196.0	201.0	2.7	2.7	2.7	2.5	2.7	2.6
	수입	165.2	171.8	180.4	186.4	193.2	200.3	4.0	5.0	5.0	3.3	3.6	3.9
	재정수지차	-11.4	-9.5	-5.8	-4.4	-2.7	-0.7	-16.7	-38.9	-24.1	-38.6	-74.1	-38.5

〈표 2-IV-6〉의 계속

	예산지출규모(Depenses)					예산지출증가율					5년평균 2010 -2015	
	2010	2011	2012	2013(안)	2014(안)	2015(안)	2011	2012	2013(안)	2014(안)		2015(안)
신제 (AT-MIP)	지출	12.6	12.9	13.3	13.6	13.9	14.2	2.4	3.1	2.3	2.2	2.4
	수입	11.9	13.0	13.4	13.7	14.2	14.8	9.2	3.1	2.2	3.6	4.5
	재정수지차	-0.7	0.1	0.1	0.1	0.3	0.6	-114.3	0.0	0.0	200.0	100.0
가족수당 (Famille)	지출	53.5	55.5	56.5	57.9	59.4	60.8	3.7	1.8	2.5	2.6	2.6
	수입	50.8	52.9	54.4	55.8	57.5	59.3	4.1	2.8	2.6	3.0	3.1
	재정수지차	-2.7	-2.6	-2	-2.2	-1.9	-1.5	-3.7	-23.1	10.0	-13.6	-21.1
노령 (Veillesse)	지출	194.1	202.6	210.4	217.5	224.0	230.5	4.4	3.8	3.4	3.0	2.9
	수입	183.3	194.5	202.6	209.1	216.0	223.3	6.1	4.2	3.2	3.3	3.4
	재정수지차	-10.8	-8.1	-7.8	-8.3	-8.0	-7.2	-25.0	-3.7	6.4	-3.6	-10.0
Toutes branches consolidées	지출	427.5	442.2	455.8	469.3	482.4	495.5	3.4	3.1	3.0	2.8	2.7
	수입	402.0	422.0	440.2	454.5	470.1	486.6	5.0	4.3	3.2	3.4	3.5
	재정수지차	-25.5	-20.1	-15.6	-14.8	-12.3	-8.9	-21.2	-22.4	-5.1	-16.9	-27.6
노후연대기금(FSV)												
Fonds de solidarite vieillesse	지출	13.8	17.5	18.3	18.4	18.6	18.8	26.8	4.6	0.5	1.1	1.1
	수입	9.8	13.8	14.2	14.7	15.2	15.7	40.8	2.9	3.5	3.4	3.3
	재정수지차	-4.1	-3.8	-4.1	-3.8	-3.4	-3.1	-7.3	7.9	-7.3	-10.5	-8.8

주: 일반제도 예산(Regime general)*: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제도 · 특별제도 · 지역일자 제도 · 농업노동자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제도는 전체 피보험자의 7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중심적 제도임(의료/산재: 86.2%, 노령: 66.1%, 가족수당: 전국민 100%)(박찬영, 1997, 최기훈 외, 2007). 재정동향 7호 참고
 가족지원금(CNAF)**: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 및 보조금을 지급, 대부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수당이 대부분임
 노후연대기금(FSV)***: 보충성 급여로서 현재의 소득수준과 법정 최저 생활 수준의 차이만큼 지급(임춘식 외 6인, 2005.)
 자료: LFSS 2012

2. 재정건전화

- 2012년 수정예산안은 2012년 1월 사르코지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개혁안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
 - 기업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완화해 노동비용과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입 증가방안도 마련함
 - 근로소득 2,290유로 이하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근로소득 2,290~2,620유로 사이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의 비율을 인하하기로 함
 - 기업들의 사회보장부담을 낮춰주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가가치세와 일반사회각출금(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의 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자 함(2012년 10월 시행 계획)
 - 현재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은 19.6%로 이를 EU 평균수준과 비슷한 21.2%로 1.6%p 인상할 계획으로, 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생활 필수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함
 - 일반사회각출금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8.2%에서 10.2%로 2.0%p 인상할 계획임
 - 금융부문에 대한 재정기여도를 높이고자 금융거래세를 신설하고자 함(2012년 8월 시행 계획)
 - 금융거래세는 EU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프랑스는 당시 논의된 세율 0.1%를 적용할 계획임
 - 탈세에 대해 한층 강도 높은 벌금을 부과해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조세피난처(Tax haven)와 관련된 국제적인 탈세에 관해서는 벌금을 백만유로로 증가시키고, 최대 5~7년 사이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함
- 연금제도의 개혁
 - 프랑스 정부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까지 줄이기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

- 연금개혁은 인구 변화(노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연령 도달)를 고려시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으며, 1960년 4인 노동인력이 연금생활자 1인을 부담하였다면 2020년에는 1.5인이 연금생활자 1명을 부양
- 2012년 기준 2018년까지 시행을 2017년까지 조기시행 입법의결
 - 2010년 초 정부안 발표 이후 연금개혁 추진과정에서 수차에 걸친 대규모 시위와 정유·교통 등 분야별 파업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 및 여당은 2010.11월 입법 강행
- 1982년 이래 60세로 규정되어 온 연금수급권 개시연령을 1956. 1.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62세로 상향조정
 - 완전연금 수령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 완전연금수령을 위한 기여금 납입기간을 현행 40년 6개월에서 2012년 41년, 2013년 41년 3개월로 연장
 - 공무원 연금과 일반 연금 간의 접근 등

3. 경기부양

- 프랑스의 산업생산 확대를 위해 신산업정책 발표
 - 산업혁신, 기업경쟁력 강화, 첨단분야 역량개선, 산업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2015년까지 프랑스의 산업생산을 2009년말 대비 25%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 해외 아웃소싱, 생산성 향상, 개방화 등으로 프랑스 내 산업부문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영속화
 -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2015년까지 프랑스 산업이 EU전체 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산업별 전략위원회(Comite strategiques filieres)를 설치, 산업 내 구성원 공동의 중장기 전략수립 유도
 - 동 전략에 따른 구조개편 노력 등 후속조치 지원을 위해 3억유로 배정
 - 산업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신산업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총리

- 산하 전국산업협의체(Conference nationale de l'industrie) 신설
 - 정부·사업자단체·노동단체·관련전문가 등 4개 집단으로 구성
 - 산업별 정책추진 및 일자리 창출 현황 점검,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제언, 규제 영향 평가,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평가 등 수행
- 산업계의 우수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산업-대학-고등연구기관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프랑스 재산업화(Reindustrialisation) 촉진을 위해 사전투자 유치금 지급 등 기업의 프랑스 내 생산적 투자 지원제도 마련

4. 기타 재정정책 이슈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정책과 고유가 대응책 마련
 -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법(Grenelle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감축, 2050년까지는 1990년 대비 1/4 수준으로 감축기로 공식화
 - 최종 에너지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20년까지 23%(2010년, 9.9%)로 제고한다는 방침인 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확보 전략과 획기적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
 - 고유가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의 실시간 인터넷 공개를 통한 실질적 유류가격인하 유도
 - 경제·재무·산업부가 인터넷(www.prix-carburants.gouv.fr)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며, 에너지담당부서(환경에너지총국)가 주·월·연간 평균 가격 집계 발표
 - 농어촌 및 자영운수업자 연료에 대한 소비세 환급 및 난방유 소비세 인하 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업용 연료에 대한 소비세 환급(hL당 0.05€)
 - 난방용 증유에 대해서는 소비세 인하(100kg당 1.665€)
 - 프랑스 에너지 소비량의 40.8%(2010 기준)를 차지하는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절약에 주력하는 한편, 일반대중의 에너지 절약의식 계몽 강화

- 주택에너지 수요조절을 위한 법적 규제 및 절약 설비 시공 지원
- 주택에너지절약을 위한 무이자 에코-융자정책 시행(주택 열효율 향상 위한 감세 제도와 병용)

- 프랑스 상·하원은 일시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로 교체하는 협약에 승인함 (2. 28)
 - 2010년 11월 28일, 유럽이사회는 향후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도록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ESM을 2013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12월 9일 EU 정상회의에서 ESM 1년 조기 도입에 합의, 1년 반 동안 EFSF와 병행 운영하기로 함
 - 채권발행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은 EFSF와 유사, 그러나 보증을 통해 기금을 조달하는 EFSF와 달리 출자국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납입자본금(총 800억유로)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프랑스는 이미 올해 수정예산을 통해 유럽재정안정기구에 65억유로를 납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참고〉 프랑스 재정기본법 10주년 기념 세미나 주요 내용

- 2001년 제정된 프랑스의 재정기본법(LOLF; Les lois de finances rectificatives)의 운영 성과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회계법원(court of audits)에서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2011. 11)
 - 재정기본법(LOLF)의 주요 목표인 예산편성과정 개혁, 책임성 원칙 확립, 성과주의 도입의 성과와 운영상의 문제점, 회계법원(court of audits)이 제시하는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재정지출 항목 분류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간소화하기 위해 예산을 프로그램, 미션별로 편성·배분하게 되었음

- 재정기본법(LOLF) 제정 이전의 지출항목은 850개였으나 2010년 22개의 미션과 143개의 프로그램으로 지출항목 간소화가 이뤄짐
- 그러나 현재 이는 중앙정부예산(state budget)에만 적용되는 규칙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적용이 필요함
- 재정기본법(LOLF) 도입으로 인해 의회는 예산 심의·확정권을 회복하며 재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게 됨
 - 예산상의 프로그램, 미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회계법원은 조언함
- 재정기본법(LOLF)은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35%의 예산담당 공무원들만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책임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되 예산 집행에 있어 유연성과 재량권을 더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전에는 재정정책과 재정지출의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나 재정기본법(LOLF) 도입으로 인해 성과주의 문화가 확립됨
 - 각 프로그램·미션들은 성과보고서·달성 결과·목표에 따른 예산활용 방식 평가서 등을 동반해야 함
 - 성과측정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예산 자원과 성과에 대한 연계가 좀 더 긴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음

V

독일 (FY2012: 2012. 1~2012. 12)*

〈표 2-V-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11.11.25	FY2012 독일예산안 확정
2012.1.16	2012년 국가인벤토리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 NIR)를 발표
2012.2.27	독일 의회,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통과
2012.2.29	독일 정부, 자원효율정책 결의

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경제전망) 2012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0.6%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7.0%) 및 물가(1.8%)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독일중앙은행 발표 기준)

〈표 2-V-2〉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EU 집행위원회		IMF		독일중앙은행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GDP 성장률	2.9	0.8	2.7	1.3	3.0	0.6
CPI*	2.4	1.7	2.2	1.3	2.5	1.8
실업률	6.1	5.9	6.0	6.2	7.1	7.0
수출**	7.8	3.9	8.6	3.9	8.3	3.2
수입**	7.9	5.8	9.0	3.7	7.4	4.3

주: * CPI: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 수출/수입: 재화 및 용역에 해당

자료: EU 집행위원회: Economic Forecast, 2011. 11.

IMF: Economic Outlook, 2011. 9.

독일중앙은행: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2011. 12.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김진아 연구원(jina@kipf.re.kr)

- (재정전망) FY2012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3,062억유로, 신규차입은 약 261억유로, 재정수지는 GDP 대비 -0.9%로 당분간 FY2011에 이어 적자재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표 2-V-3〉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재정전망	2011	2012
재정지출	305.8	306.2
재정수입 중 신규차입	48.4	26.1
재정수지	-1.1	-0.9

재정전망: 독일 재무부, 2011. 12.

재정수지: IFO(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Economic Forecast, 2011. 12.

- (예산기조)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지속: 경제성장과 재정안정 두 가지 목표 동시 추구
 - 재정적자 감축계획⁴²⁾을 통해 재정지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재정수입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 재정건전성 강화
 - 2016년부터 부채제한법에 의해 GDP의 0.35% 미만의 신규부채만 허용
 - 보조금 감축, 인센티브 강화 등 성장지향적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세원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부문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세입) FY2012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신규차입은 대폭 감소하여 총 재정수입은 3,062억유로로 전년 대비 0.1%증가

42) 재정적자 감축계획

(단위: 억유로, %)

		2011	2012	2013	2014	누계	비중		
지출 감축	복지	30	70	94	109	303	531	37.1	64.9
	일반행정	23	33	39	39	134		16.4	
	기타(국방)	6	11	27	50	94		11.5	
세입 증대	감면축소	20	25	25	25	95	287	11.6	35.1
	항공세등 신설	33	53	53	53	192		23.5	
적자감축계획		112	192	237	276	817	100.0		

자료: 독일 재무부, 2010. 6.

SECTION 2 >>

-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2,801억유로로 전년 대비 8.8% 증가
 -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와 함께 은행부과금, 항공세 부과 등을 통한 수입 증대로 인해 재정수입 증가
- 신규차입은 261억유로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규모
 - 중기재정계획(2011~2015)에 따르면 2015년까지 147억유로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⁴²⁾

〈표 2-V-4〉 연방정부 2012년도 예산

(단위: 십억유로, %)

	2010	2011 (추정치)	2012 (예산안)	2012 (확정예산)
I. 재정지출	303.7	305.8	306.0	306.2
전년 대비 증가율	+3.9	+0.7	+0.1	+0.1
II. 재정수입	303.7	305.8	306.0	306.2
조세 수입	226.2	229.2	247.4	249.2
세외 수입	33.4	28.2	31.5	30.9
신규 차입	44.0	48.4	27.2	26.1
III. 투자지출	26.1	32.3	26.4	26.9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11 bis 2015, 2011. 7.
BMF 월간보고서, 2011. 12.

- (세출) FY2012 재정지출은 3,062억유로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으며, 독일연방정부는 투자, 사회안정, 교육 및 연구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함
 -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 및 사회보장(Arbeit und Soziales) 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 48억유로(3.7%) 감소한 1,265억유로로, 2011년에 이어 복지 부문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재정긴축이 나타남
 - 보건(Gesundheit)분야는 전년 대비 8.2%(13억유로) 감소한 145억유로로 나타남
 - 연방부채(383억유로)는 전년 대비 11억유로(3.0%), 재무일반(133억유로)은 23억유로(20.9%), 교육 및 연구(129억유로)는 13억유로(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2) 중기재정계획(2011~2015)의 신규차입 규모
– 2013년 249억유로, 2014년 187억유로, 2015년 147억유로

<표 2-V-5> 2012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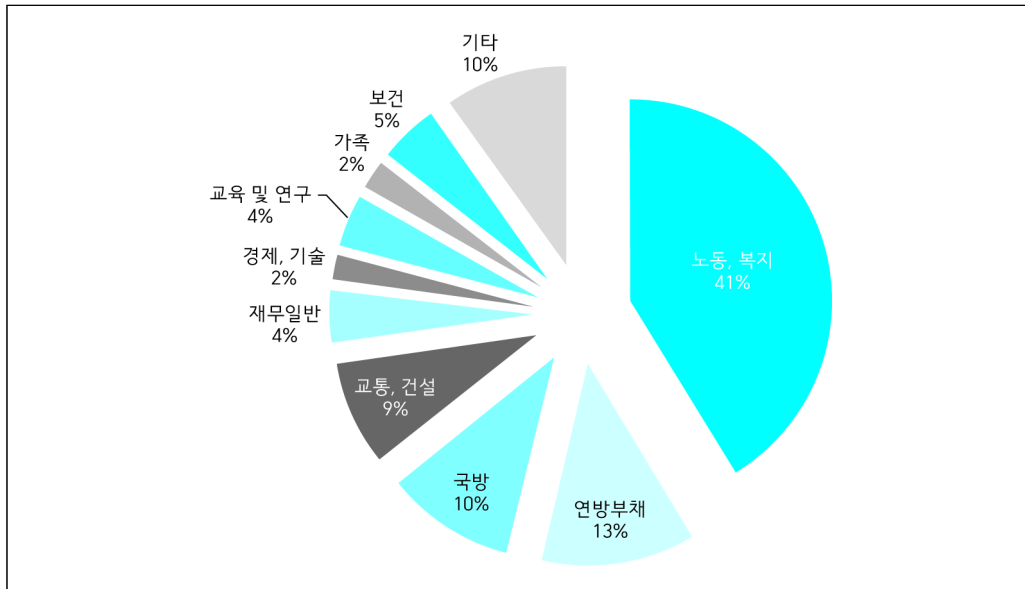
(단위: 십억유로, %)

분야	2011년 (A)	2012년 (B)	증감분 (B-A)	증감률
노동 및 사회보장(Arbeit und Soziales)	131.3	126.5	-4.8	-3.7
연방부채(Bundesschuld)	37.2	38.3	1.1	3.0
국방(Verteidigung)	31.5	31.9	0.4	1.3
교통, 건설 및 도시개발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25.2	25.9	0.7	2.8
재무 일반(Allgemeine Finanzverwaltung)	11.0	13.3	2.3	20.9
경제 및 기술(Wirtschaft und Technologie)	6.1	6.1	0	0.0
교육 및 연구(Bildung und Forschung)	11.6	12.9	1.3	11.2
가족(Familie)	6.5	6.8	0.3	4.6
보건(Gesundheit)	15.8	14.5	-1.3	-8.2
기타(Sonstige)	29.6	30.0	0.4	1.4
합계	305.8	306.2	0.4	0.1

자료: 독일 재무부, 2012예산안, 2011. 11. 25.

[그림 2-V-1] 2012년 분야별 세출예산 비중

(단위: %)



자료: 독일 재무부, 2012년 예산안, 2011. 11. 25.

나. 추경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2011년도 연방정부 결산이 잠정적으로 완료(2012년 1월)
- (재정지출) 재정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96억유로 감소한 2,962억유로이며, 2010년도 결산 대비 75억유로 감소
 - (재정수입) 재정수입은 2,785억유로로 2011년 예산상 2,574억유로보다 211억유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결산 대비 192억유로 증가
 - 조세수입은 2,481억유로로 당초 예산 전망치 2,292억유로보다 189억유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 결산 대비 219억유로 증가
 - (신규차입) 2011년 잠정결산에서 신규차입은 173억유로로 2011년 예산에서 전망한 484억유로보다 311억유로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2010년 결산에 비해 60.9%(270억유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V-6〉 2010년 잠정 결산 개요

(단위: 십억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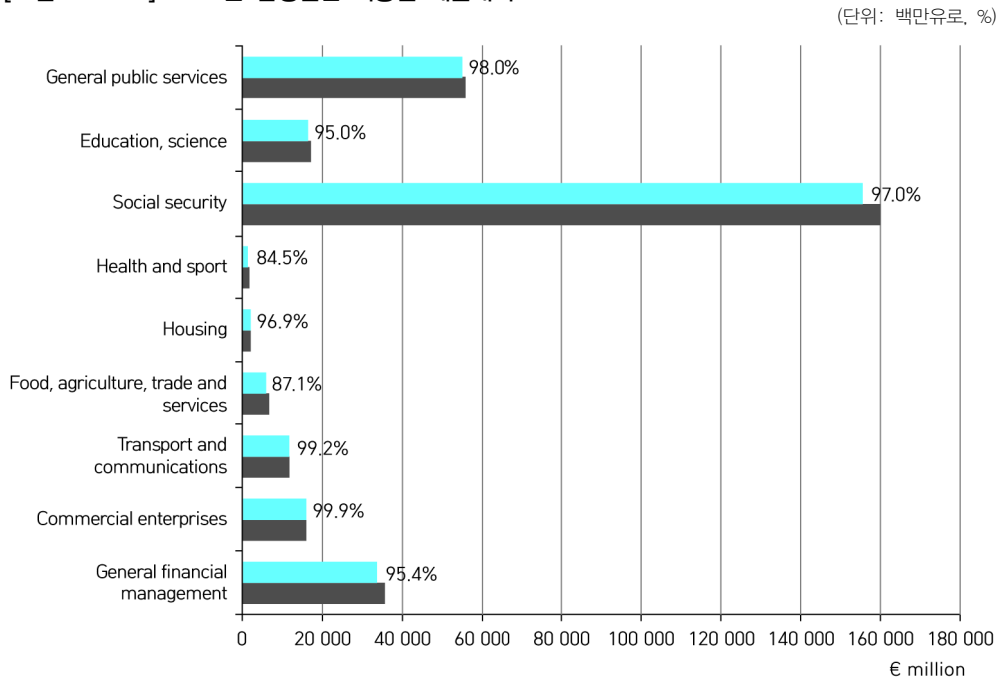
	2011 예산(A)	2011 잠정결산(B)	2010 결산(C)	예산대비 증감(B-A)	전년 대비 증감 (B-C)	전년 대비 증감률
재정지출	305.8	296.2	303.7	-9.6	-7.5	-2.5
재정수입	257.4	278.5	259.3	21.1	19.2	7.4
조세수입	229.2	248.1	226.2	18.9	21.9	9.7
세외수입	28.2	30.4	33.1	2.2	-2.7	-8.2
신규차입	48.4	17.3	44.3	-31.1	-27.0	-60.9

자료: 독일 재무부, 월간 보고서, 2012년 1월

-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그림 2-V-2]와 같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세출은 예산 대비 97%의 집행률을 보임

- 기타 공공서비스 일반은 98%, 재무 일반이 95.4%, 교육과학이 95% 등의 집행률을 나타냄

[그림 2-V-3] 2011년 잠정결산 기능별 세출내역



주: 위-잠정결산, 아래-예산, %는 예산 대비 %를 나타냄
 자료: 독일 재무부, 월간 보고서, 2012년 1월

2. 재정건전화

- 연방재무장관 및 각 주 경제장관으로 구성된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는 2011년 12월 1일 예산평가와 관련 제4차 회의를 개최함
 - 안정화위원회는 부채제한법 준수와 영구적인 신규 차입 감소를 위해 재정건전화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필수 요소로 안정적인 세금 정책을 언급함
 - 안정화위원회의 정기적인 '예산감시(budgetary surveillance)' 업무는 연방 및 주정부의 예산상황을 평가지표 분석을 사용하여 평가

- 예산감시의 목표는 조기에 재정위험을 발견하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위험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임
- 4개 주정부(Berlin, Bremen, Saarland, Schleswig-Holstein)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위기 징조는 없음
- 안정화위원회는 재정 위기에 직면한 베를린 등 4개 주정부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제공하는 평가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채택함
 - 위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며, 대상이 되는 각 주정부 재정회복을 위해 고안됨
 - 대상 주정부들은 1년에 두 번 예산 재건 프로그램의 이행 정도 즉, 신규차입 감소 규모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안정화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3.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2012년 독일예산의 기초 아래, 성장지향적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세원을 확대하고, 교육 및 연구부문의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
 - 중·소기업 및 중·소 소득층 중심의 세금감면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원전연료세를 부과하고 담배세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 마련
 -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를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4. 기타 정책이슈

- 독일 정부, 자원 효율 정책 결의(2012. 2. 29)
 - 독일 연방정부 내각은 최초로 원자재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포괄적인 자원 효율 정책(Das Deutsche Ressourceneffizienzprogramm/ProgRess)을 결의
 - (배경) 최근 인구증가 및 신흥국 성장으로 인해 세계 원자재 소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가 심각하며, 산업국가와 개도국 간의 원자재 소비 및 환경폐해 불평등 고조

– 독일 정부는 이미 2002년 독일의 원자재생산성을 2020년까지 1994년 대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을 국가적 지속가능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동 목표의 실현을 위해 2010. 10. 20 자원 효율 정책을 수립하기로 결의한 바 있음

- (ProgRess 정책 요지)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상품의 생산과정 전반을 고려하여 새로운 행동수칙, 조치 및 예시를 제시
 - 지속가능한 원자재 수급 확보, 생산과정에서 자원 효율성 향상, 자원효율성을 고려한 소비 풍조 형성, 자원 효율적 재활용 시스템 구축, 사회·경제에서 주도하는 자발적인 조치 강화 포괄적 제도 활용
- 뢰트겐 연방환경부장관은 동 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환경을 보호하고 세계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임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사회의 핵심 역량이라고 언급

□ 독일 의회,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통과(2012. 2. 27)

- 독일 연방하원이 27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96표, 반대 90표로 가결
- ‘Bild am Sonntag’의 여론조사 결과 독일인의 62%가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반대하고 33%만이 찬성(2012. 2. 26)

□ 독일 정부는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무 이행을 위해 연방환경청에서 작성한 2012년 국가인벤토리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 NIR)를 발표(2012.1.16)

- 독일은 2010년 경제회복에 따른 활발한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 의무를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약 25%(연간 29,500만톤 CO₂) 감축
 - 교토의정서에 따른 독일의 의무는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1% 감소
-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금융경제위기를 겪은 2009년에 비해 2.7% 증가했지만, 위기 이전인 2008년에 비해서는 약 4% 감소

- 뢰트겐 연방환경부장관은 독일이 2020년 4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이미 거의 2/3를 달성하였다고 언급하고, 향후 기후보호 정책이 경제성장,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
- 플라스바트 연방환경청장은 독일은 교토의정서 의무가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독일은 에너지 효율 증가 및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계속 성공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

<참고> EU 신재정협약*43)

- EU, 재정건전화를 위한 '신재정협약(New Fiscal Compact)' 서명
 -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성장, 고용 경쟁력과 사회 결속력을 도모하고, 유럽 내 재정통합을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정부적자 방지를 위함
 - 재정규율 강화, 유로지역의 감시체계 도입 그리고 균형예산준칙(balanced budget rule)을 목표로 함
 -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25개국이 서명함
 - 25개국 중 12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 협약이 발효됨
 -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회원국들의 헌법 등 국내법 체계에 협약 내용을 도입해야 함

<'신재정협약'의 내용>

- 일반 정부 예산은 균형재정이거나 흑자재정이어야 함
 - 원칙적으로 연간 구조적 재정적자는 명목 GDP 대비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장기적으로 일반정부 부채가 GDP의 60% 미만인 경우, 구조적 재정적자는 명목 GDP의 1%까지 허용됨
 -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변동 및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것임
 - EU는 연간 최소 2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가능
 - EU 회원국이 아닌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정상들을 연간 1회 이상 초청해 공동회의를 열도록 함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박신아 연구원(sinapark@kipf.re.kr)

- 회원국들의 경제 및 예산, 협약의 이행여부 감시를 강화함
 - 협약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관할권을 인정함(TFEU* 조항 273)
 - * The Treaties of the European Union
 - 회원국들은 국채 발행계획을 유럽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함
 - 기존의 감시절차인 안전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하에서 유럽의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예산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budgetary and economic partnership programme)의 이행과 그와 일치하는 연간 예산계획안을 모니터링할 것임

- 자동시정조치 및 협약 미이행 회원국에게 벌금을 부과함
 - 유로지역 회원국들에게 SGP의 과다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가 적용됨(TFEU 조항 126)
 - 효과적인 구조적 재정 개혁을 위해 예산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예산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은 EU 법률로 규정
 -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경우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자동 제재 가동
 - 회원국들은 협약 미이행 국가를 ECJ에 제소할 수 있으며, ECJ의 최종판정 후 해당 국가는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함
 - 벌금은 유럽안정 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의 구제금융기금으로 편입됨

- ※ 과다적자 시정절차(EDP)
 - SGP 재정준칙인 재정적자 GDP 대비 3%, 부채비율 GDP 대비 60% 규정을 엄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제재 메커니즘 가동
 -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 교정적 제재가 가동되어 기존보다 신속한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벌금부과, EU 보조금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3) EU, "New fiscal compact signed: strengthened fiscal discipline and convergence in the euro area," 2012. 3.

SECTION 2 >>

- 제재 메커니즘은 회원국 다수가 반대투표를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역 다수결 방식(reverse majority rule)을 채택
- 해당국은 구조적 개혁 방안을 제출 후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음
- EU의 정책 권고를 받아 재정개혁을 수행

VI 캐나다 (FY2011-12: 2011. 4~2012. 3)*

〈표 2-V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내용
2011. 10. 12	결산(Annual Financial Report) 발표
2011. 11. 7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발표
2012. 2. 28	추경(C) 발표
2012. 2. 28	2012-13 Main Estimates 하원 상정
2012. 3. 29(예정)	Budget 2012 발표

1. 예산 및 결산

가.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 2011년 11월 8일 캐나다 재무부는 FY2011-12 예산안의 경제 및 재정전망을 수정한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⁴⁴⁾」 발표

□ 경제전망

- (실질 GDP성장률) 2012년 실질 GDP성장률은 약화된 세계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여 2011년 6월 전망치보다 0.7%p 낮은 2.1% 전망
- (명목 GDP증가율) 2012년 명목 GDP증가율은 4.1%로 전년 대비 1.2%p, Budget 2011 전망치 대비 0.9%p 하락 전망
- (실업률) 약화된 세계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2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p 하락한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채민희 연구원(mhchae@kipf.re.kr)

44) 민간부문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2011. 9)를 토대로 수정된 경제 전망임

SECTION 2 >>

7.2%로 2011년 6월과 동일하게 전망

〈표 2-VI-2〉 캐나다 경제전망(2011년 11월 현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2015
실질 GDP성장률	Budget 2011	2.9	2.8	2.7	2.5	2.5	-	2.7
	수정된 전망	2.2	2.1	2.5	2.5	2.5	2.3	2.4
명목 GDP성장률	Budget 2011	5.8	5.0	4.9	4.5	4.5	-	4.9
	수정된 전망	5.3	4.1	4.5	4.5	4.5	4.3	4.6
실업률	Budget 2011	7.5	7.2	7.0	6.7	6.5	-	7.0
	수정된 전망	7.5	7.2	7.0	6.8	6.6	6.4	7.0

자료: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Table 2.1, 2011. 11.

□ 재정전망

- (재정수지)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계획(The Deficit Reduction Action Plan)으로 FY2015-16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 재정적자 감축계획에서 설정한 절감 목표액 감안 시 FY2015-16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 예상
- (부채) FY2012-13 GDP 대비 부채비율은 35.0%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FY2016-17 30.3%까지 하락 전망
 - FY2016-17 GDP 대비 부채비율 30.3%는 FY2008-09 29.0%에 근사한 수치로, 2016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을 안정화한다는 2010년 6월 G-20 정상회의 합의 목표 달성 기대

<표 2-VI-3> 캐나다 재정전망(2011년 11월 현재)

(단위: 억캐나다달러)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총세입		2,371	2,435	2,518	2,688	2,851	2,984	3,106
프로그램 지출		2,396	2,430	2,474	2,525	2,576	2,653	2,724
이자지출		309	315	319	333	350	365	377
총지출		2,705	2,745	2,792	2,858	2,926	3,018	3,101
재정수지		-334	-310	-274	-170	-75	-34	-5
적자 감축 계획	절감목표			10	20	40	40	40
	목표반영 재정수지	-334	-310	-264	-150	-35	6	45
부채		5,503	5,852	6,127	6,297	6,372	6,406	6,400

자료: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Table 3.2 & Table 3.3, 2011, 11.

나. FY2012-13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발표

- 재무위원회는 2012년 2월 28일 FY2012-13 본세출예산안을 하원에 상정
 - 매년 정부는 세출예산법안(appropriation bill) 의결을 위해 지출계획을 담은 세출예산안(The Estimates)을 마련
 -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개요와 전년 대비 변화를 설명하는 정부지출계획(The Government Expense Plan)과 각 부처 및 기관들의 세부지출계획을 상세히 수록하는 본세출예산안 등으로 구성
 - FY2012-13 본세출예산안은 FY2011-12 이전 예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출을 계획하였고, FY2012-13 예산안(Budget 2012)에 나올 새로운 계획은 반영하지 않음

- FY2012-13 본세출예산안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2,519억캐나다달러, 투융자예산은 전년 대비 226.7% 감소한 (-)227억캐나다달러 편성
 - 의결지출(Voted Expenditures)⁴⁵⁾은 일반예산에서 전년 대비 0.2% 증가한 919억캐나

다달러, 투용자예산에서 전년 대비 20% 감소한 1억캐나다달러 편성

〈표 2-Ⅵ-4〉 캐나다 FY2012-13 세출예산안

(단위: 억캐나다달러)

	일반예산 (Budgetary Expenditures)				투용자예산 (Non-Budgetary Authorities)			
	2012-13	2011-12	변화분		2012-13	2011-12	변화분	
			\$	%			\$	%
의결지출 (Voted)	919	918	1	0.2	1	1		(20.0)
법정지출 전망 (Statutory forecasts)	1,600	1,590	10	0.6	(20)	(7)	(13)	191.1
합계	2,519	2,508	11	0.4	(19)	(6)	(13)	(226.7)

주: 괄호 안 숫자는 음수를 나타냄

자료: 캐나다정부, "2012-13 Estimates," p. 7, 2012, 2.

- FY2012-13 법정지출⁴⁶⁾은 일반예산에서 전년 대비 0.6% 증가한 2,519억캐나다달러, 투용자예산에서 전년 대비 191.1% 감소한 (-)20억캐나다달러 전망
- FY2012-13 일반예산⁴⁷⁾은 2,519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0.4%(11억캐나다달러) 증가
- FY2012-13 투용자예산⁴⁸⁾은 전년 대비 226.7%(13억캐나다달러) 감소한 (-)19억캐나다달러로, 즉 FY2012-13의 용자·투자 및 선금의 회수금이 그에 대한 새로운 지출분을 19억캐나다달러까지 초과 예상

45) 의결지출은 매년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지출로, 승인은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을 통해 요청됨

46) 법정지출전망(Statutory forecasts)은 고용보험과 같이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출 전망치로 전체 지출을 추정하기 위해 예산안에 포함

47) 일반예산은 공공부채 상환 비용, 운영 및 자본지출, 보조금과 기부금, 공기업에 대한 지출 등으로 구성

48) 투용자예산은 용자·투자 및 선금으로 구성되며 캐나다 정부의 재무자산 구성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음수는 용자·투자 및 선금의 회수가 지출을 초과할 것이라는 의미

다. FY2012-13 예산안 Budget 2012 발표 예정(2012. 3. 29)

- Budget 2012는 Budget 2011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정책 기초를 그대로 유지
 - 2012. 3. 1. 재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Budget 2012는 전년 예산안과 동일하게 캐나다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정책과 정부지출 효율화를 계획

라. FY2011-12 추경안(C)(2012.2.28)

- FY2011-12 추경(C)는 의결지출에 본세출예산안 의결지출의 1.3% 수준인 약 12억캐나다달러 추가 편성
 - 수질 및 대기정화, 온실가스방출 방지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자 가스세 펀드(Gas Tax Fund)에 35억 3,400만캐나다달러 투자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협정(Copenhagen Accord)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이용을 늘리고 숲과 농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약 3억 8,150만캐나다달러 투자

- 추경안에는 본세출예산안에 포함하기에 다소 늦게 시작된 사업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요구내역을 수록
 - 통상적으로 정부는 1년에 총 3회 추경안을 편성하며, 올해도 6월 추경(A), 11월 추경(B) 등 총 3회 실시

〈표 2-VI-5〉 캐나다 FY2011-12 대비 FY2012-13 세출예산안 변화

(단위: 억캐나다달러, %)

구분	2011-12					2012-13	변화		
	합계 (a)	본 세출	추경			본세출(b)	증감분 b-a	증가율 (b-a)/b	
			A	B	C				
일반예산	의결지출	994	918	20	43	12	919	(74)	(75)
	법정지출전망	1,597	1,590		23	(6)	1,600	3	2
	소계	2,590	2,508	20	66	(4)	2,519	(71)	(28)
	다년도지출승인	6						(6)	(1,000)
	합계	2,596	2,508	20	66	(4)	2,519	(77)	(30)
투용자 예산	의결지출	1	1				1		10
	법정지출전망	(19)	(7)		(14)	2	(20)	(1)	57
	합계	(18)	(6)		(14)	2	(19)	(1)	59

주: 괄호 안 숫자는 음수를 나타냄
 자료: 캐나다정부, "2012-13 Estimates," p. 8, 2012, 2.

마. FY2010-11 결산

- 캐나다 정부는 2011년 10월, 예산적자 334억캐나다달러(전년 대비 40% 감소)를 기록한 FY2010-11 결산보고서 발표
 - (총세입) FY2010-11 총세입은 개인소득세와 재화및용역세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8.5% 증가한 2,371억캐나다달러
 - (개인소득세) FY2010-11 개인소득세 수입은 주택수리비용 세금환급혜택이 2010년 1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9.1% 증가한 1,135억캐나다달러
 - (재화및용역세) FY2010-11 재화및용역세 수입은 경기회복으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7% 증가한 284억캐나다달러
 - (고용보험) FY2010-11 고용보험 수입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175억캐나다 달러로, 고용보험료율의 상승⁴⁹⁾과 낮은 실업률에서 기인

49) 고용보험료율은 2011년부터 보험대상소득 100캐나다달러당 1.78캐나다달러로 상승

<표 2-VI-6> 2010-11년 총세입 결산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 분	2009-10	2010-11	증감분	증감률
세수				
소득세				
개인소득세	103,947	113,457	9,510	9.1
법인세	30,361	29,969	-392	-1.3
기타소득세	5,293	5,137	-156	-2.9
소계(A)	139,601	148,563	8,962	6.4
기타세금 및 관세				
재화 및 용역세	26,947	28,379	1,432	5.3
에너지세	5,178	5,342	164	3.2
관세	3,490	3,520	30	0.9
기타소비세 등	4,958	5,662	704	14.2
소계(B)	40,573	42,903	2,330	5.7
총조세수입(C=A+B)	180,174	191,466	11,292	6.3
고용보험수입(D)	16,761	17,501	740	4.4
기타세입				
공기업(Crown corporation)	7,622	12,937	5,315	69.7
기타프로그램	12,396	13,378	982	7.9
순 외국환	1,647	1,809	162	9.8
소계(E)	21,665	28,124	6,459	29.8
총세입(C+D+E)	218,600	237,091	18,491	8.5

자료: 캐나다재무부, Annual Financial Report, Table 3

- (총지출) FY2010-11 총지출은 2,705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고, 공채를 제외한 총프로그램지출은 2,396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2.1% 감소
 - (개인이전지출) FY2010-11 개인이전지출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6,814억캐나다달러로, 개인이전지출 중 고용보험 지출의 감소가 두드러짐
 - (기타이전지출) FY2010-11 기타이전지출은 FY2009-10 온타리오 및 BC주의 통합 판매세⁵⁰⁾ 전환 지원을 위해 늘렸던 지출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97% 감소

50) 통합판매세는 연방소비세(GST, the federal Goods and Services Tax)와 지방소비세(PST, regional Provincial Sales Tax), 판매세를 통합한 세금임

SECTION 2 >>

〈표 2-VI-7〉 2010-11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 분	2009-10 실적	2010-11 실적	증감분	증감률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				
노후혜택	34,653	35,629	976	2.8
고용보험급여	21,586	19,850	-1,736	-8.0
아동보조금	12,340	12,656	316	2.6
소계(A)	68,579	68,135	-444	-0.6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				
보건 및 기타사회 프로그램 지원	35,678	37,210	1,532	4.3
재정협정	16,193	17,577	1,384	8.5
도시 및 커뮤니티 지원	1,872	1,751	-121	-6.5
기타이전	5,950	184	-5,766	-96.9
퀘벡주연방세경감(Quebec abatement) ⁵¹⁾	-2,703	-3,751	-1,048	38.8
소계(B)	56,990	52,971	-4,019	-7.1
직접 프로그램지출				
보조금 및 기타 이전지출(C)	39,892	36,820	-3,072	-7.7
기타 직접프로그램지출				
정부산하 공사	10,428	10,547	119	1.1
국방	20,863	21,273	410	2.0
기타 부서 및 기관	48,032	49,846	1,814	3.8
소계(D)	79,323	81,666	2,343	3.0
직접프로그램지출 합계(E=C+D)	119,215	118,486	-729	-0.6
총프로그램지출(F=A+B+E)	244,784	239,592	-5,192	-2.1
공채(Public Debt)(G)	29,414	30,871	1,457	5.0
총합계(F+G)	274,198	270,463	-3,735	-1.4

자료: 캐나다재무부, "Annual Financial Report," Table 4

51) 퀘벡주연방세경감은 퀘벡주 거주자에게 연방개인소득세(federal personal income tax)의 16.5%를 경감해주는 제도임

2. 재정건전화

- 캐나다 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차 전략검토를 완료하고 FY2011-12 동안 적자 감축계획인 전략운영검토(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⁵²⁾를 수행
 - 의회가 책정한 직접프로그램비용 중 약 800억캐나다달러를 검토하고 FY2012-13부터 FY2015-16까지 총 110억캐나다달러 절감 목표 수립
 - 전략운영검토 결과는 Budget 2012에서 발표 예정

〈표 2-VI-8〉 전략운영검토 절감 목표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합계
2010 전략검토		194	271	569	525	534	2,094
탈세관리강화를 통한 공평세제정책 ⁵³⁾		240	730	1,095	1,040	990	4,095
Budget 2011에 기록된 총 절감분	0	434	1,001	1,664	1,565	1,524	6,189
전략운영검토 절감 목표			1,000	2,000	4,000	4,000	11,000
총 절감분	0	434	2,001	3,664	5,565	5,524	17,189

자료: 캐나다재무부, "Budget 2011," Table 5.1, 2011. 6.

3. 경제성장 및 경기부양

- 경기부양 2개년 계획(Canada's Economic Action Plan: CEAP)은 FY2010-11까지 대부분 완료하고 FY2011-12에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행
 - 인프라 투자 관련 4개 사업 기한을 2011년 3월 31일에서 2011년 10월 31일로 연장
 - 인프라건설부양펀드, 캐나다건설펀드-지역단위지원 후생인프라캐나다프로그램, 지식인프라프로그램

52) 전략운영검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캐나다 성과관리제도'를 참조

53) Tax fairness-closing tax loopholes

SECTION 2 >>

〈표 2-VI-9〉 경기부양 2개년 계획 - 기반시설확충 내역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기존 경기부양책	수정된 경기부양책	2011-12 추정지출
인프라건설부양펀드 (Infrastructure Stimulus Fund)	4,000	3,204	796
지식인프라프로그램 (Knowledge Infrastructure Program)	2,000	1,740	251
캐나다건설펀드-지역단위지원 (Building Canada Fund Communities Component Top-up)	500	337	163
후생인프라캐나다프로그램 (Recreational Infrastructure Canada Program)	500	417	81
합계	7,000	5,698	1,291

자료: 캐나다재무부, "Budget 2011," Table 3.2, 2011. 6.

4. 기타 이슈

- 캐나다 정부는 퇴직소득 시스템 강화를 위해 2011년 11월 17일 공동출자공인연금법(The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s Act)을 수립
 - 현재 캐나다인의 60% 이상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적립제도(pension plan)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
 - 따라서 정부는 퇴직연금적립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금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출자공인연금제를 도입
 - 동 제도는 장기적으로 캐나다의 퇴직소득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전망

- 세금경감(Tax Relief)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세액공제(Family Caregiver Tax Credit)와 설비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공제 혜택 확대 시행
 - 재무부는 2011년 예산기조인 감세정책에 따라 2011년 10월 4일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법(Keeping Canada's Economy and Jobs Growing Act)을 발표하여 가족돌봄세액공제와 자본비용공제 혜택을 확대
 - 가족돌봄세액공제는 심신이 미약한 부양가족 구성원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자본비용공제는 제조·가공업에서 기계 및 장비투자에 대해 제공해 주던 자본비용공제 혜택을 2013년까지 2년 연장

VII

호주 (FY2011-12 : 2011. 7~2012. 6)*

〈표 2-V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11. 9. 24	FY2010-11 결산보고서 발표
2011. 11. 9	FY2011-12 반기경제·재정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발표
2012. 1. 23	에너지안전보장이사회(Energy Security Council) 추가 임명
2012. 1. 25	CPI발표 소비자가격지수-1, 2분기, 2,011
2012. 1. 29	새로운 연금안 발표
2012. 1. 2	Great Barrier Reef 관광산업 지원 발표
2012. 2. 23	멕시코 시티 G20 재무 장관 회의 참석
2012. 3. 7	2011년 4분기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
2012. 3. 14	호주 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인세 인하 초안 발표
2012. 3. 14	아당지도자 토니애벗(Tony Abbott)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 성명 발표

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호주의 FY2011-12 예산안은 2011. 5월 발표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KIPF 재정동향』 6호 참조

나. 수정예산안

- 반기경제·재정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발표
(2011.11.9)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최경진 연구원(choikj@kipf.re.kr)

- (경제전망) 2011년 자연재해로 호주경제와 정부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하락과 소득증가 등으로 경제는 견고하게 성장
 -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4%(2011.5발표)에서 3.25%(2011.11발표)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표 2-Ⅶ-2〉 주요 경제 변수

	전망(Forecasts)					예측(Projections)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경제성장률 ¹⁾	2.25	4.00	3.25	3.75	3.25	3.00	3.00	3.00	3.00
고용률	2.75	1.75	1.00	1.75	1.50	1.50	1.50	1.50	1.50
실업률	5.00	4.75	5.50	4.50	5.50	5.00	5.00	5.00	5.00
소비자물가지수(CPI)	3.25	2.75	2.25	3.00	3.25	2.50	2.50	2.50	2.50
경상성장률	8.00	6.25	6.25	5.75	5.00	5.25	5.25	5.25	5.25

주: 1) 경제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자료: Budget 2011-12, 2011. 5.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 11.

- (세입) FY2011-12 반기재정보고서 재정수입은 예산안에 비해 59억호주달러 감소 전망
- (세출) FY2011-12예산안 발표 이후 정책결정 및 거시경제변수 변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은 증가
 - FY2011-12 반기재정보고서 재정지출은 예산안에 비해 59억호주달러 증가

SECTION 2 >>

〈표 2-Ⅶ-3〉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추이

(단위: 십억호주달러, %)

	2011-12		2012-13		2013-14		2014-15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재정수입 ¹⁾ (Revenue)	350.0	344.1	383.1	382.8	405.2	407.5	425.8	428.2
GDP대비 비율	23.7	23.1	24.6	24.5	24.7	24.7	24.6	24.6
재정지출 ²⁾ (Expenses)	365.8	371.7	380.5	379.9	399.0	400.6	414.1	418.9
GDP대비 비율	24.8	25.0	24.4	24.3	24.3	24.3	23.9	24.1
재정수지 ³⁾ (Fiscal balance)	-20.3	-32.4	4.0	4.7	3.2	4.2	8.5	6.4
GDP대비 비율	-1.4	-2.2	0.3	0.3	0.2	0.3	0.5	0.4
예산수지 (Underlying cash balance)	-22.6	-37.1	3.5	1.5	3.7	1.9	5.8	3.1
GDP대비 비율	-1.5	-2.5	0.2	0.1	0.2	0.1	0.3	0.2
순채무 (Net debt)	106.6	132.6	104.6	133.3	105.3	135.7	100.9	134.1
GDP대비 비율	7.2	8.9	6.7	8.5	6.4	8.2	5.8	7.7

주: 1) 발생주의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1) *Budget 2011-12*, 2011, 5.

2) *Final Budget Outcome 2010-11*, 2011, 9.

3)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 11.

〈표 2-Ⅶ-4〉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2011-12	2012-13	2013-14	2014-15
■ 2011-12예산안 재정지출	365,817	380,523	398,974	414,137
예산안과 MYEFO와의 차이	5,929	-587	1,649	4,726
- 정책결정효과 ¹⁾	4,805	1,166	6,269	6,468
- 거시경제변수 및 기타 변화효과 ²⁾	1,124	-1,753	-4,621	-1,741
■ 2011-12 MYEFO 재정지출	371,747	379,935	400,623	418,863

주: 1) 정책결정으로 인한 공공채무 이자지급의 영향은 제외하고 결정된 정책을 위한 응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는 차감계산

2) 경제적 요인에 의한 변동(실업급여, 가격지수 및 임금, 이자 및 환율, 주정부에 대한 GST지급 등) 및 공공채무 이자, 기타 변동분 등이 포함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 11.

- (교육) FY2011-12 교육분야 지출은 299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8.3% 감소하였고, MYEFO에서는 300억호주달러로 예산안보다 약간 증가
- (보건) FY2011-12 보건분야 지출은 599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고, MYEFO에서는 609억호주달러로 예산안보다 증가
- (사회보장 및 복지)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지출은 1,219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고, MYEFO에서는 1,249억호주달러로 예산안보다 증가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FY2011-12의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분야 지출은 46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9.3% 감소하였고, MYEFO에서는 59억호주달러로 예산안 수준보다 증가
- (교통 및 통신) FY2011-12의 교통 및 통신 분야 지출은 69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6.8% 증가하였고, MYEFO에서는 83억호주달러로 예산안보다 크게 증가
- (기타 지출) 자연재해(2010-11년의 홍수 및 사이클론)로 인해 기타지출이 증가하여 719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고, MYEFO에서는 691억호주달러로 예산안보다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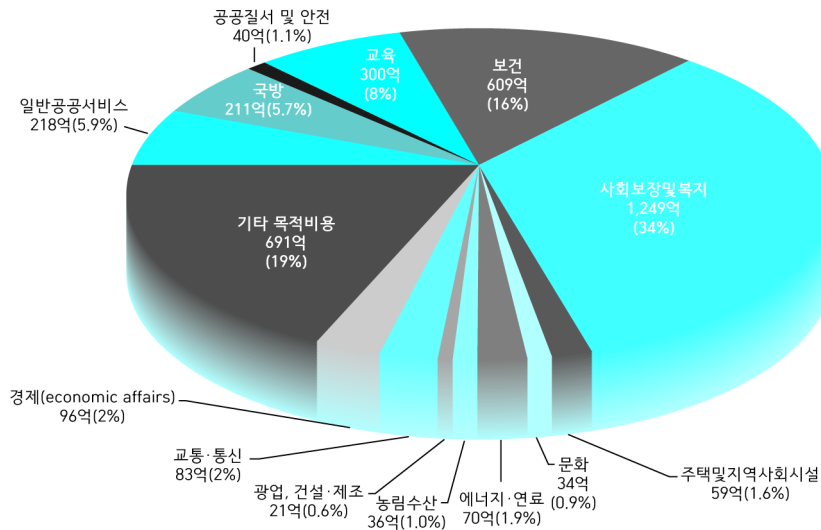
<표 2-Ⅶ-5> 예산안과 MYEFO의 기능별지출 전망 비교

(단위: 십억호주달러)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15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일반공공서비스	20.9	21.8	21.5	21.8	22.3	22.7	23.1	23.5
국방	21.3	21.1	20.7	20.6	21.9	21.8	22.8	22.6
공공질서 및 안전	4.0	4.0	4.0	4.0	4.0	4.0	4.0	4.0
교육	29.9	30.0	30.3	30.3	31.4	31.2	32.7	32.7
보건	59.9	60.9	61.6	60.9	64.7	64.0	67.7	67.2
사회보장 및 복지	121.9	124.9	127.7	130.0	133.3	135.2	139.2	141.6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4.6	5.9	4.7	7.2	4.6	8.9	4.1	9.1
문화	3.4	3.4	3.4	3.4	3.3	3.3	3.3	3.2
에너지·연료	6.3	7.0	6.5	6.5	6.6	8.0	6.6	8.1
농림수산	3.4	3.6	2.5	2.6	2.2	2.4	2.4	2.5
광업, 건설·제조	2.0	2.1	2.0	2.1	2.0	2.1	2.0	2.2
교통·통신	6.9	8.3	7.1	5.9	6.7	6.8	6.3	6.2
경제(other economic affairs)	9.4	9.6	8.7	9.0	8.2	8.8	8.2	8.8
기타 지출	71.9	69.1	79.8	75.6	87.6	81.5	91.8	87.4
총지출	365.8	371.7	380.5	380.0	399.0	400.6	414.1	418.9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 11.

[그림 2-Ⅶ-1] FY2011-12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자원 배분



다. 결산

- FY2010-11 결산보고서(Final Budget Outcome) 발표(2011.9.24)
- (예산수지) FY2010-11 예산수지 적자는 477억호주달러(GDP대비 3.4%)를 기록하며 전망보다 17억호주달러 개선
 - 이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FY2012-13 흑자재정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세입) FY2010-11 재정수입은 3,099억호주달러(GDP대비 22.3%)로 전망 대비 9억호주달러 감소
 - 조세수입은 2,890억호주달러로 전망보다 13억호주달러 감소
 - 세외수입은 209억호주달러로 전망보다 4억호주달러 증가
- (세출) FY2010-11 재정지출은 3,561억호주달러(GDP대비 25.6%)로 전망 대비 53억호주달러 증가
 - 자연재해복구 프로그램 비용이 10억호주달러에서 61억호주달러로 증가한 것에 기인
- (순채무) FY2010-11의 순채무는 846억호주달러(GDP대비 6.1%)로 전망대비 22억호주달러 증가한 수준임
 - 주로 낮은 이자율로 인해 정부채권(Commonwealth Government Securities: CGS)의 시장가치가 상승한 것에 기인

SECTION 2 >>

〈표 2-Ⅶ-6〉 FY2010-11 결산 요약

(단위: 십억호주달러, %)

	2009-10		2010-11		
	예산	실적	예산	전망	실적
재정수입(Revenue) ¹⁾ (GDP 대비 비율)	290.6 (24.7)	292.8 (22.5)	321.8 (22.9)	310.8 (22.4)	309.9 (22.3)
- 조세수입			302.5	290.3	289.0
- 세외수입			19.4	20.5	20.9
재정지출(Expenses) (GDP 대비 비율)	338.2 (28.7)	339.2 (26.4)	354.6 (25.2)	350.8 (25.3)	356.1 (25.6)
재정수지(Fiscal balance) ²⁾ (GDP 대비 비율)	-53.1 (-4.5)	-52.9 (-4.1)	-39.6 (-2.8)	-45.7 (-3.3)	-51.5 (-3.7)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³⁾ (GDP 대비 비율)	-57.6 (-4.9)	-54.8 (-4.3)	-40.8 (-2.9)	-49.4 (-3.6)	-47.7 (-3.4)
순채무(Net debt) (GDP 대비 비율)	53.7 (4.6)	42.3 (3.3)	78.5 (5.6)	82.4 (5.9)	84.6 (6.1)

주: 1) 발생주의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Future Fund 수익금 제외

자료: Budget 2009-10, 2009. 5.

Budget 2010-11, 2010. 5.

Final Budget Outcome 2010-11, 2011. 9.

<표 2-VII-7> FY2010-11의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십억호주달러, %)

	2009-10		2010-11			증감률	
	예산	실적	예산	전망	실적	전년 대비	전망대비
일반 공공서비스	17.2	19.2	20.1	21.2	22.5	17.2	6.1
국방	21.0	20.2	21.0	20.1	20.4	1.0	1.5
공공질서 및 안전	3.9	3.6	3.9	3.9	3.8	5.6	-2.6
교육	35.2	34.9	33.0	32.6	32.1	-8.0	-1.5
보건	51.2	51.4	56.9	57.2	56.1	9.1	-1.9
사회보장 및 복지	111.0	109.2	115.0	116.7	117.1	7.2	0.3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9.1	9.0	5.4	5.7	5.5	-38.9	-3.5
문화	3.1	3.3	3.2	3.3	3.3	0.0	0.0
에너지·연료	8.4	8.5	7.6	6.3	5.9	-30.6	-6.3
농림수산	3.4	2.8	3.6	3.1	2.5	-10.7	-19.4
광업, 건설·제조	1.7	1.6	2.0	2.0	1.5	-6.3	-25.0
교통·통신	5.5	6.6	4.9	4.8	4.7	-28.8	-2.1
경제(other economic affairs)	8.2	8.6	9.1	9.1	9.0	4.7	-1.1
기타 지출	58.8	60.3	68.8	64.7	71.7	18.9	10.8
총지출	338.2	339.2	354.6	350.8	356.1	5.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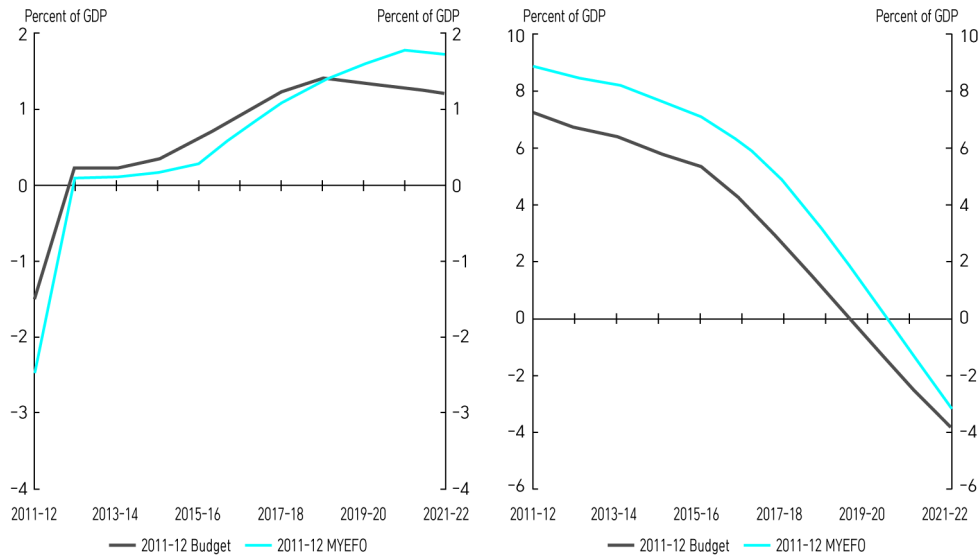
자료: Budget 2009-10, 2009. 5.
 Budget 2010-11, 2010. 5.
 Final Budget Outcome 2010-11, 2011. 9.

2. 재정건전화

- FY2011-12의 예산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여 FY2012-13에 흑자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재정여건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

SECTION 2 >>

[그림 2-Ⅶ-2] FY2021-22까지의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3.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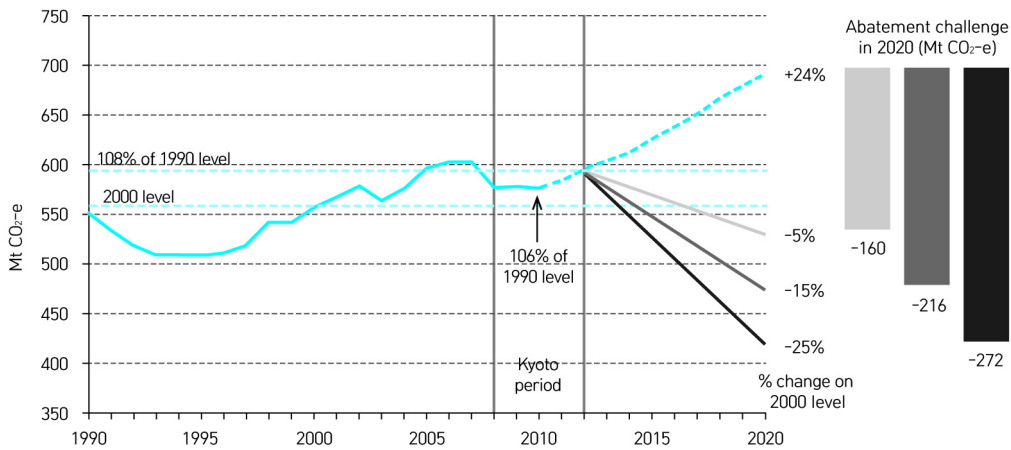
변동사항 없음

4. 기타 정책이슈

- 클린 에너지 법안— 상원통과: 2011.11.8.
 - (과정) 수 년에 걸친 탄소세 도입논란을 마무리하며 찬성 36표, 반대 32표로 별도의 수정 없이 통과시킴
 - (시행)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 (목적) 탄소로 인한 오염 저감과 미래의 깨끗한 에너지로의 이동
 - (주요내용) 18개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호주 최대의 약 500대 탄소배출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

- 탄소배출 1톤당 탄소가격 23호주달러, 2013년에는 톤당 24.15호주달러, 2014년 25.40호주달러를 부과
- 2015년 7월 1일부터 고정가격 부과제에서 배출총량거래제(cap-and-trade)로 전환
- (배출량 현황) 호주의 탄소배출량은 교토의정서 기간인 2008-12년도에는 580Mt이며 추가적 정책이 없다면 2020년도에는 686Mt(2000년도의 24%를 초과한 수준)에 도달할 예정
- 따라서 호주정부는 2020년도의 목표를 2000년도 배출량 수준의 5~25% 이하로 계획
- (여론) 길라드 총리의 추락하는 지지도를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였으나 결국 노동당과 녹색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됨으로써 길라드총리는 정치력을 인정받음
- 호주기업위원회(BCA)는 호주의 탄소세가 국제기준⁵⁴⁾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나타냄

[그림 2-Ⅶ-3] 탄소배출 추이 및 목표



자료: www. climatechange.gov.au

54) 유럽국가의 탄소배출비용은 최소 8.7호주달러

SECTION 2 >>

- 야당지도자 자원세 반대성명 발표(2012.3.14)
 - 길라드 총리는 광물자원세 법안이 녹색당과 함께 논의되어, 2주 후 상원을 통과할 것이 확실하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지지를 밝힘
 - 반면, 야당지도자 토니 애벗(Tony Abbott)은 길라드 정부의 자원세 부과를 통한 법인세 1.5% 인하에 대해 반대를 표명함